

# 목 차

I. 서 설 .....	635
II. 통합전 서독과 동독의 경찰제도 현황 .....	637
1. 독일(서독)의 경찰제도 .....	637
1) 서 설 .....	637
2) 경찰조직의 형태 .....	638
3) 연방경찰기관 .....	639
4) 각주의 경찰기관 .....	648
2. 통합前 동독경찰제도 .....	655
1) 경찰제도의 특징 .....	655
2) 人民경찰(Volkspolizei)의 조직 및 임무 .....	656
3) 국가안전부 .....	659
4) 국경경비대 .....	663
III. 동·서독 경찰통합 .....	665
1. 동서독 통합 略史 .....	665
1) 독일분할시대 .....	665
2) 분단시대 .....	665
3) 통합시기 .....	666
4) 통일이후 .....	667
2. 동서독 행정체제 통합 .....	670
1) 통일전의 동·서독 행정의 특징 .....	670
2) 통독후의 행정체제 개편방향 .....	670
3) 통독후 행정체제 통합과정 .....	672

3. 동서독 경찰통합 .....	682
1) 통합준비단계 .....	683
2) 연방경찰제도의 구축 및 통합 .....	686
3) 新연방 州경찰조직의 재건 .....	692
<b>IV. 동독경찰의 민주화 과정</b> .....	708
1. 인민경찰(Volkspolizei)요원의 인수 및 재임용 .....	708
1) 일반사항 .....	708
2) 동독 인민경찰의 인수 및 재임용 .....	709
3) 베를린 경찰청 사례 .....	711
4) 브란덴부르크州 .....	713
5) 인민경찰의 장비 등 처리 .....	713
6) 인수 및 재임용상의 문제점 .....	714
2. 인수된 동독경찰의 再교육 .....	715
1) 일반행정부서의 경우 .....	715
2) 경찰교육제도의 수립 .....	716
<b>V. 결 론</b> .....	722
참 고 문 헌 .....	728
< 부 록 > .....	731

## 표 차례

<표 1> 통일전 동·서독 경찰제도 비교 .....	658
<표 2> 2001년 현재 연방 및 주정부 집권정당 현황 .....	669
<표 3> 구(舊)동독지역에 파견·전보된 공무원 현황 .....	675
<표 4> 통합전 동서독경찰 교류 및 협력 略史 .....	684
<표 5> 통일전후 각 주 자매결연 상황 .....	693
<표 6> 1990년 10월 1일 현재 東西베를린경찰 현황 .....	700
<표 7> 베를린경찰청 인원 현황 .....	704
<표 8> 베를린 제7경찰서 경찰관 현황 .....	705
<표 9> 동독경찰의 인수 및 재임용 현황 .....	710

## 그림차례

<그림 1> 연방경찰대학원 조직 .....	645
<그림 2> 베를린경찰청 조직표 .....	705
<그림 3> 베를린 제7경찰서 조직표 .....	706



## I. 서 설

2차 대전후 동서독으로 양분되었던 독일이 분단 40여 년만인 1990년 10월 3일 동독 5개주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일원으로 가입함(통일조약)에 따라 하나의 독일로 통합되기에 이르렀다. 1945년이래 비슷한 국제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한반도는 50년 이상 분단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상호 적대적 관계를 현재까지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상황과 동서독의 통합과정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대조적이다.

동서독 통일이 이루어진 지 어언 10년이 지났다. 이제 독일 시민들과 공무원들 사이에는 통일문제가 이른 바 “trockene Limonade: 말라빠진 레몬조각”이라고 회자되고 있다. 통일 이후에 급격히 악화된 실업, 환경, 범죄문제가 시민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至難한 통일과정에서 작성되었던 수 많은 공문서들이 이제 지하창고에 들어가고 있으며, 통일추진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관련공무원들도 이제는 하나 둘씩 은퇴하고 있다.

향후 언젠가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필자는 찬동하면서, 우리보다 앞선 경험을 한 독일의 통일과정과 경찰통합 그리고 민주화과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독일 아데나워 재단(Konrad-Adenauer-Stiftung)과 경찰청 치안연구소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이관희 교수(경찰대학교)와 함께 독일경찰의 통합과정에 대한 학술연구차 2001년 6월-8월말까지 舊동서독 경찰관서와 관련경찰관 등을 직접 방문, 면담하면서 연구를 실행한 바 있다.<sup>1)</sup> 특히 경찰통합 후 재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인민경찰(Volkspolizei)출신 경찰관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과정(인적 청산)과 새로운 체제에 대한 적응 및 민주화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측면에 역점을 두었다.

1) 필자가 이관희교수와 同연구를 위해 방문한 독일경찰관서는 다음과 같다. 연방내무부 경찰국장, 푸라이부르크경찰서,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찰대학 및 경찰학교, 연방국경수비대 동부 및 서부지역대, 노이브란덴부르크경찰서, 베를린경찰청 및 州경찰학교, 맥클렌부르크-포포메른州경찰학교 및 경찰대학, 작센州 경찰대학, 바덴-뷔르템베르크州경찰청 등이다.

정치, 경제, 외교, 복지, 일반행정분야에 관한 통일 관련연구는 상당한 정도로 추진, 축적되어 왔다. 그렇지만 경찰행정분야 통합관련연구는 실무자들의 현지방문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 치중되었기 때문에, 학술연구의 2차 자료 활용 측면(인용, 참조)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경찰청, 통일원 등의 관련자료와 독일 현지경찰관서의 공문서, 경찰관계자들과의 대화요지, 경찰관련 학술지 등을 주로 분석, 참조하였다.

## II. 통합전 서독과 동독의 경찰제도 현황

### 1. 독일(서독)의 경찰제도

#### 1) 서 설

서독(Bundesrepublik Deutschland: BRD)경찰조직은 1949년 Bonn기본법(Grundgesetz)<sup>2)</sup> 제정(동년 5월 23일 기본법 서명, 발효)되면서 州(Land)의 권한에 속하도록 규정하였다(기본법 제 30조 및 70조). 따라서 각주별로 고유한 경찰법 및 경찰조직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만 전국적 사항, 긴급사태 등을 대비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 연방정부의 경찰권을 인정하고 있다(기본법 제 87조 1항 등). 각州的 경찰들은 일반적으로 유니폼을 착용하는 일반예방경찰(혹은 치안경찰, Schutzpolizei)과 수사경찰(Kriminalpolizei)로 나뉘어진다. 경찰기관들은 각주의 내무부산하에 소속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연방경찰(Bundes-polizei)이라고 일컬어지는 개별 경찰기관들도 연방내무부에 소속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 경찰(Polizei)의 개념이 조직적 의미의 경찰(Polizei im institutionellen Sinne)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조직법적 관점에서 볼 때 경찰은 “경찰”이라는 명칭이 부여되고 있는 일체의 국가기관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조직적 의미의 경찰활동은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州단위에서 보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활동은 두 가지 형태의 국가기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두 기관은 독일경찰법학의 분류방법에 따라서 집행경찰(Vollzugspolizei, Polizeivollzugsdienst)과 기타의 위험방지관청(übrige Behörde der Gefahrenabwehr)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2) 1990년 10월 3일 본 기본법(Bonner Grundgesetz)이 통일과 동시에 독일전역에 발효되었다.

## 2) 경찰조직의 형태

연방국가 체제하에서 독일의 각주(Länder)는 나름대로의 행정조직을 편성하고 있다. 독일기본법(Grundgesetz, §30, 70에 따라 연방차원의 입법권이 아닌 사항은 각주에게 입법권이 있다고 함)에 따라 경찰에 대한 입법권은 州가 입법권을 행사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이들 두 경찰조직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단일형 (Einheitssystem)

단일형에 의하여 집행경찰(Vollzugspolizei)은 물론 위험방지 임무를 수행하는 여타의 내무행정관청들도 모두 ‘경찰’이라는 명칭으로 표현된다.

다만 교육행정관청, 노동행정관청, 사회복지관청 등은 단순히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시민에 대하여 給付활동을 수행하므로 경찰조직에서 제외된다. 이 단일형에 의하면 조직상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일치하게 되며, 실질적 의미에서의 경찰권(위험방지)을 행사하는 기관은 널리 경찰(Polizei)로 지칭된다.

몇몇 州(Baden-Württemberg, Bremen, Saarland, Sachsen, Rheinland-Pfalz)에서는 모든 위험방지업무가 경찰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행정경찰(Verwaltungspolizei)과 전통적인 집행경찰(Vollzugspolizei)간에 조직적인 분리가 되어 있다.<sup>3)</sup> 경찰기관이라고 지칭되는 행정관청의 내부에는 전문화 분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기능상 집행경찰과 기타의 경찰행정관청을 대비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적인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행정경찰이 감시할 관할권을 가지며, 행정경찰에 의하여 적시에 조치될 수 없는 위험의 발생, 즉 급박한 위험발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집행경찰의 임무로 귀착된다. 여기서의 특징은 일반 질서유지관청에 Polizei라는 명칭이 붙어 있으므로 (한국식의) 경찰과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다.<sup>4)</sup> 위 5개 州들의 경찰법 규정들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따르고 있다.

3) Möller/Wilhelm, Allgemeines Polizei- und Ordnungsrecht, 4. Auflage, 1995, S. 7.

4) 운전면허발급, 자동차등록·폐차, 비자발급·연장, 주민등록(갱신)업무, 주소이전, 전입, 퇴거 등 업무담당부서에서 Polizeibehörde라는 관공서명칭을 사용한다.

(2) 분리형 (Trennungssystem)

이 유형은 公共의 安寧·질서에 대한 위험방지의 임무를 서로 다른 명칭을 가진 두 기관에 나누어 맡긴다는 특징을 갖는다. 하나의 기관은 조직상 의미에 있어서의 경찰로서 집행경찰(Vollzugspolizei)이라고 불리운다. 이에 대하여 다른 기관은 위험방지라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활동을 수행하지만 ‘경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경찰의 관할권이 위험방지의 영역에서 본질적으로 급박한 위험발생이나 특별한 관할에 한정되어졌다.

이들 기관은 일반적으로 질서행정관청(Ordnungsbehörde) 또는 일반행정관청(Behörde der allgemeinen Verwaltung)이라고 불리운다. 이와 같은 분리형을 취하는 주(州)로서는 바이에른, 베를린, 함부르크, 헤센,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팔렌, 쉴레스비히-홀슈타인 州 등이다.

일반적인 위험방지 임무는 질서관청에 부여되어 있는 바, 이들의 명칭은 **질서청**(Sicherheitsbehörde: 바이에른州), **행정관청**(Verwaltungsbehörde: 함부르크, 니더작센, 작센안할트 등), **위험방지관청**(Gefahrenabwehrbehörde: 헤센州)의 명칭으로 구분되어 지고 있다.<sup>5)</sup>

이들 州에서 경찰의 개념은 실질적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조직적 관점에서도 특징 지워질 수 있다.

3) 연방경찰기관

경찰사무가 각주의 사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무에 대해서는 연방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연방수사국**(Bundeskriminalamt:BKA),<sup>6)</sup> **연방국경수비대**(Bundesgrenz-

5) 독일의 경우, 집회시위를 사전에 신고하는 바, 우리 나라와 같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행정관청에 신고하며, 이 관청에서 신고를 수리하면, 경찰에게 통보한다. 경찰은 신고내용과 기타 정황을 고려하여 집회, 시위상황에 대비한다.  
6) 한국에서 소개되는 문헌에서는 연방수사청, 연방범죄수사청 등으로 번역하는 사례가 있지만 미국의 FBI에 대해 **연방수사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본고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연방수사

schutz: BGS), **연방헌법보호청**(Das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등은 연방 내무부 소속이다. 연방철도경찰(Bahnpolizei des Bundes), 연방하원, 상원, 연방대통령 관저, 연방헌법재판소 등의 가택권보호를 위한 집행경찰조직(질서 및 순찰경찰조직)이 있으며, 이 업무는 국경수비대 소속 경찰관이 맡고 있다. 그리고 연방경찰대학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200명씩 선발 교육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연방내각에 소속된 연방정보국(Bundesnachrichtendienst: BND)와 軍정보기관(Militärisches Abschirmdienst: MAD) 등도 직접강제수단과 집행경찰공무원은 없지만, 연방경찰기관이다.<sup>7)</sup>

#### (1) 연방수사국 (Bundeskriminalamt: BKA)

연방수사국은 연방내무부산하 外廳이다. 국장은 내무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연방내각에서 임명되는 정무직 공무원(B9)이다.<sup>8)</sup> 특정한 범죄유형의 수사(국제적 범죄, 조직범죄, 마약, 폭발물관련, 화폐위조사건, 무기밀매, 요인암살기도 행위 등)에 있어서 관할권을 가지며,<sup>9)</sup> 범죄정보수집, 분석업무가 부여되어 있다. 외국과의 수사협조(독일인터폴총국), 경찰전산업무,<sup>10)</sup> 州경찰의 수사활동에 대한 장비, 인력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방수사국설치법』에 의하여 각주의 내무부산하에 州범죄수사국(Landeskriminalamt: LKA)이 설치되어 있다. 요인경호에 대한 책임도 맡고 있다. 독일에는 별도의 경호실과 같은 기관이 없다. 연방경찰이나 州경찰의 요인경호대상자들은 대통령, 수상, 각부장관, 연방검찰총장 등에 이른다.

2001년 1월 현재 연방수사국에는 일반경찰관을 비롯한 직원 4,509여명이 근무하고 있

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7) Scholler/Schloer, Grundzuege des Polizei- und Ordnungsrecht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3, S. 40.

8) 연방수사국장은 연방검찰총장, 연방헌법보호청장, 연방정보국장 등과 동급이며, 현재의 국장인 Ulrich Ersten은 1999년 인터폴총회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9) Möller/Wilhelm, Allgemeines Polizei- und Ordnungsrecht, 4. Aufl. 1995, S. 11.

10) 독일 경찰에서는 범죄가 발생하면, 前科관리차원에서 한 번 경찰에 입건되면, 범인의 인적사항, 지문, 좌우측 및 정면사진 등을 촬영한다. 그 후 관련자료를 연방수사국, 州범죄수사국, 발생지 경찰서에 각각 1부씩 송부, 집중관리하고 있다.

다. 특히 경찰고위간부들은 사법시험을 합격한 Juristen으로서 상당수 구성되어 있는 바, 전체경찰관의 18%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한다. 독일경찰이 법집행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원인의 일면을 알 수 있다.

## (2) 연방헌법보호청 (Amt für Verfassungsschutz)

연방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은 가지지 않고 있으며, 反국가사범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정보를 경찰수사당국에 이첩하는 역할을 하며, 수사는 경찰이 행한다. 정보수집대상은 좌익테러, 군대내의 극좌테러분자, 연방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할 위험성을 갖고 있는 이념단체, 정당, 이들과 연계된 국제조직, 극우세력, 신나찌 추종세력 및 조직원, 이들과 연계된 단체, 출판물, 내적 안전(innere Sicherheit)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외국인 관련사항, 외국 첩보기관의 침투에 대한 방첩업무(스파이방지) 등을 담당하고 있다.<sup>11)</sup> 각주에는 내무부산하에 州헌법보호청이 설치되어 있어 연방과 州정부간의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과 같이 反국가사범(Staatschutzdelikte)에 대한 수사권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후일 이 연방헌법보호청이 新연방주에 확대, 설치되자 구(舊)동독시민들은 과거의 국가보위부(Stasi)가 다시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도 하였다.

한국경찰과 비교해 보면, 독일의 일반집행경찰(Schutzpolizei oder Kriminalpolizei)은 정보수집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다.<sup>12)</sup> 집회나 시위와 관련한 사전 신고관서는 일반질서관청(Ordnungsamt)이 되며, 신고를 수리한 질서관청에서는 관련내용을 경찰에 통보하며, 시위대에 의한 질서교란행위와 같은 특별한 사태는 경찰이 대비토록 하고 있다.

11)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Verfassungsschutzbericht 1996, 1997, S. 13 ff.

12) 범죄정보수집, 분석업무가 연방수사국에 부여됨으로써, 주수사국의 경우도 범죄정보수집, 분석업무가 연계적으로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범죄정보에 관한 수집, 작성, 분석, 배포업무는 일반집행경찰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 (3) 연방국경수비대 (Bundesgrenzschutz: BGS)

기본법 제73조 및 연방국경수비대 설치법에 의거, 1951년 동독지역 1,393km, 체코지역 356km의 국경수비를 위하여 설치되었다. 연방내무부의 국경수비국(Abteilung BGS) 소속이며, 연방수사국과 같은 외청은 아니다.<sup>13)</sup>

연방국경수비대는 항만, 공항, 국경통제소 등에서 출입국관리업무와 철도상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다. 대규모 시위사태를 비롯한 경비수요(대규모의 자연재해발생, 외국원수 등의 방문, 범죄자 수배 등)가 발생할 시에는 각주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국경수비사령부(Grenzschutzkommando): 쉰연방을 5개 지역으로 구분, 북부(해안)·서부·중부·남부·동부의 5개 국경사령부로 구성되고, 각 사령부에는 3개의 기동경찰대, 교육대, 항공대, 통신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경수비행정국(Grenzschutzverwaltung): 각국경수비사령부 제3과에 구성되어 예산편성, 집행 등 독자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국경수비국(Grenzschutzdirektion): 전국경지역을 9개의 국경수비서(Grenzschutzamt)의 관할로 분할, 그 산하에 65개소의 국경수비소(Grenzschutzstelle)를 설치하여 국경통과 차량·인원통제, 국경지역을 보호한다.

BGS의 주요임무는 국경지역의 감시, 국경 통과 차량 및 사람의 통제, 국경에서 30km 이내의 장애제거, 자연재해 등 국가 비상사태시 위해방지, 헌법기관 및 외국기관의 보호, 주(州)경찰 조직의 지원 등의 업무 외에 1972년 대테러부대(연방경찰특공대, Grenzschutzgruppe 9: GSG-9)가 창설되어 테러진압 업무도 수행한다.<sup>14)</sup> 2001년 1월 기준, 39,000여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다.

13) 연방내무성 소속 연방경찰조직의 책임자들은 연방수사국장, 연방국경수비국장, 연방경찰국장 등이며, 이들은 모두 B7직급에 해당하는 고위정무직 공무원들이다. 이중 필자는 본연구를 위하여 연방경찰국장을 면담하면서, 동서독 통합과정시에 서독경찰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14) Semerak, Arved F., Die Polizei, 1988, S. 40. 특히 1972년 뮌헨 올림픽대회 당시 “검은 9월단”에 의한 이스라엘선수단 피격사건 발생 후 설치된 부대이다. 물론 프랑스도 이사건을 계기로 자국 경찰조직에 이와 유사한 대테러부대를 창설, 현재에 이르고 있다.

(4) 연방경찰대학원 (Polizeiführungsakademie: 경찰관리자학교)<sup>15)</sup>

① 연방경찰대학원의 연혁 및 임무<sup>16)</sup>

연방경찰대학원(Münster 소재)은 연방과 각주의 고급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1945년 7월부터 개교하였다. 1947년 9월부터 연합국의 일원인 영국점령하 (Britische Militärregierung)에 놓이면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州가 同교육기관을 감독하도록 하였으며, 1949년 8월부터는 영국점령지역이 아닌 다른 州경찰관들도 입학이 허용되었다. 그 후 1962년 4월 17일 연방과 州에서는 同교육기관에 대한 “임무와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며, 그 후 급증하는 치안수요로 인하여, 1969년부터 초, 중급 경찰간부에 대한 교육문제는 각주에서 부담하게 되었다. 현재의 경찰대학원 존립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72년 4월28일 연방과 각주정부간에 합의, 발효된 “경찰고급간부양성을 위한 통일적인 후보생교육과 연방경찰관리자학교에 대한 협정”이다. 1992년 1월1일부터 법개정을 통하여 구동독지역의 5개주 경찰관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同학교에 대한 직무감독(Fachaufsicht)은 연방과 각주정부 내무부장관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수행한다.

同학교는 연방 및 州경찰간부의 재교육, 전문화교육과 경찰관련분야(치안정책) 연구의 중심기관(Zentralstelle)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고급 경찰간부(경정급)로 지원한(임용예정) 者들에 대한 특별 교육(Sonderkurs)을 실시하기도 한다.

15) 독일원문은 Polizei-Führungsakademie로써 **경찰관리자학교**라고 번역된다. 필자가 경찰대학원과 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독일경찰 교육제도의 특성상 **경찰대학을 졸업**한 경찰간부(고참 경위급)가 고급경찰간부(경정급)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방경찰관리자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된다. 고급간부 후보생들로 선발된 각주의 경찰간부들은 주경찰대학에서 1년간 교육을 받은 후 연방경찰관리자 학교에서 1년간 추가교육을 받고 졸업해야 고급간부(경정급)로 임명된다. 따라서 대학졸업 이후의 교육과정(각주경찰대학 1년, 연방경찰관리자학교 1년: 도합 2년과정)을 우리나라의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리자학교의 1년간의 교육과정과 주경찰대학에서의 1년간은 교육과정을 동계, 하계방학없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원 석사과정보다 수업시간이 더 많다. 본고에서 경찰대학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6) Rupprecht, Reinhard(Hrsg.), Polizei Lexikon, 2. Auflage, 1995, S. 406 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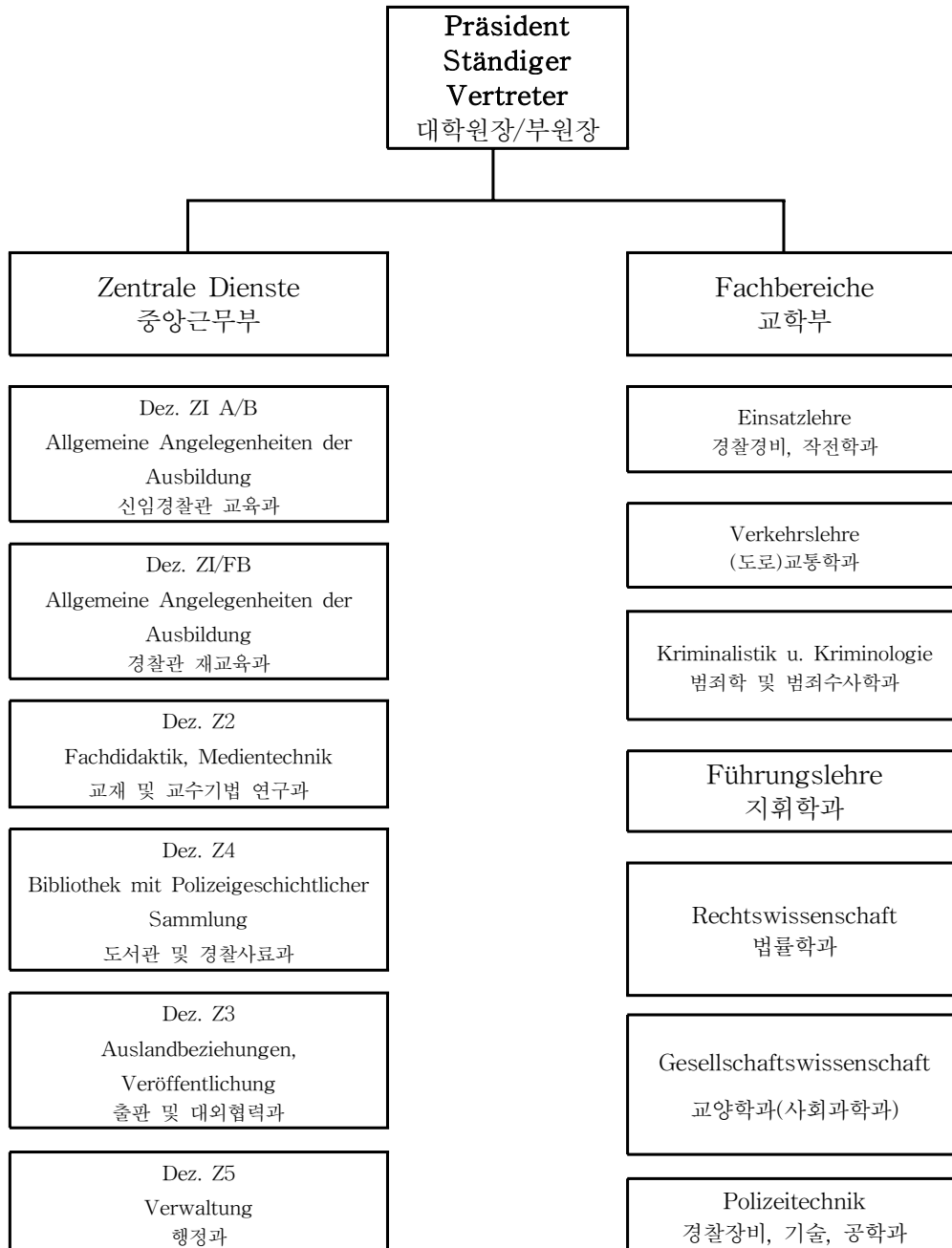
## ② 경찰대학원 조직

同학교는 조직상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州정부의 한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同학교의 교장(Präsident)<sup>17)</sup>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 정부가 연방 및 각주 내무부장관들로 구성된 협의회(Kuratorium)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경찰대학원 조직은 크게 행정지원부서와 교학부로 구성되어 있는 바,

- 행정지원부서의 소관 업무 및 조직으로는  
 경찰관 신규임용 교육課(Allgemeine Angelenheiten der Ausbildung),  
 경찰관 再教育課(Allgemeine Angelegenheiten der Fortbildung),  
 시청각교재 및 교수기법 연구부서(Fachdidaktik, Medientechnik),  
 출판 및 대외협력부서(Auslandsbeziehungen, Veröffentlichung),  
 도서관 및 警察史料 관리부서(Bibliothek mit Polizeigeschichtlicher Sammlung),  
 일반행정부서(Verwaltung)가 각각 편제되어 있다.

17) 대학원장(Präsident)에는 전통적으로 법과대학 교수나 판·검사 출신의 법률가(Jurist)가 임명되고 있다. 1998년 11월 현재, 대학원장은 1990년 5월1일 임명되어 재직중인 Rainer Schult박사이다.

<그림 1> 연방경찰대학원 조직(Organigramm der Polizei- Führungsakademie)



- 교학부(교수부)<sup>18)</sup>에는
  - 경찰지휘학과 (Führungslehre)
  - 경찰경비, 작전학과 (Einsatzlehre)
  - (도로)교통학과 (Verkehrslehre)
  - 범죄학 및 범죄수사학과 (Kriminalistik u. Kriminologie)
  - 법학과 (Rechtswissenschaft)
  - 교양학과 (사회과학과, Gesellschaftswissenschaft)
  - 장비, 기술 및 공학과 (Polizeitechnik) 등이 있다.

### ③ 경찰대학원(PFA)생 선발, 교육방식 등

각주에서는 경찰관 정원, 치안수요, 州정부의 재정상태, 경찰인사정책에<sup>19)</sup> 따라 매년 고급 경찰간부(경정급)를 선발하고 있다. 독일 경찰의 경우, 해마다 초급간부(경찰대학 입학예정자)와 고급간부(경찰대학원 입학예정자)로의 승진예정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州정부의 재정상태가 많이 고려된다고 한다.

州경찰단위에서 고급간부 후보생(대학원 입학예정자)으로 선발된 자는 1년간 주경찰대학이나 경찰학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이듬해 9월 경찰대학원에 입학하여 추가로 1년간 교육을 받게 된다. 2년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고급경찰간부(Polizeirat oder Kriminalrat)로 임명된다.

18) Aktuelles aus der Polizei-Führungsakademie, in: Die Polizei 1998, S. 303 f. 1998년 8월 1일 경찰대학원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지휘학과는 **지휘, 조직 및 행정학부(Fachbereich I-** Führung, Organisations u. Verwaltungswissenschaften, 부장은 **총경급**)라는 명칭으로, 경비·작전학과, (도로)교통학과, 범죄학·범죄수사학과는 합쳐져서 **경찰관리학부(Fachbereich II-** Polizeiliches Management, 부장은 고참 **총경급**)라는 명칭으로, 법학과와 교양학과는 합쳐져서 **법학 및 교양학부(Fachbereich III-** Rechts- u. Sozial- wissenschaft, 부장은 **교수**)라는 명칭으로 각각 바뀌었으며, 경찰장비, 기술, 공학과는 **경찰공학연구소(Polizeitechnisches Institut)**로 바뀌었다.

19) 일반예방경찰(방법, 경비, 교통등)과 수사경찰은 인사상 분리되어 있다. 일반예방경찰의 (Schutzpolizei) 경우, 간부경찰관의 비율이 주에 따라서 15-25% 정도이지만, 수사경찰(Kriminalpolizei)의 경우는 간부경찰관의 비율이 50-100%를 차지하기 때문에 승진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많은 경찰관들이 수사경찰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부경찰관은 반드시 경찰대학과정을 수료한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독일에서 **수사경찰의 간부화**는 수사경찰의 자질향상과 직결된 문제이다.

교육방식은 州경찰대학과 경찰대학원의 교과목 편성에 따라 진행되며, 교과목은 기히 소개된 바와 같이 법률학, 교양과목, 경찰지휘론, 경찰실무(경비, 수사, 교통)에 관한 내용들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수업방식은 강의, 세미나, 사례연구, 개별연구발표 등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1996년 9월-1998년 8월까지 경찰대학원 과정에 재학했던 대학원생(고급간부후보생)은 모두 192명이었으며, 1997년 9월-1999년 8월까지 同대학원 과정 입학생은 177명이었고, 이중 여자경찰관은 12명이었다. 1998년 10월 현재, 각주별로 3-38명씩 선발되어 경찰대학원에 재학중이다.<sup>20)</sup>

④ 전임교수 및 교관 현황<sup>21)</sup>

40여명의 전임교수, 교관진이 각주에서 선발된 경찰대학원생 200여명을 가르치고 있다. 1998년 11월 현재, 교수·교관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대학원장 1명, 副원장 1명(총경급), 강사2명 (신학박사인 목사<sup>1,22)</sup> 정치학박사1)
- 행정지원부서(중앙근무부)의 과장 6명 (총경급 2명, 행정직 서기관급 2명, 사서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 교학부에 근무하는 교수, 교관진  
지휘, 조직, 행정학부(Fachbereich I: Führung, Organisations- u. Verwaltungswissenschaften): 총경 3명, 수사경정 2명, 행정사무관 1명(박사)
- 경찰관리학부(Fachbereich II: Polizeiliches Management):  
총경 9명, 경정 6명, 서기관 1명(박사)

20) Die Polizei 1998, S. 304: 연방국경수비대: 14명, 연방수사국: 7명, Baden-Württemberg州: 22명, Bayern: 18명, Berlin: 13명, Brandenburg: 8명, Bremen: 6명, Hamburg: 5명, Hessen: 9명, Mecklenburg-Vorpommern: 6명, Niedersachsen: 8명, **Nordrhein-Westfalen: 38명**(인구-약 18,000,000명-와 경찰관이 가장 많은 주), Rheinland-Pfalz: 4명, Sachsen: 4명, Sachsen-Anhalt: 4명, **Schleswig-Holstein: 3명**, Thüringen: 5명 등이다.

21) Die Polizei 1998, p. 321. 전임교수, 교관진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법률학 분야를 강의하는 외래강사(교수)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경정, 총경급 교관 중에는 법률가 출신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2) 경찰관 『직업윤리(Berufsethik)』를 담당하고 있다.

- **법률학 및 교양학부**(Fachbereich III: Rechts- u. Sozialwissenschaft)  
교수 1명, 총경 2명(박사1명), 경정 2명, 서기관 1명(박사), 기타 2명
- **경찰공학연구소**(Polizeitechnisches Institut):  
총경 3명, 건축서기관 1명, 사무관 1명(박사)

#### 4) 各州의 경찰기관

##### (1) 일반적 조직

각주의 최상급 경찰관청은 州내무부장관이다. 주내무부에는 경찰담당국(경찰청)<sup>23)</sup> 설치되어 있으며, 道단위에도 경찰담당부서(지방경찰청)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경찰담당부서는 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으며, 하급 경찰관서에 대한 인사, 예산, 지원, 감독, 통제업무를 수행한다. **州범죄수사국(LKA)**, **州기동경찰**,<sup>24)</sup> **州경찰학교**, **州경찰대학**<sup>25)</sup> 등이 대부분의 州경찰청산하에 공통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23) 참고로 바덴-뷔르템베르크州 내무부의 경찰담당국(Abteilung 3, Landespolizeipräsidium)의 조직을 살펴보면, 7개課로 이루어져 있다. 과장급의 직책은 경찰서장급에 해당하는 간부이다. 4명은 경찰간부, 나머지 2명은 서기관급에 해당하는 일반행정직공무원들이다. **감사과**, **경비교통과**(상황실 포함), **수사과**, **행정지원과**(인사, 조직, 교육담당), **법무과**(홍보 및 법무담당, 일반직공무원), **예산 및 경리과**(복지후생 포함, 일반직 공무원), **장비과**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현재의 州경찰청장은 사법시험출신으로 검사, 판사, 변호사를 지낸 자이다.

24) 1994년 기준, 독일 각주의 기동경찰 인원현황을 살펴보면,  
바덴-뷔르템베르크 **4,283명**, 바이에른 **5,361**, 베를린 1,398, 부란덴부르크 813,  
브레멘 564, 함부르크 1,003, 헤센 **3,637**, 맥클렌포포메른 1,034,  
니더작센 1,547,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5,026**, 라인란트팔츠 2,101,  
자아란트 238, 작센 2467, 작센-안할트 1,284, 쉴레스비히-홀스타인 1,585, 튀링겐 1,112,  
독일 전체 33,473명의 기동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다.

25) 각주의 경찰조직 규모에 따라 경찰대학이 독자적인 캠퍼스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州도 있지만 규모가 작은 州에는 州공무원 양성 대학내의 경찰학부로 설치된 경우도 있다. 참고로 인구 1,100만 정도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州)경찰의 경우,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약 32,000명 정도이며, 이중 경찰관은 26,700명 정도된다. 경찰대학생은 매년 400명씩 선발, 교육시키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54개월 정도이다. 다른 州들의 경우, 인구와 치안수요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도단위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단위의 직제에는 **행정지원, 경비, 교통, 수사, 방법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들이 공통적으로 설치되어 있다.<sup>26)</sup> 각주의 경찰은 분리형이든 단일형에 상관없이 크게 4가지 형태의 집행경찰구조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바,<sup>27)</sup>

- **일반예방경찰**(제복을 착용한 예방경찰, uniformierte Schutzpolizei): 치안경찰이라고도 칭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기동 및 도보순찰, 교통위반단속, 사고의 처리 및 기타 전문경찰분야를 제외한 일반적 경찰고유임무 수행한다.
- **수사경찰**(Kriminalpolizei): 각종 범죄의 수사 및 예방활동, 형사소추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한다.
- **기동경찰**(Bereitschaftspolizei): 대규모시위나 각종 행사의 경비임무수행, 대형사고 및 자연재해 등의 처리업무를 지원한다. 특히 국가비상사태(Notstand) 및 중대한 자연재해 발생시 다른 州를 지원한다.
- **수상경찰**(수자원보호경찰, Wasserschutzpolizei): 항만, 하천, 호수를 중심으로 水路, 海路상의 안전유지 업무수행,<sup>28)</sup> 해난사고의 조사 및 예방, 내수면 및 해양환경 오염방지 및 단속, 기타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위임사무 처리하는 경찰기관이다.

독일의 일반예방경찰은 우리나라의 수사, 정보, 보안업무를 제외한 경무, 방법, 교통, 경비경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사경찰과 기동경찰은 한국의 그것과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며, 수상경찰은 한국의 해양경찰과 유사하다. 각주에서는 이러한 경찰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26) 우리나라에 정보과에 해당하는 업무는 일반집행경찰에 의해서 수행되지 않는다. 다른 정보기관(헌법보호청, 연방정보국, 軍정보국등)에 의해서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가 이루어진다. 反국가사범(Staatsschutzdelikte)을 처리하는 부서는 수사부(과)에 전담반(반국가사범수사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보안과에 해당하는 기능은 수사과에서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27) Möller/Wilhelm, 1995, S. 15 f.

28) 독일에는 라인강을 비롯한 큰 하천과 호수(Bodensee)들이 다수 있어서, 이들이 해상, 水上交通路로서의 역할이 크다. 수자원보호와 교통로상의 안전유지를 위해 수상경찰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한국과 비교할 때 경찰조직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道(Regierungsbezirk)단위에는<sup>29)</sup> 지방경찰청(Landespolizei, Polizeipräsidium 각 주마다 명칭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음)과
- 우리나라의 市, 郡, 區지역에 해당하는 행정구역마다 설치된 경찰서(Polizeidirektion, 주마다 약간씩 다른 명칭을 사용함)가 있고,
- 동, 면, 읍에 해당하는 행정구역(Gemeinde)에 파출소(Polizeiposten)가 설치되어 있다.<sup>30)</sup>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는 경찰서와 파출소 중간단계에 경찰조직(Polizeirevier 또는 Polizeiinspektion)이 있다. 경찰서마다 2-3에서 10개미만 정도로 설치되어 있다, 파출소는 지구경찰서<sup>31)</sup>소속이다. 독일의 대부분의 경찰관서에서는 -경찰서보다 하위개념이면서 파출소보다는 상위개념인-이 지구경찰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 (2) 각주별 경찰별 사례

본항에서 소개할 각주별 경찰사례는 통합후 新연방주 경찰조직재건에 모델(자매주 경찰지원방식)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sup>32)</sup>

29) 비교적 인구나 면적이 넓은 몇 주의 경우를 소개하면,

- Nordrhein-Westfalen州: 인구 1,800만명, 면적 34000Km<sup>2</sup>, 범죄발생건수(1382470건, 1996년 기준) 도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및 지방경찰청 5개, 경찰서 50개소(1988년 기준)
- Bayern州: 인구 1,200만명, 면적 7만Km<sup>2</sup>, 범죄발생건수(692,079 1996년 기준) 도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및 지방경찰청은 수도인 München을 포함 7개, 경찰서 39개소(1998년 기준)
- Baden-Württemberg州: 인구 1,000만명, 면적 35700Km<sup>2</sup>, 범죄발생건수(590,097 1996년 기준) 도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및 지방경찰청은 수도인 Stuttgart를 포함 5개, 경찰서38개소(1998년 기준)

30) 일부에서는 독일의 기초자치단체인 읍면동 단위에 자치체 경찰이 있는 것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일원주의적 경찰법체제를 갖고 있는 일부 주에서 Polizeibehörde(경찰관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관계로 이를 오해한 것에 기인한다. 여기서 경찰관청이라는 명칭은 한국식의 경찰이 아닌, 소위 질서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면허행정관리, 자동차등록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관청을 말한다.

31) 국내에서도 『지구경찰서』라는 명칭이 이상원, 『치안여건의 차이에 따른 방법활동체제연구』(용인: 치안연구소, 1996년)에서 소개된 바 있어서 이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독일의 이 지구경찰서는 순찰조직을 중심으로 24시간 근무체제이다. 파출소는 주간에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지구경찰서 소속 일반 예방경찰관들만 야간에 관할구역을 순찰한다.

32) 바덴-뷔르템베르크州와 바이에른州경찰제도는 신연방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작센州 경찰조직 재건

① Baden-Württemberg州 경찰

바덴-뷔르템베르크 주경찰제도는 통일후 구동독 작센주 경찰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同州는 작센주의 서독측 자매주이기도 하다. 필자가 작센주 경찰대학을 방문했을 시, 경찰대학 3년생들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경찰대학에서 견학중이었다. 작센주의 경찰법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영향을 받아 일원주의적(Einheitssystem) 경찰법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작센주 경찰은 독립적인 경찰대학 제도를 비롯(각학년 60명), 주범죄수사국체제, 지구경찰서, 고속도로경찰서, 수상경찰서체제 등 많은 부분에 걸쳐 서독 자매주를 모델로 삼고 있다.<sup>33)</sup>

㉠ 지방경찰청 등 상급경찰기관

바덴-뷔르템베르크州的 최상급 경찰관청은 州내무부장관이다. 州내무부<sup>34)</sup> 제3국(Abteilung 3, Landespolizeipräsidium)에서 경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州경찰청에 해당한다. 각도별<sup>35)</sup> 지방경찰청(Landespolizeidirektion)으로는 Stuttgart I, Stuttgart II,<sup>36)</sup> Karlsruhe, Freiburg, Tübingen 지방경찰청이 있다.<sup>37)</sup>

에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경찰은 브란덴부르크州 경찰제건에 지원하였다.

- 33) 통일후 바덴-뷔르템 베르크 주경찰의 고위간부로서 작센주에 수개월동안 파견되어 작센주 경찰조직 개건과정에 참여한 고위직 경찰(지방경찰청 차장급)과 실무단위에서 차출, 파견 근무한 바 있는 푸라이부르크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들을 각각 면담한 바 있다.
- 34) 州경찰청에는 6개국(Abteilung,1,2,3,4,5,와 행정개혁을 위한 참모국)과 감사국이 있다.
- 35) 각 道廳에는 지방경찰청 담당국(지방경찰청)이 설치되어 있다.
- 36) Stuttgart II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수도이다. 인구는 약 585,000명 정도(1996년 기준), 수도지역에 한하여 지방경찰청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1,000여명의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한국의 경찰서규모로 이해할 수 있다. 독일에는 이러한 대도시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특별히 지방경찰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Bremen주는 인구 680,000명 1996년 기준, Hamburg 주: 인구1,700,000명 1996년기준, Saarland주: 인구1,084,000명, 1996년 기준, 독일연방공화국의 주들이지만 규모가 큰 州들과의 인구나 면적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경찰제도 비교시에는 주의를 요한다.
- 37) 道단위 지방경찰청들의 관할인구 및 경찰서숫자를 살펴보면, **Stuttgart 지방경찰청**: 인구 3,237,712명(1994년 기준), 경찰서11개소, 고속도로관할 경찰서 1개소; **Karlsruhe 지방경찰청**: 인구

그밖에 州내무부 산하 경찰기관들은 州기동경찰국(Bereitschaftspolizeidirektion), 州수사국(Landeskriminalamt),<sup>38)</sup> 수상경찰(Wasserschutzpolizeidirektion)과 州경찰학교(Landespolizeischule), 州경찰대학(Fachhochschule für Polizei)<sup>39)</sup> 등이 있다.

### ㉠ 경찰서 등 하급경찰기관

푸라이부르크 지방경찰청소속의 Freiburg 경찰서의 경우를 살펴보면, 同경찰서의 관내 상황은 면적: 1,531Km<sup>2</sup>, 인구: 433,800명(1997년 기준), 범죄발생건수: 총 33,727건(1997년 기준)이며 경찰관은 약 880명 근무(수사부 160명)하고 있다.

경찰서조직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지는 바,

제1부(Abteilung I)는 일반예방경찰부(Schutzpolizei),

제2부(Ab. II)는 수사경찰부,

제3부(Ab. III)는 행정지원부로 구성되어 있다.

#### ○ 일반예방경찰부에는

· 교통과<sup>40)</sup>: 순찰계(22명), 5부제근무, 24시간근무체제

교통사고조사계(32명)-4부제근무, 24시간 근무체제

교통관리계(범죄행위처리업무등), 뺑소니수사반, 교통내근반 등

총97명이 근무,

· 경비과: 경비계, 상황실(15명, 4부제근무)등 약 30명이 근무,

---

2,637,000명(1994년 기준), 경찰서 9개소, 고속도로관할 경찰서 1개소; **Freiburg 지방경찰청**: 인구 2,099,800명(1997년 기준), 경찰서 9개소, 고속도로관할 경찰서 1개소; **Tübingen 지방경찰청**: 인구 1,706,300명(1994년 기준), 경찰서 8개소, 고속도로 지구대 1개소(경찰서규모보다 작음).

38) 1998년 10월 현재, 바덴-뷔르템베르크 州범죄수사국의 인원현황을 살펴보면, 96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경찰관은 약 550명 정도이고, 법률가출신 고위경찰간부는 4명이라고 함. 조직은 연방수사국의 경우와 大同小異하다. 물론 수사국장은 임명직 공무원이다.

39) 독일경찰의 교육제도 순경급 신규임용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州경찰학교와 경위급 초급간부 신규임용 교육을 맡고 있는 각주의 경찰대학, 경정급 고급간부 양성을 위한 연방경찰대학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필자가 기히 소개한 바 있다.

40) 고속도로상의 교통관리와 통제, 사고조사, 순찰 등의 업무는 지방경찰청별로 설치된 고속도로경찰서에서 관할하고, 경찰서의 교통과에서는 국도와 지방도, 시가지 도로상의 교통 관리, 통제, 사고조사, 순찰근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장비계: 6명이 근무,
  - 기동중대: 유사시 100여명의 직원들로 편성되는 임시직원기동대(非상설)
  - 경제사범단속계: 바덴-뷔르템베르크州 등 몇몇 주에서 운영하는 부서로서 환경범죄, 보건범죄, 노동질서문란 행위 등을 단속 예방하며, 17명이 근무,
  - 警察犬관리계: 17명이 근무,
  - 지구경찰서(5개소), 파출소(32개소)근무 경찰관 526명 등  
일반예방경찰부에는 약 710여명의 경찰관이 근무.
- **수사경찰부**에는 反국가사범수사반, 조직범죄수사반, 재산범죄(1반, De- zernat 1), 수배반(2반), 사기 및 경제사범(3반), 강력범죄(살인, 강도 등 4반), 성범죄(5반), 청소년범죄반(6반), 형사당직반(7반), 전산반(8반), 증거분석반(9반), 마약반(10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반별로 적게는 4-5명에서 많게는 13-15명씩 배치되어 있다. 同부서에는 160여명의 수사경찰관이 근무.
- **행정지원부**(인사, 복지, 경리, 장비, 문서관리 등)는 한국의 警務課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상당수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들이다. 8명의 경찰관과 8명의 일반직공무원이 각각 근무중이다. 지구경찰서, 파출소 근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본서에서 근무하지만, 청사사정을 감안하여 본서에서 떨어진 별도의 건물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한편, 지구경찰서<sup>41)</sup> 및 파출소 조직 및 근무체계는 다음과 같다: 푸라이부르크경찰서관내에는 5개의 지구경찰서와 32개의 파출소가 있는바, 地區경찰서(Polizeirevier 또는 Polizeiinspektion)는 경찰서의 관내면적과 행정구역을 감안 설치되어 있다. 푸라이부르크 시내의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지구경찰서(Polizeirevier-Nord)의 경우를 살펴보면, 관내인구는 112,000여명, 면적 281Km<sup>2</sup>, 파출소 6개소가 있으며, 60여명의 파출소 근무자와 100여명의 순찰과 근무자를 비롯 총 170여명이 근무, 지구경찰서의 주된 기능은 범죄예

41) 지구경찰서 중에는 규모가 작은 경찰서보다 인원과 물적 시설면에서 더 큰 규모일 수 있다. 실제로 푸라이부르크 지방경찰청 관내에 있는 경찰서 중 몇 개소(경찰관 숫자가 200명 미만)는 푸라이부르크 경찰서 관내에 있는 지구경찰서들보다 인원이 적은 경우도 있다.

방을 위한 순찰업무로서 순찰근무체제는 5부제 근무<sup>42)</sup>이다. 순찰근무 전종요원들은 5개의 순찰팀<sup>43)</sup>으로 편성되어 있다. 파출소근무체제는 08:00-17:00까지晝間 근무제이며, 토, 일요일에는 근무하지 않는다.<sup>44)</sup>

## ② Bayern州 경찰조직

바이에른주 역시 바덴-뷔르템베르크주경찰과 함께 작센주의 서독측 자매주의 일원으로 통일후 작센주 경찰재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특히 바이에른주는 작센주와 인접한 관계로 많은 물자를 지원했다고 하며, 경찰관들을 파견하는데에는 다소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 비하여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 **州상급경찰관서**로는 州범죄수사국(Bayerisches Landeskriminalamt), 뮌헨市지역과 6개의 道지역을 관할하는 7개의 지방경찰청, 州기동경찰국(주경찰학교설치), 경찰행정관리국 등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경찰대학은 州공무원대학의 경찰학부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 **하급경찰관서**로는 39개의 일반경찰서와 4개소의 수사전담경찰관서가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그 예하에는 지구경찰서 273개소, 지구수사대 31개소, 교통경찰지구대 32개소, 14개의 국경수비지구대 등이 각각 편성되어 있으며, 28,800여명의 경찰관이 근무(1994년 10월 기준)하고 있다.

## ③ Nordrhein-Westfalen州 경찰조직

州내무부소속이며, 5개의 道단위 행정구역에

42) 5일중 1일째는 주간 7시간 근무(12:30-19:30), 2일째는 주간(06:30-12:30) 6시간을 근무한 후 自家待機다가 다시 출근하여 야간(19:30-익일06:30까지) 17시간을 근무한 후 3, 4, 5일째까지 근무가 없는 비번이다. 6일째는 주간, 7일째는 주간 및 야간근무, 8, 9, 10일째는 비번이다. 독일경찰의 순찰근무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필자의 『범죄예방론』(서울: 좋은세상, 2001)을 참조.

43) 지구경찰서의 규모에 따라 1개 순찰팀의 인원은 8-20여명에 이른다.

44) 파출소뿐만 아니라 경찰서의 내근근무자, 수사부, 교통과 근무자의 대부분이 토, 일, 국경일 등에는 근무하지 않는다. 수사부 근무자들이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와 큰 차이가 있다. 피의자를 야간에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야간에 체포된 피의자는 간단한 신원 파악 정도의 조사만 거치고, 익일 아침까지 경찰서유치장에 감금해 놓는다.

- **州상급경찰관서**로 Arnsberg, Detmold, Düsseldorf, Köln, Münster 5개 지방경찰청, 州범죄수사국, 기동경찰국, 독일연방경찰관리자학교(경정급 이상 간부양성), 경찰학교, 州수사경찰학교 등이 설치되어 있다.
- **하급경찰관서**(경찰서급)로는 시·군·구 행정구역에 약 48개소의 경찰서와 1개소의 수상경찰서가 있다. 1994년 10월 현재, 41,000여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州이다(2001년 1월 현재 인구는 18,000,000명).

## 2. 통합前 동독경찰제도

### 1) 경찰제도의 특징

1949년 10월 7일 성립된 동독은 모스크바의 산물이었다. 동독은 처음부터 사회주의통일당(SED, 동독공산당)을 기반으로 공산주의 독재를 자행했다. 통제경제, 비밀경찰, SED의 전횡, 엄격한 검열로 국민과 통치기관은 점차 이질화되어 갔다.<sup>45)</sup> 경찰조직은 1945년 소련군정청에 의해 설립된 이래, 경찰고유의 업무 외에 사회주의 혁명수행과 공산당 권력지배 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는 충실한 도구로서, 동독의 치안기관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국가관에 따라 강력한 중앙집권화 경찰체제로서 사회주의 사회의 구축과 보호에 기여하였다. 내무부 소속에 경찰본부를 설치하였으며, 지방경찰에 대한 강력한 명령권과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였다.<sup>46)</sup> 경찰권 수행기관은 동독인민 경찰(Volkspolizei)이었다. 인민경찰은 보안경찰(Schutzpolizei, 일반예방경찰), 교통경찰, 수사경찰, 여권 및 주민등록(Paß- und Meldewesen), 수송경찰, 형사소추, 소방대, 기동대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비밀경찰활동을 통하여 주민을 통제하고 개별경찰관의 자율성을 무시한 중앙집권화된 경찰조직이었다.

통일후 동독의 중앙집권적 경찰조직은 가능한 한 연방주의적, 민주주의적 경찰조직으

45) 주한 독일연방국대사관, 『오늘의 독일』, 1998, 36면.

46)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체제 불법청산개관』(서울: 법무부, 1995), 29면.

로 신속히 대체되어야 했다. 소방대, 여권 및 주민등록업무, 수송경찰 등 경찰직무와 거리가 먼 분야는 경찰과 분리시켜야 했다.<sup>47)</sup> 본항에서는 일반경찰이라 할 수 있는 人民경찰(Volkspolizei), 국경수비대, 국가안전부 등의 비밀경찰에 대해서 살펴본다.

## 2) 人民경찰(Volkspolizei)의 조직 및 임무

### (1) 人民경찰의 연혁 및 역할

1945년 5월 소련군정청에서 의해 지방조직으로 설립

1946년 중반경 실질적인 중앙집권화

1950년 국가안전부(국가공안부, 국가보위부)가 인민경찰로부터 독립

1956년 동독 인민군(Volksarmee)이 인민경찰로부터 독립

1964년 이후 내무부 국(局)의 산하에 소속되었다. 1968년 『독일인민경찰의임무와권한에관한법률』<sup>48)</sup>이 제정되었다. 동법 제1조 【성격과 지위】 “독일인민경찰은 독일민주공화국의 통일적 사회주의적 국가권력 기관으로서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한다. 그 전체 활동은 사회주의적 과업인 사회주의국가 그리고 사회질서, 인간의 평화로운 삶 그리고 창조적인 노동의 보호에 봉사”라고 규정하였다. 동법 제3조 【독일인민경찰 소속원의 의무】 에서 “맹세에 따라서 사회주의 조국에의 봉사에 그들의 전체 힘을 쏟아야 하고 자기를 돌보지 않는 노력의 경주를 통하여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항상 믿을 만하게 보장하여야”한다고 규정하였다.

### (2) 조직 및 임무

구동독의 경우 내무부가 사실상 경찰조직이었던 바,<sup>49)</sup> 내무부장관이 경찰총수를 겸직

47) 일종의 탈(脫)경찰화(Entpolizeilichung) 작업이 동독지역 경찰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48) 원명은 『Gesetz ueber die Aufgaben und Befugnisse der deutschen Volkspolizei: Gesetzblatt Teil I Nr. 11』

49) 법무부, 1995, 34면.

한 1인에 의하여 중앙집권적으로 이끌어졌다.<sup>50)</sup>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관에 의거, 중앙 집권화된 조직이었다. 보통의 인민경찰(Volkspolizei)외에 수송경찰(Transportpolizei)과 인민경찰기동대(kasernierte Bereitschaftspolizei: 병영생활을 하는 군대식 조직)가 있었다. 200,000여만 명의 병력을 가진 강력한 기동경찰의 주된 임무는 영토방어였다. 1989년 가을 기동경찰은 드레스덴(Dresden)중앙역 등지에서 시위진압에 투입되기도 하였다.<sup>51)</sup> 군사적 장비와 조직을 가진 인민경찰기동대와 병영에서 근무하던 수송경찰은 1970년부터 軍의 일부를 구성하였으며, 주로 병역의무가 있는 징집해당자에 의해서 충원되었다. 소방(Feuerwehr), 구치소업무가 경찰기능에 포함되었다. 국경수비업무는 軍에서 담당하면서 국경통관업무는 경찰에서 담당하였다. 이는 서독의 경찰인 국경수비대가 국경수비 및 통관업무까지 수행한 것과 대조되는 바이다. 동독의 인민경찰(Volkspolizei)은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였다.

- 치안(보안)경찰(Schutzpolizei)은 서독의 일반예방(치안)경찰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수상경찰(Wasserschutzpolizei)이 포함되었다.
- 수사경찰(Kriminalpolizei)은 서독의 수사경찰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했다.
- 교통경찰(Verkehrspolizei)은 교통위반단속과 사고의 처리를 담당했다.
- 여권 및 주민등록경찰(Paß- und Meldewesen)은 통관업무 및 주민통제업무를 수행하였다.<sup>52)</sup>
- 수송경찰(Transportpolizei)은 철도 및 고속도로상의 경찰업무를 수행했다.
- 기동경찰(Bereitschaftspolizei): 주요시설 경비 및 시위진압, 재해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인민경찰은 1950년 50,000여명에서 1989년에는<sup>53)</sup> 96,000여명(8,000여명의 수송경찰, 15,000여명의 공공시설보호경찰 포함)으로 경찰력이 증가하였다. 이중 치안 및 수사경찰관은 약 73,000여명이었다(표: 1참조).

50) Rühmland, Ullich, Die Volkspolizei, in: Die Polizei 1982, p. 310.

51) 법무부, 1995, 35면.

52) 이러한 업무를 서독지역에서 일반행정관청 혹은 질서관청에서 담당하였다.

53) 1990년 서독인구는 62,679,000명, 1991년 동독지역인구는 14,751,800였다. 따라서 베를린장벽 개방 이전의 동독인구는 이보다 훨씬 많은 1,750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Bundeskriminalamt, Polizeiliches Kriminalstatistik(PKS) 1994, 1995, S. 21.

(3) 지방경찰조직

15개 市·道 및 229개 市·郡지역에서 14개 管區경찰국(Bezirksbehörde der VP)과 218개 경찰서(Volkspolizeikreisämter)를<sup>54)</sup> 설치하였다.<sup>55)</sup> 경찰서에는 치안경찰, 교통경찰, 수사경찰, 여권 및 주민등록경찰, 수송경찰(철도경찰), 형사소추업무, 소방대, 전투단, 인민경찰기동대가 각각 소속되었다. 경찰서 하부조직으로는 지구경찰서(Polizeireviere), 파출소(Polizeigruppenposten), 공공시설경비소(Betriebswachen)와 자치단체와 市지구에는 地區전속경찰(Abschnittsbevollmächtigte: ABV)이<sup>56)</sup> 있어서 경찰임무를 맡았다. 인민경찰은 당의 노선에 충실하였지만, 시민들에게는 적대적이었다. 1989년 가을까지 시 위진압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두려워하고 싫어했다.<sup>57)</sup>

<표 1> 통일전 동·서독 경찰제도 비교

구 분	독일연방공화국(서독, BRD)	독일민주공화국(동독, DDR)
조 직	연방주의,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州관할	중앙집권화된 경찰제도
기 능	범죄예방과 진압, 방어적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반민주적 세력에 대한 감시	사회주의 체제의 공고화, 체제반대자에 대한 탄압
인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연방경찰 25,946명</b> (BGS: 20,000, BKA:6,000명등)</li> <li>● <b>州경찰 175,946명</b> (Schutzpo: 120,000, Kripo:24,000, 기동대: 24,000, 기타 8,000 명 등) 총 <b>201,892명</b>이 인구 6150만명 담당</li> </ul>	치안, 수사경찰 73,000명 수송경찰 8,000명 기타 시설보호경찰 15,000명 등 총 <u>96,000명</u> 이 인구 1,750만명 담당
경찰기구와 정보기구간의 관계	기관분리의 원칙 견지(나찌하의 경찰독재의 경험으로부터 배움)	탈나찌화의 명목하에 나찌하의 게슈타포(Gestapo)와 같이 정보와 경찰집행을 한 기관에 부여함
교 육	전문적인 직업교육 강조	당에 대한 충성도 등을 근거로 경찰선발, 전문직업교육 경시

※ BRD: Bundesrepublik Deutschland, DDR: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54) 東베를린경찰청 산하 경찰서는 Volkspolizei-Inspektion이라고 불렀다.

55) Rühmland, Ullich, Die Volkspolizei, in: Die Polizei 1982, S. 309.

56) 이들의 임무는 국가안전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주민들과의 접촉 및 그 통제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 수가 매우 많아서 인민경찰이 도처에 있었다.

57) 법무부, 1995, 35면.

3) 국가안전부(국가공안부, 국가보위부 혹은 국가보위비밀경찰: Staatssicherheits-polizei, 일명 Stasi)<sup>58)</sup>

(1) 연혁 및 기능

동독의 주된 억압장치로 가장 특징적인 것이 국가안전부(Stasi)였다. 同부서는 국내의 정보수집기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장된 조직으로서 당의 방패이자 창검이었다. **국가안전부**(Ministerium des Staatssicherheit: 이하 Stasi)는 내무부의 人民소유권보호국(Hauptverwaltung Schutz des Volkseigentums)내에 설치된 국가보안경찰을 대신하여 1950년 2월 8일의 법률로 설치되었다. 원래 자국민 감시를 주요 목적으로 하여 1950년대 KGB의 주관하에 결성되었다. Stasi는 1953년 6월 폭동이 있을 후 잠시 내무부에 편입되었으나, 1955년 11월 24일에 이르러 部(Ministerium)로 승격,<sup>59)</sup> 국가안전부(MfS)라는 별도의 부처로서 행정부내의 독립된 중앙기관이 되었다. 그 후 서독내 스파이활동에 주목한 KGB의 계획에 따라 국제스파이戰에 돌입, 1956년 Stasi는 본부내 “중앙정보부(H.V.A.)”를 설치, 해외스파이 활동을 지휘하여 왔다.<sup>60)</sup> 수 십 년 동안의 활동 끝에 Stasi는 서독정부 고위층에 스파이를 심는데 성공하기도 하였다.<sup>61)</sup>

소련의 경찰 및 공안기관을 본받아 만들어진 Stasi는 통일전까지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권력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 검찰 및 법원과 함께 사회주의적 국가질서의 유지를 그 임무로 하였다.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의 정규적 방향제시나 지시에 의해

58) 주독 한국대사관(통일원소장)자료에 의하면, 『국가안전부: STASI』로 소개하는 가하면, 법무부의 자료에는 『국가공안부』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국가보위부』로 혹은 『국가보위비밀경찰』 등으로 칭하기도 한다. 자료의 출처 시기를 기준으로 주독한국대사관에서 처음 소개한 것인 『국가안전부』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59) 법무부, 1995, 30면.

60) 주독한국대사관, “동독 국가안전부의 실체”, 1991년 자체작성 자료. 통일부 통일자료실 소장, 100-16, 1면.

61) 1974년 발각된 “귄터 길라우메” 사건의 경우, 1956년 서독으로 잠입한 “귄터 길라우메”라는 자가 서독 수상이었던 “빌리 브란트”의 측근으로 암약했던 사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서독정보기관인 연방헌법보호청 관리로 활동했던 “한스 요하임 티에드케”가 주요 정보를 동독으로 유출시킴으로서 발각되기도 하였다.

그 활동범위가 결정되고 정치국의 감독을 받았으나, 나름대로 공산당 내에 확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sup>62)</sup>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직접 지령에 따라 완벽한 통제기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생활의 모든 부문을 감시하였다. 경찰조직은 아니었지만, 다른 대부분 공산국가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체제유지 및 공산당 일당 독재정권을 수호하기 위한 주민감시 조직인 비밀경찰인 셴이었다. 스탈린주의적 권력구조형태를 가진 Stasi의 활동은 임무와 책임 한계면에서 전혀 법적인 통제를 받지 않았다. 그 활동은 비밀로 분류된 내부지침과 상부지시에 의해 규정되었다. Stasi 定款 제1조는 「국가안전부는 각료회의 소속기관으로서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세력과 그 동조자들의 적대행위를 정찰, 사전 봉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동독공산당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내 査察업무와 대외정보임무를 수행하였으며, 主임무는 주민신상 정탐이었다. 외교관·경제인·언론인 등의 감시임무, 가정·학교·도서관·정유소에 까지 퍼진 광범위한 정보망을 통해 동독국민을 감시하는 임무, 스파이활동, 스파이색출, 인민군 및 인민경찰의 戰力확보, 경제의 확보, 혐의가 있는 단체에 대한 투쟁, 교통의 확보, 국가 및 당의 요인보호였다. Stasi내의 요원·정보원을 감시하는 임무와 사법경찰관리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그물같은 정보망으로 구동독을 덮고, 국민 대다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서독내 스파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뿌린 자금이 서독정보기관의 1년 예산에 맞먹는 수백만 마르크에 달했다고 한다. 통일후 同부서에서 관리한 인사들의 비밀문건이 공개되면서, 그 문건을 펼친 길이가 무려 200km에 달했다고 한다. 통일이후 이를 소위 「Gauck관청」에서<sup>63)</sup> 관리하고 있다. 1991년 11월 14일 舊동독 슈타지문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슈타지문서 열람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 (2) 조직, 인원 및 실태

관료적으로 조직된 기구인 국가안전부는 베를린에 33,000여명의 간부가 있는 본부를 두고(본부에는 10,000여개의 방과 사무실, 39개부서, 34,000여명의 상근요원<sup>64)</sup>), 적게는

62) 법무부, 1995, 30면.

63) 동부서의 책임자인 Gauck 이라는 목사의 이름을 따서 붙힌 것이다.

64) 동독인구의 약 1/3인 600만명 이상에 대한 인물자료 File을 보유하였는 바, 개인이 도서관에서 빌

1,754명(줄)에서 많게는 3,746명(로스톡)의 직원을 둔 15개 지구분실 그리고 25-50명의 간부를 둔 219개 郡사무소를 두었다. 그 밖에 비스무트사업국(Objektivverwaltung Wismut) 및 7개의 사업소(Objekt- dienststelle)를 두고 있었다. 그 내부조직은 사무총국, 행정실, 여러 개의 總局과 局, 필요에 따라 두게 되는 작업팀(Arbeitsgruppe)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안전부와 그 하부분실의 업무분장은 모든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영역이 포함되어 일체히 감독할 수 있도록 수직적으로 조직되어 있었다.<sup>65)</sup> 그밖에 사업체, 兵營(Kasernen), 대학, 교도소 및 기타 많은 시설에 Stasi의 시설이 있었다. 인민군 및 국경수비대의 경우에도 Stasi는 모든 사령부에 부서의 보안·감시를 위한 연락소 내지 연락관을 두었다.

Stasi의 최고지도부는 장관과 4명의 차관이였다. 구동독 붕괴당시 Stasi장관은 Erich Mielke였으며, 1989년 10월 당시 차관은 모두 군장성인 Rudolf Mittig, Gerhard Neiber, Wolfgang Schwanitz 및 Werner Großmann이였다. 데 메지에르정부의 Stasi 및 국가안전부 청산 국가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1980년대 호네커 치하에서는 85,500명 이상의 장성, 장교, 하사관, 사병, 군무원이 종사하고 있었다고 한다. 1973년에는 간부의 수가 52,707명, 1983년까지는 81,467명, 1989년까지 4,000명 이상이 늘었다.<sup>66)</sup> 85,500명의 간부중 약 33,000명이 중앙부서에서 활동하였고, 이들은 13개의 總局(Hauptabteilung) 및 20개의 독립한 局(Abteilung)과 정찰총국(Hauptabteilung für Aufklärung, 스파이활동 담당) 및 다수의 중앙조직에 배속되어 있었다.<sup>67)</sup> 중앙조직 중 중요한 기구로서는 수집된 정보를 분석, 공산당 지도부에 제출할 정세보고서를 준비하는 분석정보단

---

린 책이름에서부터 섹스습관에 이르기까지 기록하였다. 과거 반정부인사였던 사람의 외투깃에서 3마일밖에서도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도청기가 1990년대 초 발견되기도 하였다.

65) 법무부, 1995, 31면.

66) Karl Wilhelm, "Entmachtung und Erblast des MfS", p. 1883. 법무부, 1995, 32면에서 재인용.

67) 구동독 Stasi는 체제붕괴시까지 약 10만명 이상의 직원과 밀고자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들은 9,200명이 스파이색출, 경제와 교통수단 및 국가시설의 보호, 적대적 및 법과기활동을 방지하고, 2,171명이 우편검열, 1,486명이 내부전화도청, 4,128명이 간첩 및 구동독내부의 외적 방어, 외국사절의 감시, 8,426명은 전자장비취급, 4,876명은 요인보호 및 테러방지, 수사상 구금을 포함한 정치범죄사건의 수사, 1,284명은 정보처리(이중 844명은 중앙분석정보국에서 활동), 12,000명은 국경통행자의 보호 및 통제, 13,254명은 실질적, 재정적, 인건, 의료적 및 조직기술적 지원, 10,559명은 위기처리, 10,992명은 펠릭스 드찌르진스키 경비연대, 5,000명은 Stasi의 舊행정기관의 경비대로 활동하였다.

(Auswertung- und Informationsgruppe), 중앙의 활동 및 안보의 조정을 담당하는 중앙활동부(Zentrale Operativstab), 이주와 통제와 조정 및 관리의 배후임무를 지원하는 중앙조정단(Zentrale Koordinierungsgruppe)과 후방임무국(die Verwaltung Rückwärtige Dienste)을 들 수 있다.

체제붕괴전 “공식요원 약 105,000여명, 非공식요원<sup>68)</sup> 109,000명”이라고 1990년초 원탁회의에서 보고된 바 있으나, 실제로 약 175,000명에 달했다고 한다.<sup>69)</sup> 非공식협조자(Inoffizielle Mitarbeiter: IM)와 사회적 협조자(Gesellschaftliche Mitarbeiter für Sicherheits: GMS)라는 익명의 부대는 Stasi에 의하여 적(敵)과의 투쟁에서 중요한 무기(die Hauptwaffe im Kampf gegen den Feind)로 간주되었다. 원탁회의에서 공개한 非공식협조자의 수가 약 109,000명이었다고 하나, 실제로는 4배 내지 5배에 달하였을 것을 추정된다. 이들의 대부분은 제 20총국의 부서 및 그 소속인 지구분실의 제20국의 지휘를 받았다. 체제반대자에 대해서는 서신검열, 구금, 국적박탈, 전화도청 혹은 심리적 테러에 놓이기도 했다.

비관적인 시민들에게는 Stasi가 공포의 대상이었다. 또 Stasi는 戰時에 대비하여 확고한 적대적, 부정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격리시설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Stasi의 첩보부서는 서방국가에 많은 간첩들을 유지하면서 국제적 테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Stasi는 또한 司法에도 상당한 정도 관여하였다. 형사재판에서는 수사기관으로 참여하였고, 독자적인 유치장을 가지고 있었다. 정치적 사건뿐만 아니라 國有기업에서의 대규모 사고는 모두 다루었으며, 특별 배치된 주요협력자 및 간부를 통해 경찰기구의 주요부분, 여권제도, 여행 및 우편, 원격통신, 세관업무까지 통제하였다.

### (3) 해체작업

1990년 4월 동독 내무장관 “피터 미카엘 디스텔”은 前Stasi요원의 진술과 Stasi 자료 화일을 토대로 완전한 해체작업에 착수하였다. Stasi요원들에게 신변안전 및 생활보장과

68) 非공식조직원으로는 교사, 법관, 검사, 경찰, 학생, 노동자 등 각계 각층의 200,000만명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69) 김영탁,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서울: 한울아카데미, 1997), 215면.

일정금액 지급을 약속하고 전향 및 자백을 유도하였다. 디스텔장관은 前職 Stasi요원들만이 Stasi의 과거활동을 적나라하게 파헤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만일 고위관리가 테러조종 혐의로 기소된다면, Stasi요원의 법적 증언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Stasi요원이 이에 협조하도록 설득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1990년 초반까지 서독정부는 스파이들에게 전향할 것을 호소했지만, 반응이 냉담하였다고 한다. 신변보장과 생활보장 등의 약속이 있자, 이들은 서독내 스파이망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자백한 정보는 서독정부로부터 美CIA, FBI에 전달돼 즉각 스파이망 토벌작전에 쓰이게 되었다. Stasi조직의 해체작업과 관련, 요원들의 신변처리를 둘러싸고 동·서독 정부가 상반된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sup>70)</sup>

#### 4) 국경경비대

국경수비는 서독과는 달리 軍이 담당하였다. 국경경비대는 1946년부터 『국경경찰(Grenzpolizei)』로 처음에는 내무부, 다음에는 국가안전부, 마지막에는 다시 내무부에 소속하였다가 1961년부터 『人民軍국경경비대(Grenzgruppen der NVA)』로 인민군에 편입됨으로써 국방부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1970년대 초에 국경경비대는 다시 인민군에서 분리되었지만, 계속 국방부의 지휘를 받았으며,<sup>71)</sup> 그때부터 『독일민주공화국 국경경비대(Grenztruppen der DDR)』로 불리웠다. 48,000여명의 병력을 가진 국경경비대의 임무는 구동독의 반파시스트방벽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지뢰, 자동소총 및 자동발사장치를 이용해서 구동독 시민들이 탈출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 있었다.<sup>72)</sup> 국경의 안전은 독일사회주의통일당 정권에 있어서 기본조건이었으므로 국경경비대의 책임하에 동·서독 국경에서의 탈주자에 대한 총격살인이 자행되었다.

한편, 국경경비대의 명령계통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장관이 보통 매년-경우에 따라서는 2년마다- 자기권한에 속하는 여러부문에 대

70) 통일부 통일자료실 자료, 100-16, 3면 이하.

71) 법무부, 1995, 36면.

72) 법무부, 1995, 36면.

해 年度명령(Jahresbefehl)을 내리는 바, 이중에서 제 101호 명령이 국경경비대長에 대한 것이었고, 이는 다시 국경경비대장에 의하여 3개의 국경연대(Grenzkommando)의 長에 대한 명령으로 바뀌어 시달되었다. 국경경비대의 모든 행위, 특히 지뢰매설 및 탈출자에 대한 총기사용은 이러한 명령계통에 의하여 이뤄졌다고 한다.<sup>73)</sup>

---

73) 법무부, 1995, 37면.

### Ⅲ. 동·서독 경찰통합

#### 1. 동서독 통합 略史

##### 1) 독일분할시대

- 1945년 5월 8일 독일, 무조건항복
- 6월 5일 연합국 독일주권 인수
- 1946년 4.21-22일 소련점령당국, SED(동독공산당)결성
- 1947년 1월 1일 미·영 점령지역 통합
- 1948년 6월 24일 소련, 西베를린 봉쇄(1949년 5월 12일 해제)

##### 2) 분단시대

- 1949년 5월 23일 독일연방공화국(서독, BRD)기본법 공포**
- 1949년 10월 7일 독일민주공화국(동독, DDR) 건국**
- 1951년 9월 20일 동서독 교역관련 베를린협정 체결
- 1952년 7월 24일 동독, 5개州를 해체하고 14개 지구(道, Bezirke)구성
- 1957년 1월 1일 자아란트(Saarland), 독일연방공화국에 편입
- 1959년 9월 8일 빌리 브란트 西베를린 市長, 베를린관련 4대 기본원칙 제시
- 1961년 8월 13일 동독, 베를린장벽 구축 시작**
- 1964년 2월 16일 서독 사민당(SPD), 빌리 브란트를 신임당수로 선출
- 1969년 10월 16-19일 동서독, 우편 및 교통문제에 관한 회담
- 1970년 3월 19일 동서독, Erfurt 정상회담**
- 1972년 5월 26일 동서독 교통조약 체결, 12월 21일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 1974년 5월 2일 동서독 상주대표 교환
- 1976년 3월 30일 동서독 우편협정 체결

**1981년 12월 11-13일 슈미트수상, 동독방문**

1984년 11월 30일 동독, 동서독 국경지역 자동발사장치 철거시작  
(1985년 11월 3일 완료)

1986년 5월 6일 동서독 문화협정 체결, 10월 6일 도시간 자매결연시작

**1987년 9월 7-9일 호네커 서독방문**

3) 통합시기

1989년 1월 15일 Leipzig에서 로자 룩셈부르크 사망 70주년 시위

5월 8일 동독교회와 야당, 지방자치단체 부정선거 규탄시위

6월 12-15일 고르바초프, 서독 방문

**7월 17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국경개방**

8월 13일 헝가리주재 서독대사관, 동독탈출민 쇄도로 폐쇄

9월 27일 라이프찌히 니콜라이교회에서 평화시위

10월 15일 동독기관지 “Neues Deutschland”가 동독정부 비판

10월 18일 호네커 사임, 에곤 크렌츠 후임 등장

11월 4일 東베를린에서 100만명 시위

**11월 9일 동서독 국경개방 선언**

**【1989년 11월 9일 모든 동독국경 개방 선포】**

동독의 정치국원 Günter Schabowski가 갑자기 언론에서 서독과 西베를린으로 통하는 모든 동독국경이 개방된다는 놀라운 소식을 알렸다. 이날밤 수천명의 동독주민들이 비자검사를 받지 않고 西베를린과 국경근방 서독 도시들로 몰려들어 동서독 국민들간의 재회를 기념하는 축제를 가졌다.<sup>74)</sup> 드디어 베를린의 국경이 개방되면서 동독주민들은 환희의 기쁨을 맞게 되었다.

11월 10일 베를린장벽 철거시작

11월 28일 Kohl수상, 유럽과 독일분단 극복을 위한 10개 방안발표

74) 박이도, 『독일통일과 통일독일의 이해』(서울: 신지서원, 2000), 157면.

【연방수상 콜(Kohl)은 1989년 11월 28일 연방구조를 통해 조약공동체를 성립시키고 동독이 정치, 경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자는 10가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12월 11일 Leipzig시위에서 “독일통일”구호 등장**

12월 19일 저녁 동독쪽에서 건축공들이 장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밤중이 지난 얼마후 0시 37분경 최초로 장벽의 틈을 뚫는데 성공했다.

12월 22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개방

1990년 2월 7일 서독연방정부, 독일통일내각위원회 구성

**3월 18일 동독, 최초의 인민의회 자유총선 실시**

4월 19일 동독 Lothar de Maiziere首相, 기본법 23조에 의한 통일발표

4월 24일 콜-데 메지에르, Bonn정상회담

5월 6일 동독, 지방자치단체 선거 실시

5월 18일 동서독 재무장관, 화폐·경제·사회통합(일명 국가조약) 체결

**6월 22일 동서독 의회, 국가조약 비준**

6월 29일 동독검찰청, 호네커 고발

8월 22-23일 동독인민의회, 10월 3일 기본법제 23조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할 것을 결의

**8월 31일 동서독 내무장관, 통일조약 체결**

9월 20일 동서독 의회, 통일조약 비준

9월 27일 동서독 「사회민주당 SPD」 통합

10월 1일 동서독 「기독교민주당 CDU」 통합

10월 2일 동독 인민의회, 독일민주공화국(동독) 소멸 공식선언

**10월 3일 독일 통일 선포**

4) 통일이후

1990년 10월 4일 통일후 최초로 손독일 연방하원(Bundestag)이 베를린 제국의사당(Reichstag)에서 구성됨<sup>75)</sup>

10월 14일 新연방 5개주에서 주의회 선거 실시<sup>75)</sup>

11월 9일 통일후 최초로 쏘독일 연방상원(Bundesrat)이 동독을 포함한 16개 주 상원(上院)의원으로 구성되었다.

12월 1일 베를린지방법원, 호네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2일 1933년 이후 처음으로 쏘독일연방하원 총선 실시

1946년 이후 처음으로 베를린 주(州)의회 선거 실시

1990년 독일전역에서 첫 선거가 치뤄진 뒤 여섯 개의 정당이 독일연방 하원에 진출했다. 독일사회민주당(SPD), 독일기독교민주당(CDU), 동맹90/녹색당, 자유민주당(FDP), 기독교사회당(CSU), 민주사회당(PDS) 등이다. PDS는 구동독의 국가정당이었던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의 후신이다. PDS는 1990년 新, 舊연방주에 각기 따로 5%조항을 적용받음으로써 연방하원에 진출할 수 있었다. 1990년 12월 2일 동서독 통일후 최초의 연방하원선거가 열렸다.

1991년 3월 8일 연방정부는 동독부흥 공동대책 마련

12월 20일 국가보위부 문서관리법에 따라 국가보위부 문서관리청

(일명 Gauckbehörde)설립됨

1992년 4월 1일 연방국경수비대 조직개편(신연방주 포함)

7월 27일 호네커가 소련에서 독일로 강제송환됨

후일 칠레에 있는 딸집에서 1994년 5월 29일 81세로 사망

10월 29일 제1차 SED불법청산법 제정

1994년 1월 1일 국유철도민영화

6월 17일 연방하원은 SED과거청산특별위원회 최종보고서 채택,

여기서 구동독은 독재체제로 규정되었음

10월 16일 제13대 연방하원 선거실시: 기민당 聯政이 집권

1995년 1월 1일 우편·통신민영화 단행

2월 3일 新연방주 주둔 독일연방군 NATO에 편입됨

75) 하원의원 663명 중 144명은 新연방주(구동독지역 5개주) 의원이었다.

76) 기민당은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Anhalt, Thüringen, Sachsen주에서 집권당으로, 사민당은 Brandenburg주에서만 다수당이 되었음.



분단의 상징이었던 찰리-검문소앞에서 기념촬영

<표 2> 2001년 현재 연방 및 주정부 집권정당 현황

	집권정당	연방수상 및 주지사
연방	사회민주당 SPD	Gehard Schröder(수상)
바덴-뷔르템베르크	기독교민주당 CDU	Erwin Teufel
바이에른	기독교사회당 CSU	Edmund Stöber
베를린	기독교민주당 CDU	Eberhard Diepgen
브란덴부르크	사회민주당 SPD	Manfred Stolpe
브레멘	사회민주당 SPD	Henning Scherf
함부르크	사회민주당 SPD	Ortwin Runde
헤센	사회민주당 SPD	Koch
맥클렌부르크-포포메른	사회민주당 SPD	Harald Ringstorff
니더작센	사회민주당 SPD	Gerhard Glogowski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사회민주당 SPD	Wolfgang Clement
라인란트-팔츠	사회민주당 SPD	Kurt Beck
자아란트	사회민주당 SPD	Reinhard Klimmt
작센	기독교민주당 CDU	Kurt Biedenkoph
작센-안할트	사회민주당 SPD	Reinhard Höppner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사회민주당 SPD	Heide Simonis
튀링겐	기독교민주당 CDU	Bernhard Vogel

## 2. 동서독 행정체제 통합

동서독 행정체제 통합원칙은 연방과 각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고 재조정하는 데에 적용되었다. 행정체제 통합은 크게 연방정부와 주정부차원에서 각각 진행되었으며, 효율적인 통합추진을 위해 동독 5개주와 서독의 각 주정부간에는 자매결연을 맺기도 하였다. 연방정부는 조직정비위원회 및 베를린 外廳 등을 설치하여 동독지역의 조직정비를 적극 도왔다. 특히 동서독 경찰통합 방식과 절차 역시 거시적인 행정체제 통합의 원칙하에 이루어졌기 행정체제 통합방식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 1) 통일전의 동·서독 행정의 특징

서독에서는 보통 연방정부, 州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기관과 그 직원들의 활동을 공공행정이라고 불렀지만, 동독에서는 이런 의미의 공공행정은 없고, 국가명령을 수행하는 활동으로서의 행정만 있었다.<sup>77)</sup> 이 때문에 동서독의 행정은 업무, 조직, 인력, 정책결정 등 여러 측면에서 다른 점이 많았다. 서독은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와 지방자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업무가 특성별로 수직적·수평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동독의 행정은 국가권력의 일원화, 黨결정 우선의 원칙, 상부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당과 국가의 결정을 그대로 시행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서독의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가 정착, 전문성이 강조되었는 데 비하여, 동독의 공무원은 전문성보다 정치적 이념성, 공산당에의 충성도에 따라 임용, 승진하였다.

### 2) 통독후의 행정체제 개편방향<sup>78)</sup>

통독후의 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침은 1991년 1월 연방총리주재 『내각재편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는 바,

77) Werner Jann, "Öffentliche Verwaltung", in: Weidenfeld/Korte(Hrsg.),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6, p. 526. 김영탁, 1997, 201면에서 재인용.

78) 통일대비정책연수단, 『동서독 통일과정과 통합실태』(서울: 통일원, 1993), 212면 이하 참조.

- 동독지역의 재건과 동화문제를 총괄하는 특별부처(재건성)을 설치한다.
- 통합업무가 과도적인 사안임을 감안, 각부처내에 전담기구를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을 활용하여 대처한다.
- 통일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국내문제임으로 헌법상 각부 관할업무 범위내에서 통합을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일과 함께 『內獨關係部』는 임무종료로 폐지(1990년 1월 16일)하고, 가족노인부, 여성청소년부, 수상실, 국무부를 신설하였다.
- 통일 및 대동독 협상업무가 불필요함에 따라 수상실 관련부서를 축소하고
- 동독지역 재건 및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업무증대로 내무부 기구를 확대하였는 바, 舊내독관계부 인력을 인수하고, 동독지역 재건단<sup>79)</sup>을 설치하였다.
- 서독의 법치주의 행정체제의 동독지역 이식 및 구 동독체제하의 재산권 처리, 복권·보상문제 처리를 위한 법무부 기구를 확대하였다.
- 동독문제 전문가들인 舊내독관계부 직원들은 전문분야별 관련부처 전담부서에 배치하고, 이들이 통합업무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 각부처는 『베를린외청(지소)』를 설치, 각 부처 장관책임하에 구동독 중앙부처 청산작업을 진행하였다(인력, 인수문제, 건물접수, 이전 등).

특히 동서독 통합과 관련한 연방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 통일이후 내독관계부 인력을 흡수하여, 기구를 확대하였다. 통일이전에는 국내 기본정책담당실의 내독관계 담당관실에서 동독과의 통합조약 협상을 주도하였으며, 통일후에는 내독관계부 인력을 흡수하여 기구와 역할 확대,

79) 신설 5개주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건단』 설치: 1991년 3월 8일 연방정부는 구동독지역의 경제·사회적 재건을 위해 향후 2년간 실시하게 될 “구동독지역 경기부양을 위한 공동대응책”을 발표하면서, 이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구동독에 각지역별로 『재건단』이라는 Task Force를 구성하였다. 同Task Force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내무부 산하에과거 동독문제 전문가들인 해체된 내독관계부 직원들을 흡수하여, 동독의 재건문제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하였다. 지역별로 설치된 재건단과 Task Force는 긴밀한 협조하에 업무를 처리하였다.

- 동독지역 신설 5개주 재건자문단(5개분과)을 신설하였으며, 신설주의 재정, 홍보, 인사행정 등을 담당하였다.
- 동독과 관련한 정치교육, 동구문제 연구 담당국을 신설, 내무행정을 담당하였다. 문화담당실에 2개과를 신설하여 신설 5개 주의 문화시설 확충문제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 3) 통독후 행정체제 통합과정

독일통일은 양국이 통합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달성되었으며, 행정체제의 통합도 그 기본골격이 통합조약에 의해 규정되었다.<sup>80)</sup> 통합에 따라 발생하는 동독 공공기관의 인수·축소문제는 연방업무인 경우에는 서독의 중앙부처가 개별적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통독으로 인하여 각 부처별로 조직을 개편·축소·통합하는 문제는 實행정수요와 예산 운용 가능 범위 내에서 처리되었다.<sup>81)</sup> 통일과 더불어 연방정부의 각 부처는 동독중앙정부의 해당 부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인수·조정하기 위해 新연방주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베를린에 外廳을 설치하였다.

#### (1) 新연방 행정체제 구축지원

##### ① 신설 5개주 지원을 위한 「연방-주 행정조직정비위원회」 설치

통합조약 14조와 15조(“연방정부와 서독 주정부는 신설주 행정체제 확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에 규정된 신설 5개주에 대한 행정지원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기 위해 1990년 8월 29일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의 합의(각 州정부 및 연방정부 수상간)를 거쳐 「연

80) 통합조약 제 13조(공공기관의 과도기적 존속) ① 동독 편입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연방에 의해 기본법에 명시된 개별 관할권에 의거 인계된 업무를 담당했던 제 1항 1번에 언급된 기관 혹은 산하 기관은 해당 연방정부 기관의 관할이 된다. 이 연방정부 기관이 각 기관의 다른 기관에로의 업무 양도와 업무정산을 결정한다. ② 제1항과 2항에 언급된 기관들에는 1. 문화교육, 학술 및 체육기관들과 2. 법인격이 공공행정 기관인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도 해당된다.

81) 통일대비정책연수단, 1993, 209면.

방-주 조직정비위원회(Bund-Länder Clearingsstelle fuer die Verwaltungshilfe)』를 내무부산하에 설치하였다. 1990년 9월 11일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여, 同위원회는 연방정부와 서독 주정부의 행정지원을 조정하고, 동독지역 주정부의 행정체계 구축을 지원하였다. 그 과정에서 약 1,000여개의 동독 중앙행정기구를 재정비한 바 있다.

각 주에서는 서독지역 주대표, 신설 5개주 대표, 신설 5개주 州首相 선출시까지 주행정 전권위임자들로 구성하고, 연방정부측에서는 수상실, 내무부, 재무부, 경제부, 노동·사회부로 구성하였다. 조직정비위원회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4개의 업무처리반이 구성되었는 바,

- 주정부기구의 이관 및 정리
- 신설 5개주 행정요원의 자질향상 대책 및 직장 疏開대책
- 투자장애요소 제거
- 표준직제 수립 등이었다.

임무는 신설 5개주의 행정체계 확립을 위한 모델적 조직 및 인사관리 계획을 개발, 작성하는 것이었다. 州행정체계를 세우고 자문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연방과 주정부간의 행정지원 업무를 조정하고, 통합조약 15조 3항에 규정된 연방과 주정부의 각자 임무를 완성하고, 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행정지원업무를 조정하였다. 통합조약 14조에 규정에 의거, 과도기간 동안 州정부행정을 수행할 공동기관들의 임무배분과 업무지침에 관한 조정을 맡았다.

### ② 「신연방주 재건단」의 역할

연방내무부는 1991년 봄부터 1992년말까지 Bonn과 Berlin에 신연방주전담관을 단장으로 하는 「新연방주 재건단」을 운용하였다. 同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문제를 비롯하여 특히 부동산문제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자문하였고, 인력알선을 지원했으며, 각 부처와 협의하여 동독 부흥 공동대책사업을 지원하였다.

### ③ 연방-주-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인력 및 인건비 지원

연방정부와 서독 주정부는 서독출신 공무원, 판사, 군인, 근로자, 연금생활자로서 장기적 혹은 단기적으로 동독지역 근무처로 전근할 경우 재정적·개인적 부담을 조정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유인책을 취하였다.<sup>82)</sup>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동독지역 州정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연방공직자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다. 서독공무원의 동독지역 파견·전보에 따른 다양한 장려조치들은 다음과 같다.<sup>83)</sup>

#### ㉠ 봉급·연금상의 혜택

연방기관에서 복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예외없이 연방이 그 인건비를 부담하였다. 구 동독지역에서는 생산성을 고려, 봉급이 서독보다 낮게 책정되었는 바, 전보되는 서독출신 공무원이 동독지역 연방공무원에 적용되는 별도의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구서독지역에서 파견 혹은 전보된 공무원들이 서독수준의 기존 봉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만약 파견되는 공무원이 신설 5개 州에서 현재의 직급보다 훨씬 높은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불했다. 과도기적으로 행정체계가 완전히 구축될 때까지 신설주에서는 고위직에 구서독지역의 경험있는 하위직을 배치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또한 연금산정시 각 근무기간에 대해 2배의 근무기간 산정의 혜택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 ㉡ 이전에 따르는 생활비용 등 보상

구서독지역으로부터 생활근거지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1991년 3월 20일 연방하원(Bundestag)결의에 따라 각 직급에 따라 1,500-2,500DM 정도의 일시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여행경비, 별거수당 등을 지불하였다.<sup>84)</sup>

#### ㉢ 승진상의 혜택부여

공무원의 승진은 기본법(Grundgesetz) 제33조 2항에 의하면 “능력위주”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독지역의 행정체계 확립을 위하여 특별히 파견될 공무원에게 인사상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이 “능력위주”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1991년

82) 김영탁, 1997, 213면.

83) 통일대비정책연수단, 1993, 231면 이하.

84) 기혼자는 한 달에 2번, 미혼자는 한 달에 1번의 귀향에 따른 여행경비와 별거수당이 지불되었다. 전보의 경우는 별거수당규정에 의거, 별거수당은 지급되었으나, 여행경비는 주택사정 불량으로 인해 이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귀향비용이 지불되었다.

4월말 연방인사위원회는 구동독지역 파견 공무원에게 경력평정에 있어서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결정하였다. 1991년 말까지 파견되는 공무원으로서 최소한 구동독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게 되는 者는 경력 평정시 유리한 점수를 받도록 하였다. 연방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는 아울러 승진결정에 있어서 구동독지역으로 파견된 者들이 유리하도록 기존 인사제도상의 다른 가능한 수단을 계속 검토키로 하였다. 또한 유경험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력상 더 이상 승진할 기회가 없는 구서독 공무원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선발심사, 교육, 경력에 필요한 자격 확정 등 인사상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구동독 지역에 전보조치하였다.

㊤ 파견·전보된 서독공무원 규모

1992년 4월말까지 서독연방 및 주정부기관 출신 공무원 약 23,400명이 동독지역 연방기관과 주정부기관에 각각 파견된 바 있다(표: 참조). 한편 1994년 3월, 총 34,937명의 서독지역 공무원들이 동독지역에 파견·전보된 바 있다.<sup>85)</sup>

<표 3> 구(舊)동독지역에 파견·전보된 공무원 현황(1992년 4월말)

	총인원	파견	전보
서독연방정부기관→동독소재 연방정부기관	13,679명(군인 4,800포함)	9,042명	4,637명
연방정부기관→州정부기관(동독)	1,322명	1,023	299명
서독 州정부기관→동독 州정부기관	8,375명	5,380명	2,995명
총 계	23,376명	15,445명	7,931명

㊤ 퇴직한 공무원파견

이미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前職공무원도 199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구동독지역 행정체계 재건에 참여토록 하였다. 이 경우, 과거 퇴직시 상응할 직급에서 임금계약에 따라 일정액을 받으면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연금신청권은 계속 보장받았다. 아울러 구동독지역에서 근무한 만큼 연금 년도 산정에 최고 75% 가산하였다.

85) 통일원, 『통독 4주년 현황과 평가』(서울: 통일원, 1994), 36면. 연방정부에서 16,600명, 서독 州정부에서 8,337명, 서독지방자치단체에서 10,000명 이상 파견한 바 있다.

## ④ 교육훈련 및 연수지원

동독지역 공직자들은 민주적 법치국가 행정이념에 부합하고 서독의 법률에 맞추어 변화되어야 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공무원교육이 실시되었다. 연방정부는 동독정부로부터 인수한 공직자와 동독지역에서 신규채용된 공무원 93,00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또한 공직자 교육비 9,500만 마르크를 지원하기도 했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1,400여명의 서독출신 자문역들을 신연방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기도 하였다.

## ⑤ 기타 시설 및 장비지원

뿐만 아니라 사무실 장비, 특수한 전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물품들(도로건설 행정을 위한 건설장비, 토지등기소를 위한 장비 등), 법전들, 행정지침들, 서식용지와 전문서적들을 지원하였다. 연방내무부는 특히 구동독지역주에 속한 모든 郡(Kandkreis), 市(Stadt), 읍·면(Gemeinde)들에 연방법전집을 배포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약 400만DM(한화 24억원)가 지출되었다고 한다. 특히 신설 州들의 경찰관들을 위하여 1990년 가을, 긴급조치로 약 80만 마르크 상당의 업무규정집과 法주석서(Kommentar)를 배포하기도 하였다. 새로운 州들의 기동경찰대가 현대적인 휴대용 및 출동시 장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연방내무부 1992년 예산에 2,100만 마르크가 책정되기도 하였으며, 1993-1995년까지 예산안에 8,000만 마르크가 책정되기도 하였다.

## (2) 연방 및 州행정기관의 구축

통합조약에서는 수도를 베를린市로 정하고, 의회와 행정부의 소재지 문제는 독일통합이 이루어진 후에 결정된다고 규정하였다. 구동독정부의 중앙행정기관은 서독정부의 각 부처에 흡수되었으므로 해체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통일된 정부의 중앙부처는 통합관련 업무의 변화에 따라 일부 기구개편이 있었다. 서독의 연방부처 중 통일전 동서독 관계를 담당하던 내독관계부는 폐지되고, 그 직원들은 대부분 연방내무부로 들어갔다.<sup>86)</sup> 동독시

86) 김영탁, 1997, 203면.

절에는 필요 없었던 행정기관이지만 통일후 연방정부 소관으로 이관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방행정기관을 동독지역에 확대·설치하였다. 그 예가 『연방재산관리사무소』였으며, 관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5개의 연방관세청 지청을 비롯한 다수의 세관을 신설하였다. 서독의 외무부는 통일되어 구동독의 외무부를 흡수하였다. 그러나 그 기능에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외교업무량이 두 배로 늘어난 것도 아니므로 구동독의 외무부와 그 산하 재외공관은 거의 해체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산하기관 중에서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는 다르다. 연방정부의 기능 중 지역성을 가지고 수행되는 업무는 그 관할지역이 구동독전체로 확장됨에 따라 서독정부의 행정체계가 구동독지역에 새로이 구축되었다. 통일당시 200개 이상의 기관과 직원 56만명이 연방정부소속으로 되었으며, 철도·체신(우편)·국방분야를 포함하면 4,000개 이상의 기관이 연방정부로 이관되었다. 1992년 4월말, 구동독지역에 구축한 연방정부의 산하기관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 소속 1,240개, 철도청 소관 1,353개, 체신청 소관 1,300개, 국경수비대(연방경찰) 소관 91개, 기타 (재무행정, 수자원보호 등) 199개 었다.<sup>87)</sup>

한편, 1990년 7월 동독인민의회가 제정한 州설치법이 통일과 더불어 발효됨에 따라 동독지역에도 5개의 州가 설치되었다. 州설치법을 통해 기존의 15개 지구(道, Regierungsbezirk)를 병합·재편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1952년 7월까지 기존에 소속되어 있던 州가 아닌 다른 주에 소속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郡단위의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개편, 189개의 군은 87개로 축소되었다. 郡의 평균 주민수도 122,000명으로 늘었고 독립시 26개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州설치법은 新연방주의 州의회로 하여금 州헌법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주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인력문제도 심각하였는 바, 과거 동독 관청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공산당과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체계 구축에는 부적합하였다. 그래서 연방정부 및 서독 주정부출신 공무원들이 상당수 신연방州로 많이 파견되었다.<sup>88)</sup>

87) 통일대비정책연수단, 1993, 218면 이하.

88) 김영탁, 1997, 205면.

## (3) 공무원제도의 개편

## ① 통독전 동서독의 공무원제 현황

서독의 공무원제도는 한국의 공무원제도와 비슷하게 공무원법에 의해 의무와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며,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보장되며 실적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체제인 동독에 있어서는 각종 직장이나 산업시설들이 國有 또는 공동소유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졌다. 따라서 각 직장인, 즉 학교교사나 경찰관 또는 경찰관 또는 공장근로자가 공무원 및 非공무원으로 구분이 확실하지 아니한 관계로 공무원의 범위가 불명확하다. 결국 동독의 공무원범위는 서독의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동독의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써 파악할 수밖에 없다. 또한 동독의 행정기관은 공산당 지시의 수행기관으로서 그 곳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한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동독은 계획경제, 권위주의적 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행정망이 비대하였다. 공산체제 자체가 가지는 비능률성은 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법·경제에 대한 개념이나 지식을 소유한 공무원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동서독간의 공무원 數를 비교해 보면, 통일조약 체결시 동독 공직자의 수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바 없다. 국가안전부요원(Stasi), 직업군인(Volksarmee), 인민경찰(Volkspolizei), 철도, 체신 등을 포함한 전체 공직자의 수는 225만내지 230만명 정도였다고 한다. 이는 동독인구 1,600만 명의 14.5%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한편, 서독의 경우는 인구 6,200만 명에 공직자가 490만명으로 7.9%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동독이 서독보다 약 1.7배가 많은 실정이었다.<sup>89)</sup>

## ② 공무원심사 및 재임용 - 동독의 공공기관 종사자의 처리 -

동독의 연방헌법 발효(1990년 10월3일)와 더불어 국제법상 국가주권의 상실, 즉 고용주인 국가가 소멸됨에 따라 동독내 全공무종사자는 원칙상 실업상태로 들어가도록 하였

89) 통일대비정책연수단, 1993, 225면.

다. 그러나 현지 공무체계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실제로는 기존 공공업무 고용관계는 통합조약 제 20조에 의거, 통합 후에도 통합전의 상태와 마찬가지로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재채용절차는 필요했다.

통합에 따라 발생하는 동독 공공기관 및 인원의 해체·축소문제는 연방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는 서독중앙부처가, 州행정과 관련된 기관은 동독의 신설 州정부가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 초부터 新연방주는 경찰을 비롯한 일반행정분야에 걸쳐 공무원임용에 착수하였다.

㉠ 동독 공공기관 종사자의 재심사 기준 등

통일조약 제 20조에<sup>90)</sup> 따라 舊동독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전원 再심사를 받은 후 再임용토록 하였다. 동독지역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문능력 외에 특별히 기본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한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했다. 특히 구동독 국가안전부(Stasi)를 위해 공식·비공식 활동을 했을 경우, 개인적성 문제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sup>91)</sup> 개별심사를 거쳐 新연방주에서는 많은 수의 일반공무원이 재임용되었다. 공직자 전체로 보면 고급직의 경우(hoehere Dienst, 사무관, 경정급 이상) 대부분 해고되었다. 일부는 서독출신 공직자로 충원되었다. 한편 중·하위직과 지방행정기관의 경우, 기존 인력이 대부분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 통일 후 9개월만(1991년 6월말)에 동독지역의 공직자는 50만명 이상 감축, 이로써 과거 200만 명 가량의 동독 공공기관 종사자들 중 140만명 정도가 계속 근무하게 되었다.

통일조약에 따라 일반해고 규정을 마련하였는 바, 1992년 10월까지 해당 공직자의 전문성, 나이(50세), 적성결핍 또는 수요초과를 사유로 정리해고가 가능토록 하였다. 통일조약은 특별한 경우 즉시 해고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마련했는데, 同규정에 따르면, 특수해고의 근거는 과거 동독시절 인간으로서의 기본가치와 법치국가성을 위배했을 때

90) 제20조 【공무원의 법적 지위】 : ① 동독 편입시 공무원의 법적 지위는 부속서 I에 합의한 과도적 규정에 준한다. ② 기본법 제33조 제4항에서 국가권한으로 규정한 공공업무는 즉시 공무원이 수행해야 한다. 공무원법은 부속서 I에 합의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기본법 92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③ 軍人法은 부속서 I에 합의된 규정에 준하여 시행된다.

91) 김영탁, 1997, 207면.

또는 과거 국가안전부(Stasi)를 위해 활동했을 때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서독체제의 신속한 이식과 과다인력의 감축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者는 우선적으로 감축되었으며,<sup>92)</sup> 試補기간(Probezeit) 중에도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 특별해고 사유대상자:

- Stasi(동독 국가안전부) 등 국가안전부 기구에 종사한 者<sup>93)</sup>
- 구동독 공산당(SED)과 대중 외곽기구에서 체제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한 者
- 시민적·정치적제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66년 12월 19일)에 보장된 인권과 인권에 관한 일반선언(1948년 12월 10일)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위배된 행정행위를 하였던 者

· 적법해고 대상자:<sup>94)</sup>

- 전문적 지식의 부족이나 개인적성의 부적합으로 업무요청에 부응하지 못한 者
- 통독 후에는 더 이상 행정수요가 존재하지 않아 업무할당을 받지 못한 者
- 지금까지 존재하던 업무부서가 대체기관으로 이전되지 않은 채 해체될 기관에 종사하는 者 등이다.

### ㉠ 심사담당기관

잔류공무원 중 정식공무원(Beamte) 또는 계약직 공무원(Angestellte)으로 계속 근무 여부는 각 연방부처,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와 예산의 운용범위 내에서 결정되었다. 특히 임명전 반드시 **가옥관청**(Gauck Behoerde: 동독 국가안전부의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추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자동 해고되었다. 독일에는 중앙인사·조직·행정관리기관이 별도로 없어 각 부처별로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직 및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92) 통일대비정책연수단, 1993, 227면 이하.

93) 박이도, 『독일통일과 통일독일의 이해』(서울: 신지사원, 2000), 188면 이하: 【슈타지 범행처리】와 관련하여, 동서독간에 종종 갈등이 유발되었다. 서쪽에서는 공평하고 정당한 범행처리를 진행하려 했지만, 슈타지 희생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때때로 슈타지 논쟁은 과거 동독의 전반적 체제에 대한 반감과 아울러 독일사회주의 통일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94) 주독대사관, “동서독 행정체제 통합”(통일원 북한자료센터 소장, 100-37)참조.

③ 보수수준 및 시보(試補)기간 결정

신연방주는 통일조약에 따라 1992년 12월31일까지 州공무원법을 자체적으로 제정할 의무가 있었다. 공무원의 재임용, 봉급, 연금 등에 관한 주요 경과규정은 통일조약 위임에 따라 연방법으로 규정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동독출신 공직자에 대한 시보기간을 정하는 것이었다. 1991년 1월 9일 연방 내무부에 의해 『구동독 공무원 중 해고되지 않고 인수되는 자들에 요구되는 유예기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구동독의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해고되지 않고, 연방정부, 신설 州정부, 지방행정기관에 인수되는 자들은 공무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등급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시보기간은 원칙은 3년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급직(hoehere Dienst, 5급 이상, 대학 졸업자격 이상): 4년의 유예기간
- 중급직(gehobene Dienst 6, 7급, 전문대학 졸업자격 이상): 3년의 유예기간
- 하급직(mittlere Dienst, 8, 9 고등학교 졸업자격 이상): 2년의 유예기간
- 단순직 혹은 기능직(einfache Dienst, 중학교 졸업자격 이상): 1년의 유예기간

이 기간 동안 舊체제와 관련된 反법치국가적인 과거 전력여부와 직위에 상응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지를 보증해야만 비로소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 아울러 同기간동안 헌법상에 명기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새로운 체제가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집중적인 재교육이 실시되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新연방주에 재임용 혹은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봉급 수준이었던 바, 서독에 비하여

- 1991년 7월 1일부터 60%,
- 1992년 5월 1일부터 70%,
- 1992년 12월 1일부터 74%,
- 1993년 7월 1일부터 80%,
- 1994년 10월 1일부터 82%,

1995년 10월 1일부터 84%로 각각 인상 조정되었다. 서독지역에 적용되었던 노동과 임금협상에 관한 기본권리가 잔류하는 동독지역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지만, 임금 협상자들간의 협상을 통해 동독지역의 생산성을 감안-동독지역의 경제발전과 재정상태에 따라 결정<sup>95)</sup>-하여 동서독간 임금과 노동조건 차이 조정을 단계적으로 진

행시키기로 하였다.<sup>96)</sup> 한편, 2001년 8월 현재 연방국경수비대 동부지역대(BGS-Ost) 소속인 東베를린출신 경찰관들의 봉급수준은 86.5%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3년 이내에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한다.<sup>97)</sup>

#### ④ 실직된 동독 공공기관 종사자 대책

통합에 따른 해체·축소조치에 해당되어 실직상태로 들어가는 공무원들은 대기급료 청구권을 가졌다. 그 액수는 과거(통합전) 6개월간 지불되었던 평균급여액의 70%였다. 대기급료는 50세 이하의 공무원의 경우 6개월간, 50세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는 9개월간 지급되었다. 실직과 동시에 이들은 각 지역별 노동청(Arbeitsamt)에 실업신고를 하여야 했다. 이 때 이들은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 등의 일반조치 피적용 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들 중 상기 대기급료 지불기간까지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한者들은 자동적으로 실업처리되었다.

### 3. 동서독 경찰통합

구동독지역의 신설 5개주가 연방에 가입함에 따라 새로운 행정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이와 병행하여 경찰통합 역시 추진되었다. 연방경찰차원에서는 州범죄수사국(Landeskriminalamt)의 설치, 국경수비대의 통합·흡수작업이 진행되었다. 한편, 동독의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가 신설된 주정부 중심(자치 혹은 분권화)의 경찰체제로 개편하기에 이르렀다. 베를린을 제외한 신설 4개 州경찰은 구동독출신의 인민경찰의 재임용·

95) 김영탁, 1997, 207면.

96) 1991년부터 휴가비가 지급되었으며, 1991년 12월1일 이전에 1회의 연차 보너스가 지급되었다. 1991년 4월1일부터 주 40시간 노동제가 도입되었다. 1991년 7월 1일부터 연방보수법(Bundesbesoldungsgesetz)이 동독에 적용되어 임금협상결과에 따라 각 직급별로 서독의 60%정도 지급되었다. 1992년초 노사협상에 의거, 서독지역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예정(1992년 70%, 1993년 80%, 1994년 100%)이었지만, 2001년 8월 현재 수준은 87%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97) Moldenhauer, Harmut, Die Vereinigung der Berliner Polizei, 2001, p. 24. 동인은 서베를린경찰청에 근무하면서, 통일과정에 실무간부로 시종일관 참여한 자로서, 2001년 8월 현재 베를린州경찰청 경무과장(총경급)이다. 필자는 1999년과 2001년에 걸쳐 동인과 두 번 면담한 바 있다.

심사 위주의 경찰통합이 진행되었으며, 베를린의 경우는 서베를린경찰에 동베를린경찰이 흡수·통합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따라서 州단위 경찰통합 방식은 베를린방식과 나머지 신설 4개주 방식으로 대별된다.<sup>98)</sup>

1) 통합준비단계 - 1990년 10월 3일 이전까지 -

(1) 통합前 양독경찰의 접촉 및 교류

80년대 후반 집단이주(난민)사태가 시작되자 경비업무 등에 경찰이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 붕괴 이전까지 사회 각 분야에서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교류를 추진해온 것에 비하여 경찰간의 교류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베를린장벽 개방으로 동독 주민의 왕래에 따른 질서유지, 교통문제 등의 협의를 위해 베를린 경찰청장과 동독 국경 수비대장 간에 첫 접촉 이후 양(兩) 경찰 간에 업무협조를 위한 직통전화 및 무선 통신망이 개설(동독 국경수비대와 베를린 경찰청 상황실간)되었다.

통독과도기인 1989년 11월-1990년 9월말까지 장벽개방으로 양독주민의 자유왕래 실현에 따른 치안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각급 경찰당국간에 부분적, 개별적 접촉이 시작되었다. 실제로 서베를린과 동베를린 경찰간에는 다른 연방 州들에 비하여 그 속도가 제일 빨랐다. 국경개방에 편승한 범죄에 대해서 양독경찰이 공동 대처기로 하였다. 상호간 범죄자신원 파악에 협조하면서 동독거주 외국인 신병보호 문제에 공동관심사를 가졌다. 그러면서 양독 경계지역의 검문소를 철폐하기 시작했다. 1990년 4월 1일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국경을 넘어 개최된 베를린 수상경기팀의 경비를 공동으로 하기로 합의, 동서 경찰간에 최초의 합동근무가 실시되었다.

98) 베를린의 경우는 서베를린중심의 경찰통합이었지만, 4개 신설 州 경찰의 경우, 자매결연한 서독 州 경찰의 지원하에 통합이 추진되었으며, 현재까지 근무하는 경찰관의 대다수가 구동독경찰(인민경찰) 출신이라는 점이다.

<표 4> 통합전 동서독경찰 교류 및 협력 略史

- '90.2.5 동독내무장관훈령에 의거, 서독연방범죄수사국과 유사한 임무와 구조를 가진 범죄수사국 동베를린에 설치
  - '90.3.18 동독 자유총선에서 개혁세력인 “독일동맹” 압승
  - '90.5.5 양독 내무장관 회의시 양경찰간에 경찰법, 경찰조직의 통합, 경찰관의 상호 교환, 공동교육 실시 등의 합의
  - '90.5.28 동독정부, 국경경비대를 서독국경수비대를 모델로 한 국경수비대로 전환
  - '90.6.29 서독내무장관 회의, 新연방주에 민주경찰제도수립을 자매결연방식으로 지원하기로 결의
  - '90.7.1 양독 내무장관, 양독간 국경전면개방 및 국경이용범죄에 대한 공동대처 등의 경찰협정체결
  - '90.7.22 동독의회, 동독의 행정구역을 해체하고 新연방 5개 주를 부활하는 州설치법 (Laendereinfuehrungsgesetz)을 제정
  - '90.8.31 양독간 통일조약 체결
- ※ 기본법 제23조에 의해 동독지역의 5개 주가 독일연방에 편입되는 형식으로 통일
- '90.9.13 동독인민의회, 『경찰의권한과임무에관한법』 제정
  - '90.10.3 독일통일

(2) 신(新)연방주 경찰제도 구축을 위한 지원

1989년 12월 15일 연방수사국(BKA)에서 동독지역의 경찰지원분야를 조사하고, 후일 내무부에 보고한 바 있었다. 1990년 6.6~8 동독 국경경비대를 서독식 연방국경수비대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대표단 간에 협의한 바 있다. 1990년 6월 29일 서독 내무부 장관 회의에서 新연방주 민주경찰제도 수립의 지원을 위해 서독주와 신연방주 사이에 자매결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sup>99)</sup> 한편, 동베를린은 서베를린에서 (흡수)통합하기로 하였다. 통화동맹 및 사회통합조약 발효일인 1990년 7월 1일 양독 양독 내무장관에 의해 경찰협력협정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양독간 국경의 전면개방, 국경이용범죄의 양독경찰 공동대처 등에 합의했다.

1990년 9월 13일 민주적으로 선출된 동독의 인민의회에서 『경찰의임무와권한에관한법』이

99) 자매결연 현황: 브란덴부르크↔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자알란트; 작센 안할트↔니더작센; 메클렌부르크-포포메른↔슐레스비히-홀스타인, 브레멘, 함부르크; 작센↔바이에른, 바덴- 뷤르템베르크; 튀링엔↔헤센

제정되었다. 통일직전 동독의 데 메지에르정부는 서독의 국경수비대를 모델로 한 새로운 국경수비대를 창설하였다.

특히 베를린의 경우, 1990년 6월 초부터 10월간 베를린 내무성에 경찰통합을 위한 준비기획단(Projektgruppe)을 설치·운영하였다. 기획단내 7개 분야의 실무기획단(Arbeitsgruppe)을東西베를린 고위 경찰관 및 실무 경찰관(분야에 따라 4~10명)으로 구성하였다. 분야별 지원동향은 다음과 같다:

- 인사 및 교육분야: 동서베를린 경찰관 교류, 동베를린경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 법규분야: 경찰조직법 등 각종 법규 정비
- 조직분야: 각급 경찰조직 정비
- 치안경찰분야: 경찰서, 수사경찰, 교통경찰근무 등
- 수사경찰분야: 범죄예방 및 수사경찰 근무
- 직할대분야: 기동대, 기마대, 항공대 등
- 장비분야: 각종 경찰장비지원 분야

경찰통합에 관한 실무계획을 단기·중기·장기계획으로 구분, 총 160여 개의 리스트를 작성, 항목별로 준비하였으며, 동베를린 경찰관으로부터 경찰관서 제원, 장비, 인원현황 등을 입수 활용하였다.

### (3) 경찰권(Polizeihochheit)의 귀속

통일조약 제13조와 기본법 제23조에 의거, 동독지역의 5개 주가 독일연방에 편입되는 형식으로 통일, 즉 통일과 동시에 서독의 기본법 체계가 동독지역의 5개 주에도 적용되었다. 따라서 각주에 관할권이 있는 경찰권(Polizeigewalt)은 독일통일의 날인 '90.10.3.00:00를 기하여 동독 중앙정부의 해체와 동시에 東베를린과 新연방 5개 州정부에 귀속되었다. 베를린 지역은 통일축제 행사로 인하여 양(兩)베를린간의 합의 및 점령군의 양해하에 '90.10.1. 13:00를 기하여 西베를린에서 경찰권을 이미 인수하였다.

## 2) 연방경찰제도의 구축 및 통합

### (1) 신(新)연방주에서 연방국경수비대(BGS) 조직의 구축

동독의 국경수비업무는 군사적 편제로 운용된 국경경비대에 의하여 수행되었는 바, 이것은 국방부소속이었다. 서독의 경우는 국경수비대가 내무부소속이었으며, 연방경찰조직이었다. 동서독 통일 직전 '90.4월 데 메지에르정부는 국경경비대(Grenztruppe)를 서독식 국경수비대로 개편하기로 결정하고, 8,600명 규모(실제인원 7,000명)의 국경수비대를 창설하였다. 同국경수비대 창설시 기존의 국가안전부(국가공안부)소속의 여권통제(Paßkontrol) 부대 요원이 흡수되었다. 서독에서는 국경수비대(BGS)의 전문가 등을 동독 국경경비대에 파견, 새로운 국경수비대 구축을 지원하였다. 동독국경경비대는 통일조약 발효일인 1990년 10월3일 이후 연방국경수비대(BGS) 동부지역대(BGS-Ost, 본부는 베를린 소재)로 편입되었다.

#### ① 국경수비대 업무의 확장

연방국경수비대 동부지역대는 초기부터 국경수비업무 외에 통일조약 관련 규정에 따라 철도경찰(Bahnpolizei)<sup>100)</sup> 및 항공교통 안전업무를 담당하였다. 베를린에 대한 연합국의 유보권이 폐기됨과 동시에 연방국경수비대는 서베를린 공항의 국경통과 통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국경수비대 동부지역대로 잠정 인수·재편된 동독 국경경비대 소속원 7,000여명은<sup>101)</sup> 新연방주 지역 경찰을 지원하고, 체코·폴란드 국경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1992년 1월 23일자 「업무이양법」에 근거해 연방국경수비대(과거 서독지역 포함)가 철도경찰 및 항공치안 업무를 인수하였다.<sup>102)</sup> 업무이양은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열차와 항공기가 국경을 통과하여 운행된다는 점이 반영되었다. 새로운 임무에 맞게 1992년 4월 1일부터 연방국경수비대가 5개지역대(동·서·남·북·중)로 조직이 재편되었다. 국경수비대의 관할영역이 의도적으로 과거의 내독국경을 초월하여 확정되었

100) 서독의 철도경찰은 통일전 별도의 기구였으나, 통일후 연방국경수비대(BGS)로 통합되었다.

101) 인수인원은 총 7,153명(국경경비대 2,859, 내무부 3,129, 여권통제대 944, 세관 194, 기타 27)이었다.

102) Bundesgrenzschutz, 50 Jahre BGS: 1951-2001, 2001, S. 35.

다. 1991년에서 1994년까지 매년 2억6천만 마르크를 동부지역대의 구축을 위해 투입되었다고 한다.

② 흡수인력의 심사 및 재임용

통일 당시 동독국경수비대 인력 7,000명은 통일조약에 따라 연방국경수비대에 편입되었으며,<sup>103)</sup> 연방국경수비대 동부지역대는 인수받은 인력의 재심사를 비롯하여<sup>104)</sup> 소속원에 대한 재(再)교육 및 과거행적 조사후 부적격자를 배제하였으며, 新연방주 출신자 중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하였다. 지휘부의 5%는 서독 연방국경수비대에서 파견된 경찰관들로 배치하였다. 일단 인수된 동독출신 국경수비대요원은 설문지(Personalfragebogen)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였다(설문지 별첨). 설문지의 말미에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경우 해고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가옥廳(Gauck Behörde)등에의 조회를 통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해고할 수 있는 법치국가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인사위원회(Personalauswahlkommission)가 구성되고 해고여부에 대한 추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인사위원회는 1명의 면담관(경정, 경감급), 1명의 서기(경사이하급), 1명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인사위원회 위원 또는 변호사로 구성되었다. 인수된 경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이 실시되었다.

③ 국경수비대 동부지역대(Grenzschutzpräsidium-Ost) 현황

2001년 8월 현재, 국경수비대 동부지역대에는 10,5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동부지역대 규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동부지역대 본부에는 **공보실**, **제1국**(Abteilung I, 상황실, 제1과: 국경지역경비경찰, 항공경찰, 철도경찰, 국경통제경찰 임무수행; 제2과: 정보통신, 차량, 장비; 제3과: 교육), **제2국**(Abteilung II, 제4과: 인사, 제5과: 경무, 제6과 설비, 제7과: 예산, 제8과 醫務, 서무 등)이 있다.<sup>105)</sup>

103) Bundesgrenzschutz, 2001, S. 35.

104) 동독 국경경비대 소속원들에 대한 재임용·심사과정에서 일반공무원심사 기준인 Stasi관련성, 인간성 혹은 법치국가원칙 위배, 세계인권선언 등의 원칙 위배 및 인권침해여부가 고려되었다. 同旨 이관희, 『독일통일과 독일경찰조직의 정비』(용인: 치안연구소, 1996), 61면.

105) 필자가 2001년 8월 국경수비대 동부지역대 본부를 방문했을 시, 제2국장(Martin Buch, 경무관급, 행정담당)과 수명의 舊동독 국경경비대 출신 경찰관들과 인터뷰를 한 바 있다.

- 국경수비서 4개소(Bundesgrenzschutzamt Berlin, -Frankfurt/Oder, -Pirna, -Chemnitz),
- 기동경찰대 4개대(Bundesgrenzschutzabteilung Blumberg, -Bad Düben, Neustrelitz, Braunschweig)<sup>106)</sup>
- 국경수비대 항공대(BGS-Fliegerstaffel Blumberg)
- 국경수비학교(Aus- und Fortbildungszentrum Neustelitz)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sup>107)</sup>

주요임무는

- 폴란드지역 431km, 체코지역 454km의 국경통제 및 국경지역경비
-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작센주의 철도경찰 업무
- 베를린 공항(3개소), 드레스덴 공항의 국경 통제업무 및 항공경찰업무
-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작센(일부), 메클렌부르크-포포메른(일부)州 국가비상사태 대비 및 경찰력 지원, 베를린 소재 연방대통령관저 경비를 맡고 있다.



국경수비대 동부지역대 구동독출신 경찰관들과 면담후 기념촬영

106) Neustrelitz : 3개 중대, 1특수대, Blumberg : 3개 중대, 1특수대, Bad Dueben : 3개 중대, 1특수대, Braunschweig : 3개 중대가 편성되어 있다.

107) BGS, Bundesgrenzschutz/Federal Border Police, 2000, p. 11.

## ④ 구동독경찰 출신의 경찰관들과의 면담사례

연구진은 2001년 7월 24일 본소재 국경수비대 서부지역대를, 동월 27일 베를린소재 국경수비대 동부지역대를 각각 방문하였다. 구동독 국경경비대 소속으로 있다가, 통일후 연방국경수비대 소속으로 재임용된 바 있는 경찰관들을 면담하였다. 당시 서부지역대 소속 총경급 경찰간부는 “자신은 그나마 통일후에도 높은 직책을 유지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사실 서독인들은 마치 우리들에게 점령군과 같은 인상을 주었다”고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통일이 너무 빨리 왔다는 언동을 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급직, 하급직으로 재임용된 바 있는 동부지역대 소속 경찰관들은 자신들이 재임용되면서 그전에 자신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직책에서 강등된 채로 임용되었다면서 상당히 격앙된 감정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으며,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체제가 바뀌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불평을 털어놓기도 하였다.

## (2) 신연방주의 『췌범죄수사국(Landeskriminalamt: LKA)』의 창설

## ① 과도기간 중의 조치

1990년에 들어서면서 독일 통일은 역사적 필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장차 통일에 대비하여 동독에서는 중앙집권적 경찰을 연방구조로-분권화된 경찰로 전환할 것을 구상하게 되었다.<sup>108)</sup> 따라서 동독에서는 1990년 2월 5일 동독 내무부장관의 훈령(0104/90)에 의거해 경찰본부를 동독 중앙범죄수사국(혹은 廳)(Zentrales Kriminalamt der DDR=ZKA)으로 개편하여 동베를린에 설치하였다. 同부서는 경찰본부를 구조와 조직면에서만 바꾼 것이 아니라, 장차 연방체제에 편입될 것을 고려하여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중앙범죄수사국 하에 지방차원(Bezirks- und Kreiskriminalämter, 道 및 郡단위 수사관서) 수사부서들이 구성되었으며, 상당한 권한들이 이양되었다. 이시기에 접어들면서

108) 이관희, 1996, 37면.

동독의 『중앙범죄수사국: ZKA』과 서독의 『연방수사국: BKA』은 구조 및 임무면에서 많이 유사하게 되었다. 1990년 7월 27일 동독지역에 州제도를 도입하는 법률 『州설치법』이 통과되었다. 따라서 중앙범죄수사국도 후일 구성될 州범죄수사국(LKA)들과 협력하여 全동독지역내의 경찰업무를 맡게 되었다. 또한 1990년 9월 13일 『경찰의과제와권한에 관한법률: PAG』이<sup>109)</sup> 제정되면서, 동법에 중앙범죄수사국의 임무와 위상에 관해 규정되었다. 이 중앙범죄수사국은 1990년 10월 3일 통일조약 발효와 더불어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sup>110)</sup> 통일조약 부속문서에 의해 『연방수사국법』이 동독지역에서 유효하게 되었다.<sup>111)</sup> 『연방수사국법』에 따르면, 각 연방주는 연방과 州간의 수사경찰상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州단위의 중앙관청 즉 『州범죄수사국: LKA』을 운영할 의무를 진다. 또한 『연방수사국법』 제3조 2항은 공동수사국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직후부터 주별로 개별적인 州범죄수사국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sup>112)</sup> 1990년 10월 3일부터 동독당시의 『중앙범죄수사국』을 인수하여 新연방 5개

109) Gesetz über die Aufgaben und Befugnisse der Polizei vom 13. September 1990(GBl. I Nr. 6 1 S. 1489).

110) 이관희, 1996, 38면.

111) ● 통일조약 제14조 1항(州의 공동기관): “기본법상 명시된 개별관할권에 의거 주정부에서 담당하는 자체 고유업무를 동독편입 효력의 발생시까지 수행했던 시설과 그 산하기관은 규정확정시까지는 제1조 1항에 언급된 州들을 통해서 그 주들의 공동시설로 계속 수행한다. 이는 과도기적인 수행이 州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경우에 한한다.”; ● 부속문서 1, 영역 C, 제3절, 2번: “1973년 6월 29일 공포되고 1974년 12월 9일의 법 제8조 제3항을 최종개정한 『연방수사국 설치에 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독의 중앙범죄수사국은 조약 제1조 1항에 명시된 지역에서 법 제3조 2항에 따라 또 이 주들에 연방범죄수사관이 없는 한 공동주범죄수사국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112) 1989년 동독의 평화로운 혁명에서부터 재통일에 이르기까지 생겨난 주요문제는 중앙범죄수사국(ZKA)의 업무와 권한이 연방수사국(BKA)과 주경찰의 과제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 엄격히 중앙집권적으로 통제되어 온 범죄해결방식이 신연방주에서 스스로의 독립된 체계를 가지고 효율적인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를 하는 데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재통일 시점에서 신연방주가 제대로된 경찰집행기관을 구축한다는 것은 어려웠다. 예를 들면, 구동독지역에서는 지역마다 정보체계가 달랐고, 범죄와 관련된 자료와 지문자료는 중앙에서 관리되었으며 심지어 경찰내부적으로 자료의 송수신이 거의 불가능했다. 그리고 특수한 분야 전문가도 극소수였으며, 이마저 중앙에만 있었다. 따라서 통일과 더불어 중앙범죄수사국의 기능이 제대로 즉각적으로 발휘되기란 어려운 실정이었다. 同旨 이관희, 1996, 41면.

주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범죄수사국**(Gemeinsames Landeskriminalamt: GLKA)이 설치, 운용되었다.<sup>113)</sup> 다시 말하면, 통일전 중앙범죄수사국이 연방수사국법 및 통일조약 따라 新연방주 지역의 범죄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동범죄수사국(GLKA)으로 전환되었다. 공동범죄수사국에서는 新연방주 범죄수사국 설립을 위한 기획단을 설치,<sup>114)</sup> 연방수사국과 합동으로 지원하였다.

② 조직 및 임무 등

조직은 지휘부 및 6개 분야(중앙행정업무, 정보 통신, 범죄수법, 수사·조사, 형사기동대, 국가안전업무)에 총인원 607여명으로 구성되었다. 공동범죄수사국장은 브란덴부르크 범죄수사국장이 겸임하였다. 주요 임무는 연방수사국과 각종 범죄정보 교환, 新연방주에서의 범죄수사 및 예방업무, 수사력 지원, 경찰 전산망 운영, 범죄통계작성과 新연방주 범죄수사국 설립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同부서는 新연방주 내무장관의 합의에 의하여 운영되었으며, 합의내용으로써 공동범죄수사국 소재지(베를린), 공동범죄수사국장(브란덴부르크 범죄수사국장), 비용공동부담(주민수에 비례) 등이었다고 한다. 한편, 공동범죄수사국의 비용 등은 新연방주간의 협정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일부주가 이에 반대하기도 하였다.

③ 新연방 州범죄수사국(LKA)의 구축

신연방주는 1991년말까지 독자적인 州범죄수사국 설립을 계획하였다. 연방수사국 및 자매결연 서독주의 지원하에 1991년 12월초 신연방주는 각각 개별적인 州범죄수사국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동독지역의 경찰수사업무를 담당하기로 되어 있던 공동범죄수사국

113) 이관희, 1996, 40면.

114) 州범죄수사국 설립 지원동향: 공동범죄수사국에서는 주범죄수사국 설립준비기획단(Projekt-gruppe)을 구성, 新연방 주범죄수사국 설립을 위한 기본모델확정, 연방수사청 및 자매주의 전산 시설 등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다. 기획단 조직은 5개 분야에 걸쳐 다음과 같이 편성되었다: • 기본업무: 지휘부, 인사교육, 예산; • 광역범죄수사: 조직, 경제, 위폐, 환경보호, 불법무기, 마약, 국가보호, 형사기동대 등; • 범죄수법, 감식: 범죄수법, 감식; • 정보·전산: 전산, 범죄정보; • 범죄 예방업무 등이었다. 기획단은 공동범죄수사국장, 新연방주 범죄수사국의 각 참모, 브란덴부르크 내무부 파견자, 연방수사국 파견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GLKA)은 '91, 12. 31자로 해체되었다. 그러나 수사경찰상 중요한 사건 및 질서행정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공동범죄수사국은 1992년 1월 31일까지 기본조직으로서 지위를 사실상 유지하였다.<sup>115)</sup> 소속원들(639명)은 본인의 지원에 따라 전원 州경찰청이나 私기업에 취업이 앞선되었다. 기술 장비는 5개 州의 합의에 따라 분배되었다. 지문감식체계와 범죄 관련 통계는 베를린 포함 6개 지역으로 분배와 동시 중앙주민등록소, 연방수사국으로 송부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전산기록에서 구동독당시 전과자에 대한 再분류작업이 서독의 법률체계에 따라 이루어졌다. 1992년도 1월 1일부터 新연방주는 각 주의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고유한 범죄수사국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新연방주 범죄수사국(LKA)대표들은 제120차 범죄수사국회의(AG-Kripo)에서부터 투표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 3) 新연방 州경찰조직의 재건

#### (1) 新연방 州의 새로운 경찰법 제정

기본법과 통일조약(Einigungsvertrag, 제13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동독지역의 중앙집권화된 경찰권(Polizeigewalt)은 新연방주에 귀속되었다. 『州설치법(Ländereinführungsgesetz)』에 의거 5개의 新연방주가 설치되었다.<sup>116)</sup> 1990년 10월 14일 新연방 州의회 선거 이후, 주정부 구성과 더불어 경찰업무는 州내무부에 소속되었다. 한편, 통일조약 부속문서2, 영역c, 제3절 2에 의해 과도기적 경찰입법인-『경찰업무법(Das Polizeiaufgabengesetz der DDR: DDR- PAG)』은<sup>117)</sup> 새로운 각주경찰법이 新연방주 지역에서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에 新연방주에서는 주의회 선거 및 주헌법 등의 제정이후, 자매州(Partnerschaft) 경찰법과 “독일연방및각주의모범통일경찰법초안”을 모델로 고유

115) 이관희, 1996, 58면.

116) 동독 인민의회에서는 '90.7.22. 동독 행정구역이던 15개 지구(Bezirk)를 해체하고 이전의 5개 주의 부활을 규정한 『州설치법』을 제정하였다. 당초 규정은 '90.10.14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통일조약에 따라 '90.10.3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117) 동독의회는 1990년 9월 13일자로 『경찰의임무와권한에관한법』을 제정하였는 바, 이는 서독의 『통일경찰법모범초안』을 모델로 한 것이다. 그리고 同법률의 제정으로 그때까지 유효하던 『인민경찰법('86.6.11.개정)』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동법은 베를린에서는 '90.10.2까지, 新연방주에서는 새로운 경찰법이 제정 될 때까지 유효하였다.

한 경찰법 및 경찰조직법 등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각주별로 경찰법 내지는 경찰조직법을 단기간내에 입법해야 했기 때문에 서독지역 자매주의 경찰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예를 들면, 新연방의 작센州(Freistaat-Sachsen)는 서독의 바이에른(Bayern)州와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州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경찰법의 경우는 바이에른州의 경찰관계법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경찰법을 상당부분 참고하였다.

소방대, 여권(Paß), 주민등록(Anmeldung), 수송경찰 등의 업무는 경찰로부터 분리됨으로써, 관련경찰관들은 타행정기관으로 편입되었다. 구동독 경찰사무의 상당부분이 일반행정 업무화 하였다. 예를 들면, 브란덴부르크州의 경찰조직법은 경찰의 일반적인 소관사무로 危險의 防止(Gefahrenabwehr), 범죄의 수사와 소추를 열거하고, 특별한 임무로서 교통, 집회, 무기, 탄약 그리고 폭발물에 관하여 법령에 의해 위임된 업무로 제한되었다.

(2) 新연방주 경찰조직 재건을 위한 지원

1990년 6월 29일 新연방주에서의 법치국가, 행정 및 치안제도의 구축을 위한 지원을 舊연방주(서독)와 新연방주 사이의 자매결연(Partnerschaft)체결방식에 의한 지원체제로 결정하였다. 예를 들면, 경찰공무원의 파견, 전보, 물적인 지원, 교육상의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서독의 자매주에서는 新연방주별로 50~90명 경찰관을 1991년도 초부터 3개월에서 1년 이상 파견·전보, 각급 경찰관서 지휘부 및 핵심 부서에 배치, 민주 경찰제도 수립을 지원하였다. 파견경찰관은 기본봉급 외에 별거수당, 여행경비 등을 연방정부로부터 받고 인사상 경력평정 가산점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각종 경제적 인사상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적어 차출형식으로 선발 파견한 경우도 있었다.

<표 5> 통일전후 각 주 자매결연 상황

자매결연 서독주	신연방주(Neue Bundesländer)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자아란트	브란덴부르크
니더-작센	작센-안할트
쉴레스비히-홀슈타인, 브레멘, 함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포메른
바이에른, 바덴-뷔르템베르크	작센
헤센	튀링겐

공무원의 파견 및 전보와 관련하여 어려웠던 점은, 동독지역이 서독지역에 비하여 제반 사회적 여건이 열악하였으며, 쏘가족이 이주하거나 장기간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동독지역에 새로이 적용되는 서독의 법률제도를 갑자기 이해시키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상호 이질적인 문화적 속성 때문에 동독경찰(Volkspolizei)로부터 인수된 경찰관들은 앞에서는 순종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뒤에서는 불만을 토로하는 등의 양태를 보였다고 한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무사안일적 경향으로 인해 자율적인 업무수행자세가 결여되어 있었다. 한편으로 새로운 법률제도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비자율적인 업무태도의 지속으로 새로운 사태에 처했을 때, 상황적응력 및 대처가 미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일부 파견, 전보된 서독지역 출신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자세로 인하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sup>118)</sup> 동독지역파견 서독경찰관 중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사전교육이 되어 있지 않고 비자발적인 차출형태로 선발하여 관련분야 경험이 전무한 경우 또는 3개월 정도의 여행성 근무형태가 발견되어 동독 경찰관들이 불만을 사는 경우가 있었다 한다.

#### ① 헤센주의 튀링겐주에 대한 지원

헤센주 경찰공무원을 파견하였는 바, 경찰관서 및 기동경찰국의 구축시 조언을 하였으며, 고위직을 맡았다. 튀링겐 기동경찰에서의 신입순경급 경찰관 교육과 재교육에 참여하였다. 경찰공무원 파견문제는 헤센주의 인력부족이라는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미 예정되었던 헤센주에서의 교육과정을 개방하였으며, 튀링겐주에서 개설된 교육과정을 지원하였다. 또한 헤센주 경찰관서에서의 실습기회를 제공하였다. 물적 지원으로는 순찰차량, 모터싸이클, 무전기 등 통신시설, 사무실집기, 전문서적, 방패, 방탄조끼 등을 지원했다. 헤센주에서 사용하던 것을 지원할 경우, 사용 가능한 것들만을 선별, 정비 후 지원했다. 물적 지원에 따른 모든 비용은 헤센주에서 부담하였다.

118) 서독인들은 동독주민들을 무능력하고, 게으르다고 비웃는 가하면, 동독인들은 서독주민들을 인간미가 없다, 사무적이다, 혹은 건방지다는 등의 부정적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② 브란덴부르크주에 대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지원

퇴직경찰관을 자문관으로 파견한 바 있으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경찰관을 파견하거나 전보한 경우도 있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찰고위직(경찰서장급 이상)은 파견되거나 전보된 경찰관이 맡았다. 장·단기 파견의 경우, 별거수당, 귀가여행 보조금, 주거 및 취사에 대한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특히 전보된 경찰관의 경우, 1계급 특진의 배려가 있었다. 그러나 주택사정, 열악한 기반시설, 주거 및 교육환경 등으로 인해 장기간 파견이나 전보를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기동경찰국에서 브란덴부르크주 경찰교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매주 경찰이 제공하는 특별세미나 과정과 관서실습기회에 참가하였다.

③ 작센주에 대한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지원

작센주의 자매주인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푸라이부르크경찰서에서 작센주 켐니츠(Chemnitz)시의 지구경찰서에 파견된 경찰관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01년 7월 5일 15:00 푸라이부르크경찰서 북부지구경찰서 순찰부서의 Bernd Binninger 경장(Polizehauptmeister in Polizeirevier-Nord, PD-Freiburg)을 면담하였다. 동인은 1979년 경찰에 입문, 현재 40세로 약 22년간 근무중, 작센주에 1992년 1월-4월까지 4개월간 파견된 경찰관이였다.

【당시 Karl Max Stadt라는 도시(현재명 Chemnitz)에 파견, 1-2주씩 돌아가면서 근무하였다. 공산주의식으로 이름이 부여된 거리이름을 원래 이름인 Chemnitz市로 복원시켰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1년 반이 지나서 파견되었다. 바이에른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 약 30여명의 경찰관들이 파견되어 KMS의 각 지구경찰서마다 1명씩 배치, 근무하였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경찰청에서는 경찰서의 규모에 따라 5-6명씩 차출하였다. 한편, 바이에른주는 국경을 맞닿고 있어서 더 많은 경찰관을 파견했다. 당시 푸라이부르크경찰서에서는 각 지구경찰서(PR)마다 1명씩 차출되었는데, 6명이 파견되었다(KMS에 6명 파견됨). 2명은 그곳에 현재까지 남아 있고, 자신을 포함하여 4명은 돌아와서 PD-Freiburg에서 근무중이라고 한다.

당시에 30-35세 가량의 젊은 경찰관들을 배치시켰는데, 그쪽에서는 더 많은 경찰관을 원했지만, 푸라이부르크경찰서 책임자들이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파견된 경찰관들은 고속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 순경급 출신인 푸라이부르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그곳에 가서는 경

위, 경감급(g.D.), 경정급(h.D.)로 승진했다고 한다. 자신의 동료도 지금은 고급간부로 근무중인 데, 지구경찰서장이 되었다고 한다. 보통 지구경찰서장은 경감급 혹은 초임 경정급이 맡고 있다.

경찰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법률체계가 틀려서 우선적으로 5-6주간 정도의 개략적인 부분을 교육시켰다. 서독의 법률체계와 법제도를 이식시켰기 때문에 그냥 주입식으로 교육했다. 통일초기에는 동독지역 경찰관들이 그대로 수용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 비밀경찰분야(Stasi)에 근무했던 경찰관들부터 차츰 해고(Entlassung)되기 시작하였다. 동독지역 경찰관들은 수 많은 종류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서독지역 경찰관들은 법집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법률적 한계가 있었지만, 동독지역 경찰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현재 작센주 경찰에는 바이에른 출신의 경찰관들이 대다수 경찰고위간부를 점하고 있다. 차량, 무전기체제가 틀렸으며, 동독의 경찰관들은 거리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동독주민들의 대화를 도청하고 멀리서 주택을 감시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서독처럼 거리에서 일하는 경찰관의 모습이 아니었다. 작센주는 바이에른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警察法을 모체로 하여 경찰법을 제정했다고 한다.】

#### (4) 新연방州 지역의 민주경찰 구축

연방에 속하는 경찰기능(연방국경수비, 연방범죄수사)은 법률개정을 통하여 연방경찰 조직으로 재편되었다. 동독경찰의 업무중 인민경찰업무는 新연방주경찰에서, 수송경찰·항공경찰업무는 연방국경수비대에서 인수하고 소방업무, 여권 및 주민등록업무, 교도관 리업무 등은 소관행정관청으로 이전되었다.

한편, 東베를린은 베를린州 경찰청에 통합되었다.

##### ① 브란덴부르크州

1991. 11. 1, 경찰법 및 경찰조직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경찰조직은 과거 포츠담, 프랑크푸르트오데르, 코트부스 경찰국을 재편하여 州내무부 경찰청 산하에 수사경찰국(Basdorf), 기동경찰국(Potsdam), 경찰학교(Basdorf), 기술 및 공급지원대(Potsdam)로 구성하였다. 경찰서는 관할인구를 최소한 25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5개 경찰서(Potsdam, Frankfurt/Oder, Cottbus, Erschwalde, Oranenburg)와 수상경찰서를 설치했으며 포츠담 경찰서에는 경찰특수대로서 형사기동대, 항공대, 교통순찰대, 경호대 등을 조직하였다. 기동대는 연방정부로부터 지휘 및 출동에 필요한 차량 등의 장비와 자매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Selm 기동대의 교육 및 인적인 지원을 받아 포츠담 기동경찰국

산하에 5개 중대와 1개의 기술지원대를 설치하였다. 지휘관의 일부를 서독경찰관으로 배치(3명)하고 소경찰관의 3분의 1이상을 서로 다른 지역으로 진출시켜 동독시절 주민들의 경찰관에 대한 감정을 해소시키도록 시도하였다.

② 메클렌부르크-포포메른州

1992, 8. 4. 「경찰법」 및 「경찰조직법」을 제정하였다. 경찰조직은 과거 슈베린, 노이브란덴부르크, 로스톡경찰국을 재편하였다. 州내무부 제4국 경찰청산하에 주범죄수사국(LKA), 경찰학교, 기동경찰국, 치안경찰국(Schutzpolizei- rektion),<sup>119)</sup> 수상경찰국(Wasserschutzpolizeidirektion)으로 구성하였다.

필자는 2001년 7월 25일 Neu Brandenburg 경찰서(Polizeidirektion)에서 구동독출신으로서 재임용된 경찰관들을 면담하게 되었다. 신연방주 경찰상황이 대체로 비슷하듯이 현재 근무하는 경찰관들 전원이 재임용된 경찰관으로서, 서독지역 출신은 하나도 없다고 하였다.<sup>120)</sup>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찰서장도 구동경찰관 출신이라고 한다. 참석한 경찰관들은 수사부서 책임자(경정급)와 방법·경비담당 경감급, 그리고 홍보담당 경찰관 등이었다. 자신들은 통일 이후 오히려 직급이 강등되었다고 불평을 털어놓기도 하였다. 그래도 당신들은 사정이 좋은 편이 아니냐는 필자의 질문에 정색을 하면서, 왜 우리가 피해를 받아야 하는 지 모르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인 경찰관도 있었다. 특히 메클렌부르크-포포메른주의 경우, 구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SED)의 후신이랄 수 있는 PDS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서 실업율이 무려 27%정도나 될 정도로 통일후 10여년 동안 그 후유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는 지역이었다. 구동독시절 사용하던 경찰서 건물을 현재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119) 치안경찰국 산하에 5개경찰서(Schwerin, Rostock, Stralsund, Neubrandenburg, Anklam), 23개의 파출소, 5개의 수사경찰 파견대를 설치하였다.

120) 동독지역의 낙후된 도시에 서독출신 경찰관들이 자원하여 근무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다. 통일이후에도 같은 경찰관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별 부정적인 평가없이 시민들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근무하고 있다는 진술이 있었다. 달라진 것은 새로운 법률체계와 제복이었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거에는 당사자들이 경찰서에 찾아와서 사건을 처리하곤 하였는데, 요즘은 담당경찰관들이 현장에 진출하여 사고처리를 한다고 귀뜸하기도 하였다.



멕클렌부르크-포포메른州 노이브란덴부르크 경찰서 경찰관들과 면담장면

뿐만 아니라 Neubrandenburg시 방문중, 구 동독 출신 경찰관으로서 수사과장(경정급)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후 현재 영업용 택시운전사를 하고 있는 者를 통하여 과거 동독지역 경찰관들의 실상에 대해서 자세한 진술을 청취할 수 있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재임용시 50세 이상의 경찰관을 전원해고하는 바람에 통일후 현재까지 퇴직자가 한명도 없으며, 신입경찰관 채용은 거의 없었다고 하며, 향후 심각한 인사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하였다.



舊동독출신 경찰관으로서 再임용되어 (수사경찰)경정급으로 근무다가 퇴직한 운전사와 기념촬영

③ 작센- 안할트州

1991.1.29 『경찰조직법』을 제정하였다. 경찰조직은 과거 마그데부르크, 할레경찰국을 재편하여 내무부 제2국에 경찰관서 조직과 설비조직으로 구성하였다. 설비조직으로는 경찰학교, 기동대(6개 중대)와 기술지원대로 구성하였고, 경찰관서 조직으로는 수사경찰국과 관할인구에 따라 3개의 대도시 경찰서(Magdeburg, Halle, Dessau)와 2개의 도시 외 지역 관할경찰서에 49개소의 파출소, 1개의 수상경찰서, 경찰항공대를 각각 조직하였다.

④ 작센州

1991.7.12. 새로운 경찰조직법을 제정하였다. 경찰조직은 과거 드레스덴, 라이프찌히, 켐니츠경찰국을 재편하여 내무부 3국의 『경찰청』 산하에 3개의 경찰국과 수사경찰국(LKA), 기동대, 경찰직할대(형사기동대, 경찰항공대, 경호대, 수상경찰대, 기마대, 장비지원대)와 경찰대학과<sup>121)</sup> 경찰학교를 설치하였다. 3개의 경찰국(Cheumnitz, Dresden, Leipzig) 산하에 13개의 경찰서가 조직되어 있다. 인구 및 개략적인 치안수요는 참고자료에 소개되어 있다.

⑤ 튀링엔州

1991.5.14. 『경찰조직법』, 1992.6.4. 『경찰법』을 각각 제정하였다. 경찰조직은 과거 에어푸르트, 게라, 쥬울경찰국을 재편하여 내무부경찰청 산하에 치안경찰국(Schutzpolizei), 행정경찰국, 수사경찰국(LKA)으로 조직하였다. 치안경찰국 산하에는 기동대(5개 중대, 항공대, 형사기동대, 교육대)와 7개 경찰서, 43개 파출소, 7개의 수사대와 교통순찰대 등으로 조직하였다.

121) 필자는 2001년 8월경, 작센州 경찰대학을 방문한 바 있다. 同경찰대학은 바덴-뷔르템베르크경찰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들을 상호 교환방문시키고 있었다. 매년 신입생 60명씩 입학시키고 있었다. 현재의 학장은 법률가로서 자아란드(Saarland)州 경찰고위간부출신의 인사가 초빙되어 근무중이었다.

## (5) 베를린경찰청(Polizeipraesident- Berlin)의 통합사례

## ① 통합전 및 과도기 베를린경찰 동향

## ㉠ 통합전 일반 현황

1742년 베를린경찰청이 개청되었으며, 현재 경찰청장(Polizeipraesident von Berlin)은 제44대 Hagen Saberschinsky 청장이며, 1992년 임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2차 대전후(1945년-1989년까지) 베를린은 4대 연합국에 의하여 분할되었다. 1948년 동·서베를린으로 분할되면서, 후일 동베를린은 동독의 수도가 되었다. 당시 서베를린은 20개 행정구역에 20개 지구경찰서와 172개 파출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경찰관들은 약 16,000여명에 달했다.

1961년 8월 13일 베를린장벽이 설치된 후부터 동서베를린간에는 165km에 이르는 장벽이 세워졌다. 서베를린 시민의 숫자는 약 240만 명 정도였다. 그리고 면적은 500km<sup>2</sup>였다. 통합되기 전까지 분단된 東·西베를린에는 완전히 다른 경찰체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1974년 경찰개혁을 통하여 종전의 지구경찰서(Inspektion, 20개소)-파출소(Polizei- revier, 172개소) 개념에서, 대형 경찰서(Direktionen, 5개소, 행정구역기준)-지구경찰서(Polizeiabschnitt, 31개소)체제로 바꾸었다. 동기간 東베를린 역시 8개의 행정구역에서 11개(지구경찰서 11개, 파출소 28개)로 증가하였다.<sup>122)</sup> 1990년 10월 1일 당시, 서베를린경찰청에는 17,701명의 경찰관이, 동베를린에는 인민경찰 11,796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었다.<sup>123)</sup>

## &lt;표 6&gt; 1990년 10월 1일 현재 東西베를린경찰 현황

서베를린(West, 17,701명)		동베를린(Ost, 11,796명)	
Schutzpolizei	11,117명	VP-Praesidium (동독경찰본부)	2,514명
Kriminalpolizei	1,756명	VP-Inspektion	6,796명
Gewerbeaussendienst	136명	Wachkdo. Missionschutz	1,225명
Wachpolizei	1,934명	Wasserschutzinspektion	98명
Polizeiverwaltung	2,758명	Transportpolizei	704명
		17.-19. VP Bereitschaft	459명

122) Moldenhauer, 2001, S. 6.

123) Moldenhauer, 2001, S. 19.

통일전 동베를린 경찰은 전체주의적 경찰로서 명령을 단지 수행할 뿐 그 배경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는 경찰이었으며, 자율적인 업무수행능력이 결여되어 있었고, 간부의 경우는 상당한 전문교육을 받았으나, 비간부의 경우는 9개월간의 단기교육을 받았다. 교육내용 중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비중이 주어졌다. 이에 반해 서베를린 경찰은 신입경찰의 경우에도 3년간에 걸친 신입교육을 주경찰학교(Landespolizeischule: LPS)에서 받았으며, 자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졌다.

### ㉠ 경찰통합전의 상황

1989년 11월 9일 장벽붕괴 후 11월 10일부터 베를린 경찰청과 동독국경수비대 간에 접촉이 이루어졌다. 1990년 2월 경찰청상황실(Lagezentrum)과 국경수비대 상황실간에 전화연락망이 구축되었다. 『통일』이라는 경찰상황의 예견으로 인해 10월 3일이 아닌 10월 1일 13:00에 동베를린 지역 경찰관을 인수하였다. 이는 다른 新연방 州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베를린 州의 경우는 전적으로 서베를린경찰에 의한 흡수방식이었기 때문이다. 1990년 10월 1일 당시, 동베를린지역을 흡수함으로써 관할구역은 80%, 인구상으로는 60%의 치안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1990년 7월 실무자그룹이 구성되었으며, 반은 동베를린 경찰관, 반은 서베를린경찰관으로 구성되었다.

10월 1일 인수 즉시, 동베를린지역 경찰관서장을 서베를린경찰관으로 교체하였다. 그러나 별도의 경찰관서를 설치하지는 않고, 기존의 서베를린 경찰서의<sup>124)</sup> 관할구역(Direktion 1, Direktion 5)을 동쪽으로 확대하는 식으로 동베를린지역의 치안을 맡았다. 통일 3년 후(1993년 7월 1일부터) 2개의 경찰서(Direktion 6, 7)를 증설하였으며, 7개 경찰서, 48개 지구경찰서로 편성되었다.

10월 3일 이후 고위직(경정급 이상)이 자발적으로 사퇴하고, 상당수가 조기퇴직하였다. 실제로 동베를린 출신 고위급 경찰관 중 유일한 경정급 1명만이 재임용되었는데, 동

124) 독일의 일반경찰서를 Polizeidirektion(작은 규모나 지구경찰서의 경우 Polizeiinspektion 혹은 Polizeiabschnitt, Polizeirevier)이라고 칭한다. 대규모경찰서인 경우는 관할인구의 규모가 40만 명 전후이다. 경찰서장의 계급은 금색별 4개(Leitender-Polizeidirektor, 고참총경)이다. 인구 20만 전후의 경찰서장은 금색별 3개(Polizeidirektor, 신입총경급)이다. 금색별 1개는 지구경찰서장급(Polizeirat, 경정급)이다.

인은 일반경과 출신이 아닌 전기공학분야(Technik) 특수경과 전문가였다고 한다.<sup>125)</sup> 통합 당시 동베를린 경찰력은 경찰국 근무 2,500여명, 경찰서근무 6,800여명 등 총 11,797명이었지만, 실제 인수된 경찰력은 철도경찰로 인수된 700명의 수송경찰을 제외한 9,600명이었다.<sup>126)</sup>

## ② 경찰통합의 추진

### ㉠ 경찰통합상의 기본지침

베를린 경찰 통합상의 기본지침은 다음과 같다:

- 경찰관서의 통합은 베를린 경찰청에서 통합지휘
- 경찰청의 지휘부는 현상태를 그대로 유지
- 동베를린 지역 경찰서의 관할권은 새로운 서베를린 경찰서의 관할에 배속
- 동베를린 11개의 경찰서의 기술장비 등 시설은 현상태를 그대로 유지
- 양베를린 경찰간의 경합업무는 점차로 현실화
- 기존 동베를린 경찰의 관할권은 즉시 소멸시키는 것이었다.

### ㉡ 경찰통합의 추진

1990. 6월초부터 10월까지 베를린 내무성에 경찰통합을 위한 기획단(Projektgruppe)을 설치하여, 동기획단내 7개 분야의 실무기획단(Arbeitsgruppe)을<sup>127)</sup> 동서 베를린 고위경찰관 및 실무경찰관(분야에 따라 4~10명)으로 구성하였다. 경찰통합에 관한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 160여 개의 리스트를 작성 항목별로 준비하였다. 동베를린에 인접한 서베를린 3개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동베를린 지역까지 확장하여 통합하였다.

동베를린 경찰 지휘관을 교체하고<sup>128)</sup> 1990년 10월 1일자를 기하여 경찰관을 상호교

125) 필자가 Moldenhauer 경무과장과의 인터뷰시 청취한 내용임.

126) 경정급 1명, 경위·경감급 638명, 경사이하 4,625명, 일반직원 1,182명, 기능직 838명 등이었다.

127) **인사 및 교육 분야**(동서베를린 경찰관 교류, 동베를린 경찰관 교육 프로그램개발 등), **법규분야**(경찰조직법 등 각종 법규정비), **조직제도분야**(각종 경찰조직 정비), **치안경찰분야**(경찰서, 수상경찰, 교통경찰 등), **수사경찰분야**(동서베를린의 범죄예방 및 수사경찰), **직할대분야**(기동대, 기마대, 항공대 등), **장비분야**(각종 경찰장비 지원)였다.

128) 민주법치국가 경찰업무의 신속한 이식과 지휘권의 확립을 위하여 동베를린 지역의 경찰서, 파출

환 배치(Personalaustausch)하였다. 경찰업무의 신속한 적응을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에 양(兩)베를린 경찰관을 혼합 배치하였는 바, 서베를린경찰관 2,323명을 동베를린지역으로, 동베를린에서 흡수한 일부 경찰관 2,700명을 서베를린으로 교환 배치하였다.<sup>129)</sup> 동독주민으로부터 경찰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새로운 신뢰확보를 위해 동베를린 지역에 총 586대의 순찰차를 투입, 양베를린 경찰관 2인 1조로 편성, 순찰근무에 배치하였다. 동베를린 전지역에 서독식 지역담당 근무소(Kontaktbereichsdienst: KoB)모델 425개소를 설치하여, 213명의 경험이 풍부한 서베를린경찰관을 배치 1인당 2개소씩 담당하도록 하였다.<sup>130)</sup>

1991년 동베를린지역을 관할하는 2개 경찰서를 신설하기로 확정, 동베를린 경찰관서 등의 건물을 활용하여 1993년 초 제6(Dir. 6), 제7경찰서(Dir. 7)를 신설, 1993년 7월 1일 현재, 베를린 쏘지역은 7개 경찰서, 48개 지구경찰서(Polizeiabschnitten)로 조직되었다.<sup>131)</sup> 동베를린 실무기획단 경찰관으로부터 경찰관서 제원, 장비 인원현황 등을 입수 활용하였다.

### ③ 통합후 베를린경찰청 현황

경찰청은 참모부 및 지휘부(Stab)와 치안경찰국(Landesschutzpolizeiamt),<sup>132)</sup> 범죄수사국(Landeskriminalamt),<sup>133)</sup> 州경찰행정국(Landespolizeiverwaltungsamt),<sup>134)</sup>

---

소, 기동대, 교통순찰대, 수사경찰대등 각급 경찰관서장과 주요 직책은 서베를린 경찰관으로 교체, 배치하였다.

129) Moldenhauer, 2001, S. 20. 서베를린 경찰관 2,323명(고급간부 21, 초급간부 443, 비간부 1,859명), 동베를린 경찰관 2,700명(대부분 파출소와 교통 근무대에 배치하고 주범죄 수사국 320, 경찰서 수사과에도 220명 배치).

130) 서베를린에서 KoB 근무자가 되려면 최소한 연령이 40세 이상된 者로 근무경력 10년 이상으로 계급은 초급간부(Polizeikommissar, 경위)이상이 되어야 했다.

131) Moldenhauer, 2001, p. 28.

132) 치안경찰국(Landesschutzpolizeiamt)에는 ● 지휘부: 경비과, 지휘 및 장비과, 경무과, 상황 및 지령실 등 4개 과로 구성되어 베를린 시내 쏘치안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며, ● 7개 경찰서, 48개 지구경찰서가 소속되어 있다. ● 공공안전 및 교통경찰부(Oeffentliche Sicherheit und Straßenverkehr): 지휘부, 근무지도과, 특수근무과, 시설보호대, 2개의 기동대, 교통경찰대, 수상경찰대, 항공대, 기마대 및 경찰견 훈련대 등이 소속되어 있다.

133) 범죄수사국(Landeskriminalamt: LKA)에는 근무지도감독과, ● 1과: 범죄예방대책, 인원배치

경찰학교(Landespolizeischule),<sup>135)</sup> 통일정권범죄수사부(Zentrale polizeiliche Ermittlungsstelle)<sup>136)</sup> 등 5개局단위 기능으로 조직되어 있다(그림 2 참조). 1997년 7월 1일 현재 경찰관 등 28,3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표 7 참조).

<표 7> 베를린경찰청 인원 현황(1997.1 현재)

계	치안경찰	수사경찰	행정공무원	시설경찰	기타
28,326명	14,340명	2,667명	3,935명	3,089명	4,295명

한편, '93. 6. 16. 신설되어 베를린 동북부 5개 행정구역(동베를린지역)을 관할하는 베를린 제7경찰서(Direktion 7)의 경우, 2,292명의 경찰관으로 면적 128.67km<sup>2</sup>, 615,000명의 주민을 관할하고 있는 대규모 경찰서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同경찰서 산하에는 지구경찰서 7개소가 설치되어 있다(표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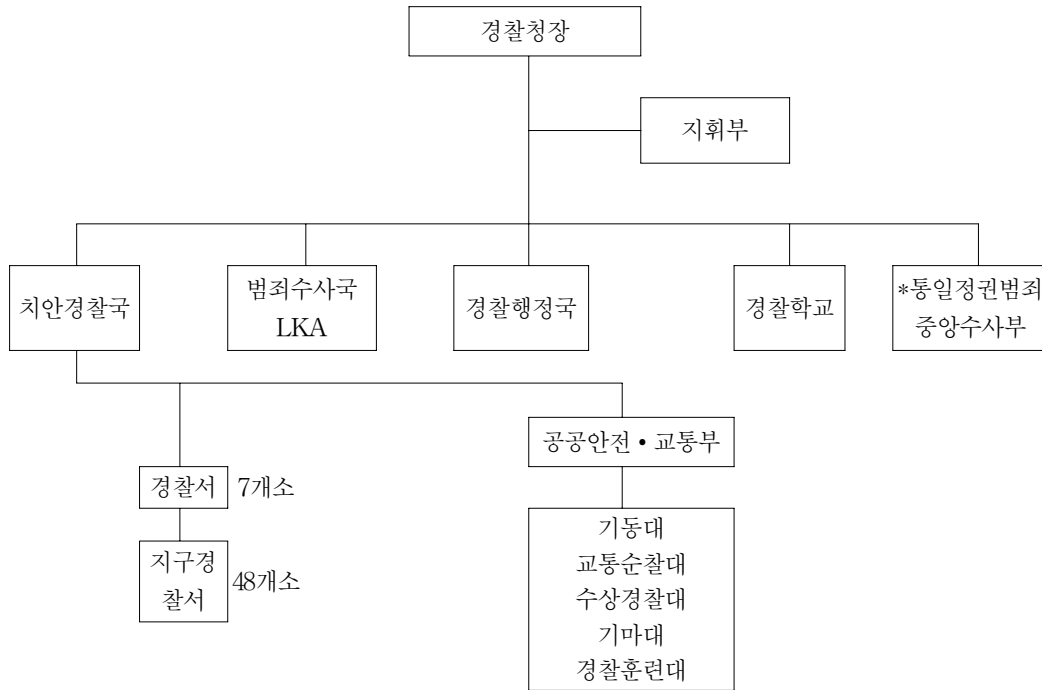
계획, 국내 및 국외경찰업무 협조, ● 2과: 조직범죄, 마약 범죄, ● 3과: 노동관련범죄, 환경보호범죄, 사기, 영업보호, ● 4과: 상해·살인, 재산범죄, ● 5과: 국가안전범죄, 질서유지업무, ● 6과: 형사기동대, 감식업무, 특수임무, ● 과학수사연구소: 독극물과, 화학·환경과, 물리학과, 생물학, 필적·문서감정과, 총기 감정과가 설치되어 있다.

134) **州경찰행정국(Landespolizeiverwaltung)**에는 경찰관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 지휘부: 중앙전산소, ● 1과(인사·예산): 예산, 인사, 근무감독, 의무, ● 2과(장비조달): 시설, 장비, 차량, ● 3과(교통): 교통 및 교통법칙금, ● 4과(통신): 통신행정, 통신기획, 통신조달, 통신시설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135) **州경찰학교(Landespolizeischule)**에는 ● 교무부: 서무, 근무감독, 예산·장비, 장비과, ● 채용과: 경찰홍보, 시설관리, 수사경찰시험관리, 치안경찰시험관리, 시설보호경찰시험관리 등 ● 경찰전문교육과: 고급간부예비교육, 초급간부예비교육, 비간부직 직무교육, ●경찰장비학과: 교통장비, 통신장비, 차량장비 ● 교수과: 교육 및 배치, 교관부, ● 사회교육학과: 심리학과, 교육학과, 예절교육과, ● 체육학과: 신입교육, 직무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경찰학교에서는 순경급 신입경찰관교육과 직무교육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위급 초급간부 신규임용교육은 州공무원대학 경찰학부에서 실시한다. 경찰대학은 베를린교육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다.

136) **통일 및 정권범죄중앙수사부(Zentrale Ermittlungsstelle Regierungs- und Vereinigungskriminalität: ZERV)**는 ● 수사본부 제1과 : 정권 및 통일관련 경제범죄과, ● 수사본부 제2과 : 인권침해 범죄수사과 ※ ZERV는 베를린에 설치된 수사경찰기구으로써 과거 동독시절의 불법행위 및 각종통일관련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총 410명의 수사경찰관(베를린 경찰관 200명, 기타 州 경찰관 210명)이 근무했으며, 2000년까지만 존속하였다.

<그림 2> 베를린경찰청 조직표



<표 8> 베를린 제7경찰서 경찰관 현황('97.4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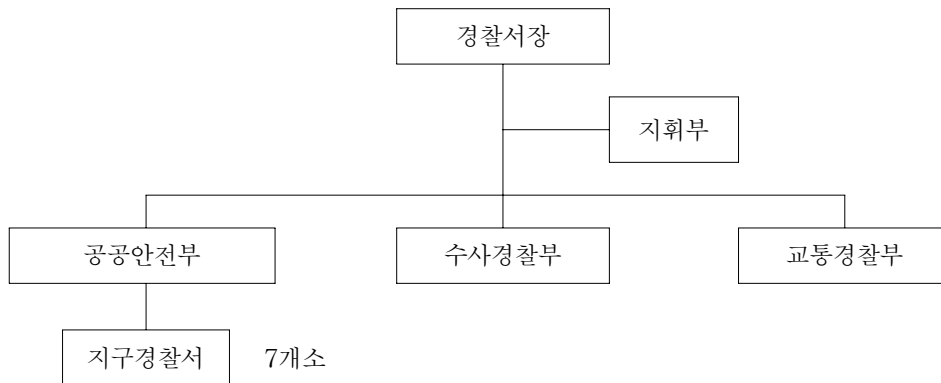
구분	계	치안경찰	수사경찰	일반직	기능직
계	2,292	1,606	229	411	46
동독출신	1,085	658	59	327	4
서독출신	1,207	948	170	84	5

경찰서(Polizeidirektion)는 상황실, 지휘부와 수사경찰부, 공공안전부(치안경찰), 교통경찰부, 기동대 1개 중대 및 산하에 7개 지구경찰서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4 참조).

- 상황실(Lagedienst) : 상황실, 지령실, 유치인관리, 상황분석, 통신실, 컴퓨터실  
 ※상황실은 5개반이 4교대 근무
- 지휘부(Dienstleistung) : 인사, 후생, 경리, 차량, 감찰계
- 공공안전부(Offentliche Sicherheit) : 외근계(지역근무, 외국인업무, 시설보호경찰), 특수근무계, 기동 1개 중대)

- 수사경찰부(Verbrechensbekämpfung) : 형사계(5개반), 수사계, 조사계
- 교통경찰부(Straßenverkehr) : 교통감시계, 사고조사계(6개반이 4교대근무), 교통기획
- 지구경찰서(Polizeiabschnitt)근무는 외근과 내근으로 구분, 외근에서는 순찰업무(차량 및 도보) 및 지역담당근무(Kontaktbereichdienst)를 전담, 내근에서는 외근 경찰관들이 인지한 사건에 대한 사후 처리를 담당한다.

<그림 3> 베를린 제7경찰서 조직표



베를린 제7경찰서 소속 제73지구경찰서(Abschnitt 73)의 경우 총 192명의 경찰력으로 111,408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순찰은 5부제로 1일 3교대 근무, 관할구역을 28개 지역으로 구분, 담당지역의 전반적인 치안업무를 전담하는 28명의 지역전담 경찰관(Kontaktbereichbeamter)이 근무하고 있다.

④ 동베를린 출신경찰관 면담 사례

Koch라는 경장급 경찰관은 현재 40세이며, 아들은 20세 된 아들이 하나 있으며, 군복무중이라고 한다. 동인(同人)은 통일전에는 동베를린 소재 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쇄공(Druckerei)으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통일이 되어서 경찰관으로 늦각기로 입문하였는데, 30개월 가량의 순경급 정식 교육을 받고 정식 경찰관으로 채용, 현재 8년째 근무중이며 그동안 경장급으로 승진하였다. 그런데 동인에 말에 의하면, 자신은 통일전에 경찰관으로 근무한 적이 없었으며, 통일후 정식 교육-독일연방공화국 시민의 일원으로 민

주주의 교육과 헌법-을 받고 경찰직에 입문하였는데도 서(西)베를린 출신 경찰관들보다 월급을 적게 받고 있다고 약간의 불만 섞인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별문제는 없으며,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한다.



동베를린 출신 경찰관과 면담하는 장면

## IV. 동독경찰의 민주화 과정

### 1. 인민경찰(Volkspolizei)요원의 인수 및 재임용

#### 1) 일반사항

모든 신(新)연방주에 경찰조직이 새로 구성되었다. 신설된 州의 경찰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인민경찰을 인수하였다. 신설된 조직에 기존인력이 재배치되었으나 고위직(höher Dienst, 경정급 이상)은 대부분 해고되었으며, 공석이 된 고위직 자리는 서독출신 인사들이 임명되었다. 즉, 경찰서 과장급이상, 지구경찰서장,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州범죄수사국장(LKA Präsident), 州경찰청장(Landespolizeipräsident)급은 전원 교체되었다. 인수된 과거 인민경찰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였다. 그 기준은 적성, 능력, 전문성 등이었다. 뿐만 아니라 연령(50세 미만), 계급(경정 이하)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sup>137)</sup> 일단 심사에 합격하여 경찰에 남아 계속 근무하게 된 공직자도 모두 개별심사를 받았다.

新연방주에서는 72개 항목이 포함된 설문지를 인수된 경찰관으로 하여금 작성케 하고, 이에 근거해 적성을 인사위원회가 심사하였다. 재임용절차(Wiederprüfung)를 거친 경찰관들에게는 1991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부여되었다. 동독관료체제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구에 비하여 일반 행정관료의 숫자는 서독에 비해 많았으나, 경찰의 경우는 서독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실업이 없다”는 기치 아래, 완전고용 상태를 실현하고자 1명이 근무할 수 있는 곳에 3명이 근무할 정도로 과잉 배치한 실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과거 공산체제 하에서 협동농장에 100명이 일하던 곳에 통일 후 현재 같은 농장에는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sup>138)</sup>

137) 실제로 50세 이상된 경찰관은 전원 해고되었는 바, 필자가 방문한 노이브란덴부르크(PD-Neubrandenburg)경찰서의 경우, 서장(총경급)은 구인민경찰(동독)출신 인사였다. 통일 후 10년 동안 정년퇴직(60세)한 경찰관은 한 명도 없었으며, 최근 10년 동안 수사부서에 신규 채용된 경찰관은 2명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 2) 동독 인민경찰의 인수 및 재임용

### (1) 인민경찰의 인수

통일조약 제 13조의 규정에 의거, 동독경찰기관이 연방(국경수비대) 또는 신연방주관할에 속하게 됨에 따라 신연방주경찰은 원칙적으로 기존의 동독 경찰조직 및 인원을 그대로 인수하여 구성하였다. 동독경찰관들도 그대로 그 직책을 유지하게 되었다(표 9 참조).

### (2) 재임용 심사위원회

#### ① 심사위원회 설치

재임용 심사위원회(Personalauswahlkommission) 구성은 각 주별로 내무부, 경찰관서 등에 내무고위관리, 고위경찰관, 경찰노조 대표자, 내무부 인사위원 등과 이들의 공정성 여부를 담보할 수 있도록 법률가, 교회 등 민간기관 대표를 인사위원회에 포함하여 설치·운영하였다.

#### ② 질문서(Fragebogen)를 통한 심사

同위원회에서는 인수된 경찰관들 중 계속 경찰관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자의 적성, 능력, 전문성, Stasi와의 관계 등을 심사하였다. 경찰관으로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상명세, 학력사항, 경찰관으로써의 경력, 슈타지와의 관계 등에 대한 질문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였다. 주에 따라서 질문서내용이 14개 항목에서 72항목까지 세분되었다. 질문서 末尾에 허위내용 발견시 해고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 작성 내용에 대한 진실을 담보토록 하였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질문서 내용을 토대로 경찰관으로의 인수여부, 부여할 계급 등을 결정한 후 Stasi와의 관계를 “슈타지자료관리청(Gauckbehoerde, 가옥廳)”의뢰하여 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138) 필자가 맥클렌-포포메른주 경찰간부와의 대화과정에서 청취한 내용이다.

## ③ 심사 기준

구동독 경찰의 인적청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3가지인 바, 나이(적성판단, 50세 기준), 비밀경찰활동(Stasi협력), 전문성 등이었다. 인민경찰에 대한 심사기준 역시 일반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해고심사기준과 대동소이하였다. 공무원종사자 해고요건을 규정한 통일조약 부속문서(제19장 업무영역a 제3절)에 의한 일반 및 특별해고요건에 해당하면 퇴직시켰다.<sup>139)</sup> 특별해고요건 해당자라도 즉시 해고하지 않고 개별심사과정을 거쳐서 결정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인수된 67,356명의 경찰관 중 85.6%(54,944명)가 재임용되었다(표 9 참조).

&lt;표 9&gt; 동독경찰의 인수 및 재임용 현황

구 분	계	연방국경 수 비 대	베 를 린	메클렌부르크-포포메른	브란덴부르크	작 센	작센-안할트	튀 링 엔
인수 경찰관	67,356	8,859	11,797 (9,600명)	6,000	10,500	11,500	10,000	8,700
재임용 경찰관	54,944	7,000	8,544	5,700	7,000	10,900	9,300	6,500

※ 베를린경찰청의 경우, 동독인민경찰에 소속된 11,797명 중 일반경찰업무에 종사할 9,600명을 인수하였다.

139) 일반해고요건으로는 경찰관이 전문능력이 부족하거나 건강상 또는 적성이 맞지 않아 경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경찰조직의 개편이나 감축으로 그 직책이 소멸한 경우나 달리 고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이며, 특별해고 요건은 경찰관이 인도주의 및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로, 특히 '66. 12. 19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나 '48. 12.10의 "인권에 관한 일반선언"의 원칙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구동독 슈타지에 종사한자로서 경찰관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였다.

### 3) 베를린 경찰청 사례

#### (1) 질문서작성 제출

1990. 10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 동베를린에서 인수되어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舊인민경찰요원(11,000여명)에 대하여 72개 항목의 질문서를<sup>140)</sup> 작성, 제출토록 하였다. 경정급 이상의 고급간부는 78개 항목이었다.

#### (2) 경찰관 인수심사위원회 설치운영

1991년 초부터 약 6개월간 운영하였으며, 총 10개 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심사대상 경찰관의 직급에 따라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고급직 경찰(höher Dienst, 경정, 총경급)에 대한 심사위원회: 베를린내무부의 고위관리를 의장으로, 치안경찰 및 수사경찰 고급간부, 경찰행정국 고급간부, 내무성 인사 위원대표, 동독경찰 인사관계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 중급직 경찰(gehobener Dienst, 경위, 경감급)에 대한 심사위원회 의장은 경찰청 고위간부가 맡았다. 경찰청 및 각 경찰서에 고급간부를 의장으로, 치안 및 수사경찰간부, 행정관, 인사위원회대표, 동독경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 하급직 경찰(mittlerer Dienst, 비간부 경찰관)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설치하지 않고, 초기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이후에는 인사위원회 구성없이, 경찰청장(Polizeipräsident)에게 일임하였다.

#### (3) 심사결과

인사위원회는 질문지 내용을 토대로 적성, 학력, 경력, 전문지식, 건강상태 등을 종합

140) 질문서는 18페이지 총 72개 항목으로 신상명세, 학력, 지금까지 경험한 직책, 슈타지와와의 관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여 경찰관으로 인수 여부, 어느 계급을 부여할 것인지, 평생고용관계(Fristlose Kündigung)로 고용할 지, 해약고용관계(Kündigung)로 할 지에 대하여 그리고 정상적인 해고를 할 지 비정상적인 해고를 할 지에 대하여 추천을 하도록 권한이 부여되었다. 단순 과반수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였고, 인사위원회 위원에게는 투표권이 없었다. 설문지에 근거한 심사 외에 슈타지와외의 관련여부를 Stasi 자료관리청(Gauck廳)에 의뢰를 통한 최종적인 조회 및 확인절차를 거쳐서 만약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을 경우에는 해고되었다.

인민경찰의 고급간부라도 서베를린의 고급간부 계급은 일체 부여하지 않았으며, 계급을 하향 조정하였다. 인수된 동독경찰 고위직 1명(특수경과출신)을 제외하고, 모두 서독경찰 중간직(경위·경감급)으로 받아들여도록 추천되었고, 동독경찰 중간직의 일부는 서독경찰 중간직으로, 일부는 하위직(m.D.)으로 받아들여도록 추천되었다. 인민경찰 고급간부중 '90. 10.3. 현재 45세 이상 되고 5년 이상 근무한 者는 고참 경위급(Polizei-oberkommissar)으로, 45세 미만 者는 신참 경위(Polizeikommissar)를 부여하였다. 초급간부 및 비간부급에 대하여는 계급을 1-2단계 하향 조정하였다.

인수 당시 인민경찰의 고급간부들은 대부분이 심사 이전에 스스로 사직한 바 있다. 인민경찰 11,797명 중 9600명을 인수·심사하여 8,544명은 긍정적으로 1,056명은 해고 추천하였다. 심사절차를 거친 경찰관들에게는 새로운 경찰교육과정이 개설되었다. 교육과정 종료시 시험을 통과하면 정식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하면, 전문성 결여를 이유로 해고되거나 경찰관보조원(Polizeiangestellter)으로 강등되었다.<sup>141)</sup> 1991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보경찰관-3년간 試補기간(Probezeit)-으로 재임용 되었다. 시보기간 중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시보기간 후 정식공무원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 인수된 동독경찰관의 언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점은 그들이 아주 종속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아니면, 도전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점이었다.

141) 경찰보조원들은 주로 경찰청사경비, 안내, 수위실 등에서 근무하는 등 주로 단순직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들의 제복은 계급장을 제외하고 정규경찰제복과 거의 똑같다.

#### 4) 브란덴부르크州

심사 이전에 3,000여명의 경찰관이 자발적으로 경찰직을 떠났다. 10,500명이 48개 항목의 설문지를 작성, 1991년 2월까지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서독 자매州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州의 뒤셀도르프市 경찰관이 맡았고, 경찰관 및 경찰노동조합장<sup>142)</sup>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약 95%가 긍정적인 심사결과를 받았다.

#### 5) 인민경찰의 장비 등 처리

장비의 노후화로 폐기처분을 원칙으로 하였다. 서독과 호환성이 있는 장비는 인수하여 사용하였다. 重火器는 독일연방군에 인계하였으며, 특히 구동독의 기동경찰이 보유하고 있었던 중화기인 대공포, 유탄발사기, 장갑차, 화염방사기 등은 독일연방군에 인계하였다. 개인휴대용무기인 ‘Makarow’ 권총은 안전성의 문제와 실탄에 환경보호법상 금지된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 발생, 전량 회수하여 폐기하고 서독製 ‘P6’ 6,000정을 새로이 지급하였다. 동독경찰 차량은 대부분이 동독제인 ‘트라반트’와 ‘바트부르크’로써 대부분 고장 또는 심하게 낡아 있었고, 무전장비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통일 직후 경찰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했다.

연방국경수비대 동부지역대(BGS-Ost)는 국경경비대, 기동대, 국경통제소 등의 건물을 인수하여 새로운 국경수비대 관서로 사용하고 新연방주의 경찰국, 경찰서, 파출소, 경찰학교 등의 경찰관서는 대부분 보수하여 개편된 경찰조직에 맞게 사용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건물이 서독기준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건물로 판정될 정도로 낡아 있었고, 난방 시설이나 위생설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처음 서독에서 파견된 경찰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기동대차량 등은 연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일반경찰관서의 차량들은 자매주의 지원을 통하여 1991년도 초부터 대부분 서독차량들로 대체시켰다. 동독의 통신장비 중 무선장비는 채널이 서로 달라 (동독은 2m 영역방식인 반면, 서독은 4m 영역

142) 독일경찰에는 노동조합(Polizeigewerkschaft: PolG)이 결성되어 있다.

을 사용) 초기에는 경찰서를 통하여 파출소와 교신하는 방법 등으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경찰긴급전화(110) 체계가 동독지역은 구역별로 구성되어 파출소와 경찰서를 통하여 운영, 1993년도 말경에 쉰베를린지역을 경찰청에서 직접 총괄하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전화회선이 워낙 부족하여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 통일 후 1년까지도 차량을 이용하여 구서독 지역까지 가서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발하였다.

## 6) 인수 및 재임용상의 문제점

인수된 동독 경찰관에게 지급할 서독 경찰관의 복장이 준비되지 않아 약 1년 동안은 동독 경찰관 복장에 모자의 표지만 바뀌서 착용하고 근무하기도 하였다. 심사기간이 너무 길어 동독경찰관들은 자신이 경찰관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능력있고 우수한 경찰관들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대부분 미리 개인 기업체 등으로 이직한 사례가 많았다. 당시 해고된 경찰관들 중의 상당수가 통일 이후 빈발하는 범죄로 인해 신설된 신중기업인 용역경비업체 등에 취업하기도 하였다.

경찰관으로 재임용되어 근무에 잘 적응하고 성실히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도 질문서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슈타지 관련 사실이 Gauck청으로부터 통보되면 가차없이 즉시 해고되어 계속 불안감속에서 근무하는 실정이었다.

동독경찰 근무당시 간부교육을 함께 받고 같은 간부로 근무하던 동료가 간부와 비간부로 각각 재임용되어 상하급자로 근무하게 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50세를 기준으로 적성을 판단한 결과, 대다수의 고참경찰관들이 해고되었으며, 통일후 10년까지 퇴직한 경찰관이 거의 없어서 신규경찰관을 채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연령불균형 사태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통일이후 새로운 교육을 받은 신진경찰의 입직 기회가 대단히 축소된 점을 들 수 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여진다”는 불멘소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구동독 인민경찰출신 경찰관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sup>143)</sup>

143) 국경수비대 서부지역대에 근무하는 50대초반의 구인민경찰 출신의 총경급간부는 필자에게 마중을

## 2. 인수된 동독경찰의 再교육<sup>144)</sup>

### 1) 일반행정부서의 경우

고급직(5급이상)의 교육은 『공공행정을위한연방아카데미(Bundesakademie für öffentliche Verwaltung)』에서 실시하였으며, 교육의 중점은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연방주의적·법치국가적·사회적 市場경제적 질서에 대한 인식제고, 법치행정과 능률적인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자질향상에 있었다.

교육과목(일반행정분야)은 다음과 같다:

필수과목: 헌법의 제문제, 행정법총론·각론, 전공분야에 관련된 민법규정, 공무원법, 예산회계법 및 실무절차, 경제학원론 등 5주

선택과목: 재정학개론, 컴퓨터, 정보처리학, 문서보안 등 1주간.<sup>145)</sup>

중급직(6,7급)의 교육은 브란덴부르크州 비젠탈 소재 연방전문대학(Fachhochschule des Bundes fuer oeffentliche Verwaltung)에서 실시하였으며, 하위직(8, 9급)의 교육은 맥클렌부르크-포포메른州 소재 연방행정국(Abteilung der Verwaltung)에서 실시하였다. 한편, 연방의 전문행정부서는 새로운 직원을 해당 전문분야에서 교육시켰다. 예를 들면, 세무행정분야는 재무부가, 연금행정분야는 노동·사회부가 실시하였다. 연방정부는 새로 채용한 연방공무원들이 서독지역의 관공서에서 실습과 청강을 할 수 있도록 허용, 관련분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였다.

---

나오면서, “절대 통일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을 한 바 있다. 체제전환과정에서 희생되는 개인의 삶은 정말 비참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144) 통일대비정책연수단, 1993, 230면 이하.

145) Bundesakademie fuer oeffentliche Verwaltung im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Programm: Lehrgang Grundlagen des Verwaltungshandelns im demokratischen Rechtsstaat vom 08.04 bis 10.05.1991”, 1991, 자료참조.

## 2) 경찰교육제도의 수립

### (1) 구동독시절 경찰교육 실태

#### ① 비간부경찰관(untere Laufbahn)

비간부경찰관은 동베를린과 작센-안할트에 있는 경찰학교에서 5개월간의 기본교육을 마치고 경찰관서(파출소)에서 6개월간의 실습과정을 마치면 비간부경찰관(Unterwachtmeister)으로 임명하였다.

#### ② 초급간부경찰관(gehobene Laufbahn)

초급간부경찰관은 전문대 졸업 또는 비간부경찰관으로 최소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포츠담과 베를린에 있는 경찰간부학교에서 2~3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학사자격과 동시에 초급간부경찰관(Leutnant 소위, 경위급)에 임명하였다.

#### ③ 고급간부(Hoehere Lafbahn)

고급간부경찰관은 베를린에 소재한 고급간부학교에서 3년의 과정을 수료하면 석사자격과 동시에 고급간부(Major, 소령, 경정급)에 임명하였다. 고급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초급간부로서 6년 이상 근무하고 동베를린 소재 훔볼트 대학에서 범죄학을 전공해야 가능하였다. 기타 동독경찰 교육기관으로는 노이스트레이츠의 수송경찰학교, 마그데부르크의 교통경찰학교, 바우헨의 행정학교, 슈베린의 수상(水上)경찰학교, 통신학교, 소방학교 등이 있었다.

### (2) 통합 후 경찰교육 일반상황

기본교육(Ausbildung)은 초기에는 단축된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식교육기간으로 정상화되었다. 순경급 교육기간은 州에 따라서 30-40개월 정도, 경찰대학 교육기간은 36-54개월 정도로 확대되었다.

再교육 및 보수교육(Fortbildung)의 경우, 기본세미나는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경찰의 위상, 역할 및 임무에 관해 소양교육 위주로 진행되었다. 전문세미나는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분야 위주로 진행됐다.

① 중점 교육내용

㉠ 적응교육(Anpassungsausbildung) 과정

다음과 같은 영역이 중점적으로 실시되었다.

- 자유민주사회의 새로운 법률체계 및 사회에 대한 이해 위주의 소양교육
- 통일 이후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경찰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법률지식 및 경찰정신의 함양
- 주요과목 : 국제법, 헌법, 도로교통법, 경비학, 공공 근무규정, 범죄학, 체포법 등

㉡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시

- 경찰관 직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분야별 법률 및 전문지식의 습득
- 주요과목 : 형법, 형소법, 경비 및 지휘학, 환경보호법, 교통 근무규정, 파출소 근무규정, 수사경찰 근무규정, 국제법 및 헌법 등에 대한 교육이 각각 실시되었다.

② 교육기간 및 기관

동독 인민경찰의 교육 상황에 의하면, 인수된 경찰관 중 간부급은 상당한 전문교육을 받았으나, 비간부인 경우는 5~6개월 교육 또는 전혀 경찰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가 있었다. 적응교육은 계급에 관계없이 인수 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자유민주사회의 법체계 및 사회에 대한 소양위주로 3~5주 동안 新연방주 또는 자매주 경찰학교에서 실시하였다. 한편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의 경우는 초기에는 단축된 형태로 진행되었다. 기본교육은 각계급 및 기능에 따라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직무교육은 직무분야별 특수한 문제점 및 쟁점 사항을 도출하여 분야에 따라 2~5주 정도의 기간을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자매주의 경찰교육기관을 이용하였으나 1991년 말부터는 각 주별로 기존의 동독경찰 교육기관을 보수 또는 기동대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기관을 신설하였다. 필자가 방문했던 맥클렌부르크-포포메른주 경찰학교와 경찰대학의 경우도 기존의 다른 교육시설을 개조,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 (3) 베를린주 경찰의 사례

#### ① 적응 및 기본교육과정

교육기간은 1990년 10월~1993년 말까지였다. 교육방법은 첫째, 적응교육 과정시에는 쾰른베를린 경찰관을 대상으로 Spandau경찰학교에서<sup>146)</sup> 4주간(120 시간)의 적응교육을 실시하였다. 둘째, 기본교육은 1년 동안 각 근무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1주일에 1회씩(08:00~18:30) 경찰학교에 출석(년 4회)하여 수업을 받았다. 학교에서의 수업 및 과제내용을 현장실무에 응용 및 동료들과의 근무를 통해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하였다. 특히 교육차출로 인하여 연간 약 2,700명 이상의 치안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同모델을 채택하였다고 한다. 셋째, 교육내용은 연방내무부장관회의에서 추천된 신입교육 3년간의<sup>147)</sup> 내용을 1년으로 단축시킨 내용(위 기본교육의 주요과목)으로 대부분의 교과내용을 요약하여 교육생에게 배포, 근무를 하면서 자율(自律)학습(Selbststudium)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직무교육과정

기간은 1991년 1월~1994년 11월까지 진행되었다. 同과정에서는 지휘 및 경비학, 범죄학, 도로교통법, 환경보호법 등 각 분야별 특수한 문제점 및 쟁점사항을 도출하여 2일~2주간의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③ 교육평가

교육기간 중 3회의 중간시험과 교육종료시의 졸업시험으로 평가하였다. 합격률은 중간시험에서는 약 15%, 졸업시험에서는 약 10%가 탈락하여 이들에게는 1회의 재시험

146) 필자는 2001년 8월 21일 오후 베를린 주경찰학교장(Prof. Heinz Jankowiak)을 면담하고 同경찰학교를 견학한 바 있다. 경찰학교 학생들은 교육기간 중 전일 출퇴근하면서 수업에 임하고 있었다.

147) 독일경찰의 경우, 순경급 신입교육기간은 대체로 30개월전후에 이른다. 주에 따라서는 교육기간이 짧게는 24개월, 길게는 42개월간(연방경찰의 경우)이다. 독일 각주(16개주) 경찰학교에서의 평균 교육기간은 3년 정도이다. 同旨 Rupprecht, Rheinhard (Hrsg.), Polizei Lexikon, 2. Auflage, 1995, S. 356 ff.

기회를 주고 다시 탈락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경비경찰(Wachpolizei, 청사경비, 수위실근무 등) 또는 기능직으로 활용되었다.

④ 문제점

많은 교육기자재와 교관요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인원을 동시에 수용할 장소가 없어 학교시설 및 경찰서 대강당 등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동독 경찰관 중 젊은층에서는 스스로 교관의 강의내용과 관련된 판례집이나 많은 관련서적을 구입하는 등 교육에 의욕적으로 참가하는 반면, 고령층에서는 수업에 관심도 없고 오히려 수업분위기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4)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1990년 10월부터 교관양성이 자매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기동경찰국에서<sup>148)</sup> 이루어졌다. 따라서 하위직(mittlerer Dienst) 신입순경급 기본교육은 1991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한편 중급직(gehobener Dienst, 경위급)에 대한 기본교육은 1991년 9월부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와 브란덴부르크주간의 행정협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州공무원대학 경찰학부에서<sup>149)</sup> 개시되었다. 州공무원대학은 국가행정, 자치행정, 경찰행정 등 세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교육기간은 36개월인 바, 18개월은 이론분야(Theorie), 18개월은 실무분야(Praktikum)로 이뤄져 있다. 1993년 브란덴부르크주 경찰학부에서는 400명의 경찰대학생을 선발한 바 있으며, 동년 8명의 경찰대학원생을 선발하였다.<sup>150)</sup>

148) 독일에서는 신입순경급 기본교육이 대부분 州기동경찰국(Bereitschaftsabteilung, Bereitschaftspräsidium)에서 실시된다. 교육기간은 대체로 30개월 전후에 이른다.

149) 독일경찰에는 경위급 간부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각주에 경찰대학(Fachhochschule für Polizei) 혹은 州공무원대학(Fachhochschule für Verwaltung) 경찰학부(Polizeiabteilung)를 설치하여 36-54개월간에 걸친 대학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있다. 상세한 것은 임준태 외, “독일 경찰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호』(서울: 한국경찰학회, 1999), 107면 이하.

150) 한편 독일에서 면적이 제일 넓고(70,548km<sup>2</sup>), 인구가 두 번째(1,200만명)로 많은 바이에른주의 경우, 州공무원대학 경찰학부체제이며 1993년 720명의 경찰대학생과 18명의 경찰대학원생을 각각 선발한 바 있다.

가능한 한 再교육기회를 많이 부여하려고 노력하였다. 자체세미나와 자매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와 자아란트州 경찰기관 주최의 세미나에 참여기회를 부여하였다. 근무현장에서의 재교육효과를 거양하고 근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무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요약지를 배부하기도 하였다. 중앙에서 실시하는 재교육 외에도 각 경찰관서에서도 순회교관에 의한 재교육이 실시되었다.

새로운 경찰조직에서 낮은 임무(정치, 법률 체제면에서 동서독은 완전히 달랐다)를 맡게된 동독경찰관을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 경찰관서에 배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업무를 습득하도록 하였다. 약 2-3주간에 걸친 자매주 경찰관서에서 실습을 하기도 하였다.

#### (5) 맥클렌부르크-포포메른州 사례

##### ① 통일前 상황

맥클렌부르크-포포메른州 Neustrelitz 경찰학교는 통일전 비간부 경찰 교육기관으로 제 14기동대와 함께 위치하였다. 6개월의 교육기간동안 대부분의 교육내용이 전투와 경비, 스포츠, 사격 및 일반규정, 이데올로기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법률분야의 과목은 극히 일부분이었다. 600여명의 교육생에 비하여 320명이라는 과도한 인원이 배치(실제 경찰관은 절반 정도로 경찰관이 배치되면 그 가족도 타자원 또는 부속시설의 종사원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모든 강의실, 인쇄소, 비디오실 등에는 감시카메라 등의 도청장비가 설치되어 교육내용이나 행동 등을 학교장이 감시할 수 있는 체제였다. 도시주변에 경찰학교에 대한 안내표지판은 물론 학교내에서도 사무실 안내판이 전혀없고 각 교실에도 대부분 검정색 커튼이 설치되었다고 한다.

##### ② 새로운 州경찰학교 조직<sup>151)</sup>

151) 필자는 2001년 8월 22일 오전, 맥클렌부르크-포포메른州 경찰학교(Güstrow소재)를 방문하여 학교장(女, Dr. Marion Rauchert, 동독시절 심리학을 전공한 박사)과 수명의 교관들과 통일과정상의 문제점과 경찰교육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한 바 있다.

州경찰학교(Bildungsinstitute der Polizei M.-V.)조직은 자매주인 쉴레스비히-홀슈타인州 경찰학교를 모델로 하여 3명의 지원경찰관의 도움으로 조직하게 되었다. 교육기간은 24개월이다. 1991년 4월 학교장, 교직원대표, 인사위원, 간사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전교직원 320명에 대한 개별적인 면담과 경력, 적성 등의 심사를 통하여 84명(고급간부 9, 초급간부 39, 비간부 4, 행정직 27, 기능직 5)의 교직원을 선발하였다. 선발인원 84명을 제외한 236명은 同州의 경찰서 또는 연방국경수비대 등으로 진출시켰다.

경찰학교 조직은 경찰학교장 산하에 6개의 행정조직과<sup>152)</sup> 6개 학과조직으로<sup>153)</sup> 구성되었다. 학교내의 직무규정, 교육생 행동지침, 무기탄약규정 등을 철저히 脫군대화하여 새롭게 제정하였다. 전공서적 등도 대부분 맑스·레닌 등에 대한 이데올로기 서적이 대부분이었고 전공서적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쉴레스비히-홀스타인 경찰학교에서 각종 서적, 문구류, 각종양식 등의 일체를 지원받았다.

구동독 인민경찰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적응교육(angepasenswurde Fortbildung) 과정을 4년(1990-1994)에 걸쳐 실시하였다. 교육대상자들은 2주간의 완전세미나, 6주간의 자율학습을 거쳐 시험을 치렀다. 이러한 단기과정을 통해 6,000여명을 재교육시켰다고 한다. 이 특별재교육(Umschulung) 프로그램의 중점사항은 재임용된 경찰관들에게 『새로운 기본권(Neu Grundrecht)개념』을 확립시키는 것이었다. 특히 1994년까지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지 못해 갈등과 비판적 측면을 야기한 55명의 경찰관을 조사한 바 있다고 한다.

한편, 초급간부(경위급)를 양성하는 州경찰대학(36개월 과정)은 독립캠퍼스 형태가 아닌 州공무원대학 경찰학부체제이다.<sup>154)</sup> 同대학 역시 Güstrow에 소재하고 있다. 매년 40-60명을 선발하고 있으며, 인문계졸업학생과 비간부중에서 선발된 者를 혼합(50:50)하여 교육시키고 있다.

152) 교무과(조직계, 인사계, 서부계, 문서계), 기획교육과(신입교육계, 직무교육계, 총괄계), 교수과(교수연구실, 도서관, 인쇄실), 경리과(예산계, 장비기획계, 청사관리계), 의무과 등으로 편제됨.

153) 지휘경비과(지휘학, 경비학, 스포츠), 범죄학과(범죄학, 형사학, 범죄수법), 법률학과(헌법, 일반행정법, 형법·형소법, 도로교통법, 공무원법, 질서유지법), 기술학과(전산, 통신, 원문재생, 차량구조, 사격), 일반교양과(독일어, 언어학, 자연학), 사회학과(심리학, 수사학)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154) 경찰학부장은 Dr. rer. pol. Stefan Rudolph로서 Leipzig대학에서 정치학 및 법학박사를 취득한 者이다.

## V. 결 론

### - 독일경찰통합 방식의 문제점과 시사점 -

독일민족의 통합과정은 서독정부의 꾸준한 대동독 화해정책을 추진한 결과와 동유럽의 민주화·자유화 물결과 개혁·개방정책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시점인 1989년 말부터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sup>155)</sup> 동서독관계는 분단이후 수 차례 경색된 국면이 있긴 하였지만, 정치·경제적으로 월등하게 우세한 서독의 주도하에 상호교류 협력증진과 독일민족으로서의 일체감 형성노력의 지속으로 통합이 가능했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후 통합조약이 가결되기까지 11개월 동안 동서독은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사회, 복지 전반에 걸쳐 엄청난 통합일정들을 소화해내야 했다. 정부와 국민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구상에 유일하게 평화적 통합을 이루어냈다.<sup>156)</sup> 2차 대전 후 冷戰(공산주의: 자본주의)으로 인하여 분단되었다가 통합된 독일의 사례는 오늘날 우리의 분단상황 극복을 위해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향후 초래될 한반도의 급격한 정세변화에 대비한 경찰통합과정에 대한 연구는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국가의 내적 안전(innere Sicherheit)을 담당하고, 공공의 안녕(öffentlichen Sicherheit)과 질서유지(Ordnung) 및 위험방지(Gefahrenabwehr)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과 기능은 남북한 통합과정시 다른 어떤 정부조직의 기능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sup>157)</sup> 이를 위해서는 독일경찰의 통합 경험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우리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본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수행되었다. 통합후 신연방주에서 경찰관으로 재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舊인민경찰들과의 면담내용을 많이 반영하였다. 금번 연구를 통해서 구동독경찰의 민주화와

155) 서독주민들은 통일은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동독주민들은 통일이 너무 빨리왔다고 약간 상반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156) 남북베트남, 남북예멘 등은 무력통일로 인한 내전까지 겪었다.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로 한반도(남북한), 중국과 대만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157) 경찰공무원의 數는 전체 공무원의 10%(군인숫자 제외)를 차지하고 있다.

정과 새로운 체제에 대한 적응과정-인적 청산 및 교육과정-을 살펴보았으며, 통합후 현재까지 舊인민경찰관들간에 잠재되어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경찰통합과정은 연방경찰차원(주범죄수사국의 설치, 국경수비대 구축)과 신연방주 차원의 경찰조직 구축(주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교육기관, 하급경찰관서 차원)으로 대별할 수 있다. 또한 통합방식에 있어서 베를린경찰 통합 방식(흡수방식)과 개별 신연방주 통합방식(인민경찰의 재임용)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신연방주 경찰통합은 서독지역 자매주의 긴밀한 지원과 협조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 진전시, 한반도 경찰통합 방식에는 독일 신연방주 통합 방식이 후유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합의서에 경찰관련 법령 등 서독법체계가 新연방주지역에서 유효하도록 하였고 새로운 경찰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개정된 동독의 관련 법령 (90. 9. 13일 개정 경찰법)이 유효하도록 하여, 과도기 동안의 급격한 혼란을 방지하였다. 통일전 민주적으로 구성된 동독인민회의에서 경찰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등의 자체적인 변화와 연방정부, 연방국경수비대, 베를린경찰 등에서 동독경찰측과 활발하게 접촉을 하였다. 동독경찰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각종 자료·현황입수와 아울러 동독경찰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통일과 동시에 경찰통합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新연방주 경찰조직 재건을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아래 각 주의 특성을 고려한 자매州를 통한 인적, 물적, 교육상의 지원이 통합에 따르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효율적으로 기여했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지원프로그램의 상당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독지역에 서독경찰관 중 일부를 파견, 합동근무를 추진하고, 동독 인민경찰출신들에게 서독자매州 경찰기관에서 교육·연수기회를 부여하여 자유민주주의 경찰체제에 대한 경험을 축적토록 하였다. 전보·파견된 경찰관들에 대한 인사 및 재정상의 배려는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인수·재임용된 경찰관들에 대한 단기 교육프로그램을 현지에서 실시함으로써 치안공백을 메꿀 수 있었다. 同방안 역시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재임용된 경찰관들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했던 교육의 핵심은 민주경찰로서의 “새로운 기본권” 개념에 대한 확고한 인식의 확립이었다. 통합후 신연방주 경찰은 꾸준한 투자를 통해 서독주경찰에 버금가는 교육제도, 시설 및 기반을 확립하였다. 현재는 순경급 기본교

육(경찰학교)은 30개월, 경위급 기본교육(경찰대학)은 36- 45개월, 경정급 고급간부교육(연방경찰대학원)은 2년 과정으로 끌어올렸다. 이러한 경찰교육정책은 舊인민경찰이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공산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던 구동독경찰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가치와 정치질서에 입각한 경찰조직 재건을 위해서 인적청산은 불가피하였다. 경찰관에 대한 재임용 심사시에 법치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동독경찰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즉 경찰노조 관계자, 교회 관계자, 변호사 등을 폭넓게 심사과정에 참여시켜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점과 그 과정에서 적용된 심사기준은 향후 우리의 상황에도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구동독 인민경찰중에서 무려 86.5%에 달하는 인원이 재임용되었다. 단언하면, “새 술(酒)을 헌가죽에 담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같은 지역, 같은 경찰관서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오랜 공산체제하에서 시민들에 대한 억압적 기구역할을 했던 경찰조직의 구성원들이 하루아침에 체제가 바뀌었다고 민주경찰이 될 수는 없다. 이들의 민주화정도야말로 곧바로 新연방주 경찰의 법집행 수준을 대변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자유민주주의 경찰체제에 적응시키고, 민주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교육을 통한 적응유도”라고 할 수 있다. 인수된 舊인민경찰에 대한 장·단기 적응교육과 광범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준비 및 실시 그리고 자매州 경찰관과의 교환근무를 통한 실무능력 조기배양과 “Learning by Doing (현장교육)” 교육방식은 대단히 참고가 될만하다.

한편, 인수경찰관의 심사기간이 너무 길어 인수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동독경찰관들의 불안감이 팽배해지자, 능력있고 유능한 경찰관들이 同기간 조건이 좋은 개인회사 등으로 진출한 사례도 빈발했다. 뿐만 아니라 인민경찰 출신들을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이전 계급보다 강등시키거나 차등 임용한 사례 등은 내부불만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재임용시 적성과 관련한 연령(50세)기준 때문에 50세 이상 경찰관들이 전원 해고되고 말았다. 이로 인하여 통일 후 10년 동안 자연 퇴직자가 전혀 없어서 신규경찰관을 거의 충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찰인력구조에 있어서 연령분포상의 심각한 부조화

현상이 초래되었다. 새로운 체제하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경찰직에 적극 입직시킴으로써 세대교체 및 “민주화” 그리고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은 모순 때문에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빈발하는 범죄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불안에 대한 新연방주 경찰의 대응역량이 서독지역 주경찰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sup>158)</sup>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연방주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통일 이후 증가된 실업율(높게는 20-30%, 서독지역에 비하여 2배 정도)과 범죄증가<sup>159)</sup> 그리고 환경오염문제 등이다.<sup>160)</sup> 동독지역 신설 5개주의 치안상황은 크게 악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경찰조직이 더욱 절실하다.

한편, 경찰장비 지원과 관련하여, 베를린의 경우 인수된 동독경찰관에게 지급할 서독 경찰관의 복장이 준비되지 않아 약 1년 동안은 동독경찰관 복장 또는 모자의 모장만 바뀌서 착용하고 근무한 탓에 동독주민들로부터 종전의 경찰과 같은 인상을 받거나 서독 주민들로부터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게 되고 업무수행에도 많은 부담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동독출신 경찰관들의 많은 불만과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sup>161)</sup> 동독지역에서 통신체계 및 장비, 차량장비 등 경찰장비가 낙후되어 통일 이후 타지역에서 침투한 범인들의 새로운 장비를 따라갈 수 없었던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통일 이후 신연방주 경찰들의 주민협조 확보방안으로서 베를린경찰은 주민과의 밀접한

158) 구인민경찰 뿐만 아니라 타행정관료들 역시, 구체제하에서의 비효율적인 직무관행 때문에 서독지역 행정기관에 비하여 경쟁력과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다. 구동독출신자들의 낮은 생산성에 대한 인식 등으로 임금격차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1년 8월 현재 서독지역의 86.5%정도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159) Bundeskriminalamt, “Räumliche Verteilung der Kriminalität”, in: Polizeiliches Kriminalstatistik 2000 (Wiesbaden: BKA, 2001). URL: [http://www.bka.de/pks/pks2000/p\\_2\\_1\\_3.html](http://www.bka.de/pks/pks2000/p_2_1_3.html) 2001-10-21 참조. 맥클렌부르크-포포메른주, 브란덴부르크주, 작센-안할트주, 작센주 등은 구서독 연방주들에 비하여 범죄발생계수가 현저하게 높은 실정이다.

160) DER SPIEGEL Nr. 46/1996, S. 35: GfK-Umfrage(1996): “Welches sind die dringlichsten Probleme, die in Deutschland zu lösen sind?”(독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독주민들은 실업문제, 환경문제, 범죄문제 순으로 답했고, 구동독지역 주민들은 실업문제-범죄문제-환경문제 순으로 각각 답변했다고 한다.

161)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는 작센주에 서독경찰관 제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였다고 한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순찰차량 586대를 동베를린에 배치하고 233명의 주민접촉 경찰관(지역사회 경찰활동수행)을 배치하였으며, 다른 대부분의 신연방주에서는 종전의 동독 인민경찰에 대한 불쾌한 인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3분의 1 이상의 경찰관을 타지역으로 배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동독출신 경찰관에게는 서독출신 경찰관의 86.5%수준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어, 상당한 갈등과 불만요인을 갖고 있다.<sup>162)</sup> 뿐만 아니라 경찰고위직이 대부분 서독출신 경찰관으로 충원됨으로써, 이른바 “점령군”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겪은 인간적 고뇌와 갈등, 그리고 해고되어 아직도 실업자 신세를 면하지 못한 동료들을 보면서, 통일에 대한 회의를 품고 있는 경찰관들도 상당수 확인되었다. “자유를 얻은 대신에 빵 문제가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동독경찰과 시민들의 불만이 여전하였으며, 이로 인한 사회불안과 범죄문제, 실업문제는 독일 통합의 어두운 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sup>163)</sup>

통합과정까지 상호협력, 교류 및 신뢰회복도 중요하였다. 금번 연구의 중심과제는 통합이후의 구동독출신 경찰들이 새로운 민주적 정치체제에 어떻게 적응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의 변화과정에 역점을 두었다. 재임용과정, 재교육 프로그램, 新·舊 연방주들간의 협력체제 등이 소개되었다.

특히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한반도에서 발생할 상황에<sup>164)</sup> 대비해야 할 한국 경찰을 위해서 다음 몇 가지 방안을 정책적 차원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 중국과 러시아와 맞닿은 국경경비문제를 어떤 조직이 담당할 것인가는 하는 문제는

162) 연방국경수비대 동부지역대에 근무하는 구동독출신 경찰관의 경우, 동인은 인민경찰 출신도 아니었으며, 다른 직장을 그만두고 경찰관시험에 합격하여 신규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 놓기도 하였다.

163) 통일이후 많은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동유럽으로부터 서유럽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첫 번째 도시인 베를린에는 러시아, 체첸출신 범죄인들이 범죄조직을 형성하였으며, 동독에 파견된 노동자로 일하던 베트남인들이 범죄조직을 형성, 주로 담배밀수에 가담하였다. 통일이후 경찰의 업무성과가 저하되었으며, 통일전 범죄해결율이 47%에서 통일후 37%로 저하된 바 있다. 1995년에는 다시 44%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164) 최근 몇 년전부터 돌발적인 위기상황에 대한 견해가 분분해진 상태이며, 김일성 사후와 같은 급박한 체제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편이다.

대규모 경찰력이 소요될 수 있는 사안이다.<sup>165)</sup>

- 휴전선(국경) 개방이후 대거 脫北사태에 따른 치안대책 마련,
- 북한지역내 경찰관 재임용<sup>166)</sup> 및 재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방안,
- 단시간내 대규모 신규경찰관 충원<sup>167)</sup> 및 파견경찰관 확보방안과 규모,<sup>168)</sup>
- 제복을 비롯한 경찰장비 장구 등의 보급문제,<sup>169)</sup>
- 체제전환에 따른 북한지역내 공안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대량 해고사태 이후 발생할  
실업문제해결과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의 실시방안
- 급증할 치안문제와 관련한 대책 등<sup>170)</sup>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 인사<sup>171)</sup> 및 학계 인사들로<sup>172)</sup> 구성된 비상설 연구자문 조직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독일국민들에게 있어서 통일문제는 이제 서서히 “trockene Limonade”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아직도 요원한 역사적 과제이다. 독일의 경우, 兩獨정부의 책임자들의 공식적인 만남이 시작된 지 꼭 20년 만에 통합을 이뤘다고 한다. 독일통합과정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향후 한반도에서 전개될 예기치 못할 상황에 대비하는 노력이 한국 경찰에게 필요한 시점이다.

165) 필자는 현재의 전투경찰대와 같이 준(準)군대적, 준(準)경찰적(半軍半警)적 성격을 지닌 조직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국경수비대(BGS)가 거의 준(準)군대적 성질을 띠고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

166) 북한지역내에서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현존 부서의 특성, 규모, 조직과 인력의 정확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재임용 심사기준 및 절차도 어느 정도 구상해야 한다.

167) 유사시 북한지역의 치안을 담당할 경찰력의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168) 필자는 최근 각대학의 경찰관련학과 졸업생,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유사시 경찰관후보자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상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해마다 약 3,000-4,000명씩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169) 이에선 순찰차, 경찰공용 및 휴대용화기, 무전기, 컴퓨터 등 통신장비, 서류양식, 법전의 제공, 현존하는 경찰청사의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다.

170) 이에선 범죄문제(재산범죄중), 대규모 폭동·시위 혹은 파업, 대규모 이동에 따른 교통통제, 高실업으로 인한 사회불안 증대 등을 예시할 수 있다.

171) 통일부관계자, 경찰청 정보·보안부서 관계자, 국가정보원 북한관계전문가 등을 예시할 수 있다.

172) 독일경찰제도와 통일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거나, 독일 현지 사정에 밝은 연구자 그리고 북한문제 전문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주한 독일연방국대사관, 『오늘의 독일』, 1998.
-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체제 불법청산개관』, 서울: 법무부, 1995.
- 주독 한국대사관, “동독 국가안전부의 실체”, 1991년 자체작성 자료, 통일원 북한자료 센터소장, 100-16.
- 법무부, 『統一獨逸의 舊東獨體制不法清算 概觀』, 서울: 법무부, 1995.
- 김영탁,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7.
- 박이도, 『독일통일과 통일독일의 이해』, 서울: 신지사원, 2000.
- 통일대비정책연수단, 『동서독 통일과정과 통합실태』, 서울: 통일원, 1993.
- 통일원, 『통독 4주년 현황과 평가』, 서울: 통일원, 1994.
- 주독 한국대사관, “동서독 행정체제 통합”, 통일원 북한자료센터소장, 100-37.
- 이관희, 『독일통일과 독일경찰 조직의 정비』, 용인: 치안연구소, 1996.
- 임준태 외, “독일 경찰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호』, 서울: 한국경찰학회, 1999.

### 외국문헌

- Aktuelles aus der Polizei-Führungsakademie, in: Die Polizei 1998.
- Bundesakademie fuer oeffentliche Verwaltung im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Programm: Lehrgang Grundlagen des Verwaltungshandelns im demokratischen Rechtsstaat vom 08.04 bis 10.05.1991*”, 1991.
-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Verfassungsschutzbericht 1996*, 1997.
- Bundesgrenzschutz. *50 Jahre BGS: 1951-2001*, 2001.
- BGS, *Bundesgrenzschutz/Federal Border Police*, 2000.

- Bundeskriminalamt. *Polizeiliches Kriminalstatistik(PKS) 1994*, 1995.
- Bundeskriminalamt, “Räumliche Verteilung der Kriminalität” in: *Polizeiliches Kriminalstatistik 2000*, Wiesbaden: BKA, 2001).
- Die Polizei 1998.
- Gesetz über die Aufgaben und Befugnisse der Polizei vom 13. September 1990.
- Moldenhauer, Harmut. *Die Vereinigung der Berliner Polizei*, Berlin: 2001.
- Möller/Wilhelm, *Allgemeines Polizei- und Ordnungsrecht*, 4. Aufl. 1995.
- Rühmland, Ulrich. “Die Volkspolizei”, in: *Die Polizei 1982*.
- Rupprecht, Rheinhard(Hrsg.), *Polizei Lexikon*, 2. Auflage, 1995.
- Semerak, Arved F. *Die Polizei*, 1988.
- Schenke, *Polizei und Ordnungsrecht, in: Besonders Verwaltungsrecht*, 5. Aufl., hrsg. v. Udo Steiner, Heidelberg: 1995.

#### 인터넷 자료

- URL:[http://www.bka.de/pks/pks2000/p\\_2\\_1\\_3.html](http://www.bka.de/pks/pks2000/p_2_1_3.html) 2001-10-21
- URL:[http://www.berlin.de/SIS/Polizei/Master/Oeffentlichekeitsarbeit/start\\_wir](http://www.berlin.de/SIS/Polizei/Master/Oeffentlichekeitsarbeit/start_wir)

#### 현지 독일경찰관서 방문동향

- 독일연방내무성 경찰국장
- 베를린주 경찰청, 베를린주 경찰학교
- 연방국경수비대 서부지역대, 동부지역대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내무성, 주경찰대학, 주경찰학교,
- 푸라이부르크경찰서, 남부지구경찰서
- 맥클렌부르크-포포메른 주경찰대학, 주경찰학교
- 노이브란덴부르크 경찰서
- 작센주 경찰대학

## &lt;참고자료 1: 통일이후 독일연방 16개주의 동향&gt;

	경찰밀도	경찰관정원	관할인구	범죄발생건수	범죄발생 계수
Baden-Württemberg 州	1:389	26,700	10,374,505	598,647	5,770
Bayern	1:411	28,860	12,043,869	700,426	5,815
Berlin	1:193	17,910	3,458,763	592,638	<b>17,134</b>
Brandenburg	1:294	8,630	2,554,441	287,551	<b>11,257</b>
Bremen	1:217	3,140	677,770	97,506	<b>14,386</b>
Hamburg	1:197	8,640	1,707,986	297,534	<b>17,420</b>
Hessen	1:431	13,840	6,027,284	457,408	7,589
Mecklenburg-Vorpommern	1:328	5,620	1,817,196	211,105	<b>11,617</b>
Niedersachsen	1:415	18,420	7,815,148	576,894	7,382
Nordrhein-Westfalen	1:433	41,000	17,947,715	1,352,901	7,538
Rheinland-Pfalz	1:427	9,190	4,000,567	266,507	6,662
Saarland	1:347	3,120	1,084,184	67,686	6,243
Sachsen	1:402	11,460	4,545,702	365,523	8,041
Sachsen-Anhalt	1:320	8,680	2,723,620	294,202	<b>10,802</b>
Schleswig-Holstein	1:414	6,500	2,742,293	247,106	9,011
Thüringen	1:380	6,660	2,491,119	172,531	6,926
		1994년 기준	1997년 기준	1997년 기준	

## < 부 록 >

통독전 동독 "인민경찰"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개인설문지 중 주요내용 발췌

### Personalfragebogen

für

#### die Angehörigen der ehemaligen höheren Dienst- laufbahn der Volkspolizei Berlin

Die Beantwortung jeder der nachstehenden Fragen ist für die Prüfung Ihrer Weiterbeschäftigung in der Polizei des Landes Berlin unerlässlich. Beantworten Sie die Fragen bitte in lesbarer Schrift (gegebenenfalls in Druckschrift). Daten geben Sie bitte möglichst genau an. Sollte eine Frage auf Sie nicht zutreffen, ist das Wort "entfällt" einzusetzen. Aus dem von Ihnen ausgefüllten Personalfragebogen können Sie keine Ansprüche herleiten.

Wir weisen darauf hin, daß bei Antworten, die einer Bewertung unterliegen, stets die Gesamtumstände des persönlichen Werdeganges berücksichtigt werden.

Zutreffendes bitte ankreuzen!

Bei nicht ausreichendem Platz bitte weitere Angaben auf besonderem Blatt beifügen und unterschreiben!

<b>A.</b>	<b>Personaldaten</b>				
1.	Name (ggf. auch Geburtsname)				
2.	Vornamen (Rufname unterstreichen)				
3.	geboren am	Tag	Monat	Jahr	in
					Staatsangehörigkeit
4.	Anschrift, Telefon				
5.	Geburtsname der Mutter (bei Adoptierten Geburtsname der Adoptivmutter - ohne Vornamen -)				
6.	Familienstand	Tag	Monat	Jahr	verh. <input type="checkbox"/>
	ledig <input type="checkbox"/>				verw. <input type="checkbox"/>
	seit dem				gesch. <input type="checkbox"/>

7.	Vor- und Zuname (ggf. Geburtsname) des Ehegatten/der Ehegattin		geboren am		
			Tag	Monat	Jahr
Übt Ihr Ehegatte/Ihre Ehegattin eine Erwerbstätigkeit aus?					
ja <input type="checkbox"/> nein <input type="checkbox"/>					
Falls ja, welche?					
8.	Wohnsitze (Haupt- und Nebenwohnung) während der letzten 5 Jahre:				
9.	Namen und Vornamen der Kinder		geboren am		
	1.		Tag	Monat	Jahr
	2.		Tag	Monat	Jahr
	3.		Tag	Monat	Jahr
	4.		Tag	Monat	Jahr
	5.		Tag	Monat	Jahr
B.	Schul- und Berufsausbildung vor Eintritt in die Volkspolizei				
10.	Allgemeinbildende Schule (Grund-, Ober-, Berufsschulen, Volkshochschulen - einschl. Betriebsakademien)				
	von - bis	Bezeichnung der Schule	Abschluß als		



14.	<i>Welche sonstige Ausbildung vor Eintritt in die Volkspolizei wurde begonnen und ggf. wann abgeschlossen?</i>			
15.	<i>Abgeschlossene Weiterbildung vor Eintritt in die Volkspolizei</i>			
	<i>Lehreinrichtung/ Studieneinrichtung Bezeichnung/Sitz</i>			
	<i>Ausbildungsform/ Studienform</i>			
	<i>Fachrichtung</i>			
	<i>von - bis Abschlußjahr</i>			
<b>C. Tätigkeit vor Eintritt in die Volkspolizei (auch NVA)</b>				
16.	<i>Arbeitgeber/ Arbeitsstelle und -ort</i>	<i>Bezeichnung der Tätigkeit</i>	<i>tätig gewesen von - bis</i>	<i>Grund des Ausscheidens</i>



66.	Sind Sie von einer der unter Nr. 65 genannten Stellen oder von einem Nachrichtendienst dienstlich oder privat kontaktiert worden?	ja <input type="checkbox"/>	nein <input type="checkbox"/>	falls ja, wann jeweils?
67.	Ist gegen Sie der Vorwurf oder Verdacht erhoben worden, gegen Grundsätze der Menschlichkeit oder Rechtsstaatlichkeit verstoßen zu haben?  ja <input type="checkbox"/>			
	nein <input type="checkbox"/>			
	Falls ja, kurze Erläuterung:			
68.	Waren Sie Mitarbeiter des Strafvollzugsdienstes in politischen Haftanstalten?	ja <input type="checkbox"/>	nein <input type="checkbox"/>	von - bis
69.	Hat Ihre Dienststelle bei der Planung von Internierungslagern für politisch andersdenkende Bürger der DDR mitgewirkt?	ja <input type="checkbox"/>	nein <input type="checkbox"/>	von - bis
70.	War Ihre Dienststelle an der Einweisung politisch Andersdenkender in psychiatrische Kliniken beteiligt?	ja <input type="checkbox"/>	nein <input type="checkbox"/>	von - bis
71.	Hat Ihre Dienststelle zur Strafverfolgung politisch Andersdenkender durch Fälschung von Beweisen oder in anderer Weise beigetragen?	ja <input type="checkbox"/>	nein <input type="checkbox"/>	von - bis

		ja - nein	von - bis
72.	Sind in Ihrer Dienststelle rechtswidrig Gewalt oder unerlaubte Vernehmungsmethoden angewandt worde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3.	Haben Sie während eines Einsatzes von der Schußwaffe Gebrauch gemach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Falls ja, Zeitpunkt und nähere Angaben:	
74.	Waren Sie dienstlich in den ehem. Grenzgebieten eingesetz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5.	Waren Sie freiwilliger Helfer der ehem. Grenztruppe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6.	Ist Ihnen als Angehöriger eines staatlichen Organs oder als freiwilliger Helfer der ehem. Grenztruppen bekanntgeworden, daß im ehem. Grenzgebiet jemand durch Schüsse oder auf andere Weise verletzt oder getötet worden ist?  Ist Ihnen bekannt, ob bei derartigen Verletzungen mangels unverzüglicher Bergungsmaßnahmen Körperschäden oder der Tod verursacht worden sind?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7.	Wurde im Bereich Ihrer Dienststelle jemand wegen eines Fluchtversuchs angezeigt, gegenüber anderen verdächtigt oder deswegen Mitteilung gemacht oder solche Mitteilungen weitergegebe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Falls ja, nähere Angaben:	

78.	<p><i>Fühlen Sie sich aus gewachsener Überzeugung rechtsstaatlichen Grundsätzen verpflichtet?</i></p> <p>ja <span style="margin-left: 200px;">nein</span></p> <p><input type="checkbox"/> <span style="margin-left: 200px;"><input type="checkbox"/></span></p> <p><i>In welcher Weise haben Sie bei der Umgestaltung polizeilicher Arbeit nach rechtsstaatlichen Grundsätzen unmittelbar oder mittelbar mitgewirkt?</i></p>
-----	--

<p><i>Möchten Sie besondere Bemerkungen machen?</i></p>
---

Ich versichere nach bestem Wissen und Gewissen, vorstehende Angaben vollständig und wahrheitsgemäß gemacht zu haben. Es ist mir bekannt, daß falsche Angaben die Entlassung nach sich ziehen können.

Mir ist bekannt, daß ich jede Änderung der angegebenen Verhältnisse unaufgefordert meiner Personalstelle mitzuteilen habe.

Mir ist ferner bekannt, daß von mir personenbezogene Daten gespeichert werden, soweit dies zur Erfüllung der dem Arbeitgeber obliegenden Aufgaben erforderlich ist.

Berlin, den \_\_\_\_\_ (Vor- und Zunamen, ggf. Geburtsname)